

목 차

제 1 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1. 공사일반	1-01
2. 관리 및 행정	1-12
3. 자재관리 및 장비취급관리	1-40
4. 품질보증 및 관리	1-52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65
6. 가설공사	1-87
7. 선로기준표 설치	1-93
8. 궤도시설물 준공 시 검사와 허용기준	1-95
9. 인계·인수 및 준공	1-96

제 2 장 분기기 개량공사

1. 직결식 분기기 개량	2-01
---------------------	------

제 3 장 레일용접공사

1. 레일용접공사 일반사항	3-01
2. 테르밋트 용접	3-13

제 4 장 운행선 공사

1. 운행선 공사	4-01
-----------------	------

부 록

1. 궤도자재 표준규격서	부록-01
2. 궤도자재 제작·구매 시방서	부록-02
붙임 1. 직결식분기기 체결장치	부록-03

궤도공사 일반사항

1. 공사일반
2. 관리 및 행정
 - 2.1 공사관리 및 조정
 -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3. 자재관리 및 장비취급관리
 - 3.1 자재관리
 - 3.2 장비취급 관리
4. 품질보증 및 관리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6. 가설공사
7. 선로기준표 설치
8. 궤도시설물 준공 시 검사와 허용기준
9. 인계·인수 및 준공

제 1 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1. 공사일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 (1) 이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이하 '발주자' 라 한다.)가 발주하는 “분당선 야탑역구내 51A/B 직결식 분기기 개량공사”에 적용하며, 발주자 사업관리시스템을 고려하여 공정관리, 품질관리, 현안사항관리, 민원사항관리 등 상호연계시스템을 강구토록 한다
- (2)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 발주자의 관련규정, 궤도자재 표준규격(KS, KRS, KRCS, KRSA) 등에 따라야 한다.
- (3) 이 장은 시방서 각 장에 적용되는, 궤도공사의 '공사일반, 관리 및 행정, 자재관리 및 장비취급관리, 품질보증 및 관리,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설공사, 선로기준표 설치, 궤도시설물 준공 시 검사와 허용기준, 인계·인수 및 준공'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 (1) 설계서, 설계도, 법령해석, 공사감독자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순서를 정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 ① 계약서
 - ②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③ 공사시방서
 - ④ 설계도
 - ⑤ 산출내역서
- (2) 설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 ② 공사시방서
 - ③ 설계도면
 - ④ 산출내역서
 - ⑤ 승인된 시공도면
 - ⑥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 ⑦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
- (3) 이 시방서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때는 '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이외 이 시방서 각 장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4)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5)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이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

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해 공사의 교통조건, 자연조건, 현장 시공조건, 공사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현장대리인은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3 용어의 해석

(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 ① 계약문서(이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포함한다.)
- ②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③ 기타 건설 관련 법규
- ④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 ⑤ 국어사전

1.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2) 공사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하며 표준시방서(KCS)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3) 발주자(발주처, 발주청, 발주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하며, 당해 공사의 시행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 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공사감독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3호 및 제16조(공사감독관)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발주자와 계약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사관리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발주청의 업무범위)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단(구, 감리단)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현장에 주재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

- 한 조직구성체를 말한다.
-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구, 감리회사)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말한다.
- (8)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구, 책임감리원)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구, 감리자 또는 감리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0)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제2항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공사 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발주자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11) 수급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2호의 ‘계약상대자’ 를 말한다.
- (12) 하수급인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14호의 ‘하수급인’ 을 말한다.
- (13) 건설기술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15호의 ‘건설기술인’ 을 말한다.
- (14) 현장대리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의 ‘공사현장대리인’ 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인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자를 말한다.
- (15) 현장요원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 (1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기, 토목, 궤도, 건축 공사 등의 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일 경우 관련부서 협의,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작업자 및 전기시설물 보호 등의 안전

-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8) 철도안전전문기술자(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궤도 분야)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 안전점검 업무나 레일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9) 장비운전원
‘장비운전원’이라 함은 장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3장 제10조에 의한 자격자를 말한다.
- (20) 차단작업
‘차단작업’이라 함은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 (21) 열차사이차단작업
‘열차사이차단작업’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열차와 열차 사이에 작업시행이 가능한 시간대가 있을 경우 관제사 승인(열차 사이 시간대별 차단작업 승인을 각각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해 시행하는 차단작업을 말하며, 운전명령으로 사전에 시달된 시간 내에서 시행한다.
- (22) 안전성 검증
‘안전성 검증’이라 함은 관련부서가 시행한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하여 검증부서의 장이 안전성 평가 및 안전조치가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안전 관련 사규 상의 “안전성 검증”을 말한다.
- (23) 장비운전원 적합성검사
‘장비운전원 적합성검사’라 함은 장비를 운전하기 전에 장비운전원의 신체적 피로정도, 음주여부, 지시 및 전달사항의 숙지여부 등의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24) 제작자(제조사, 생산자)
궤도공사에 적용하는 제품을 제작하여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 (25) 설계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26)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27)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28)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29)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30) 9점법

- 화차에 적재된 도상자갈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9점을 선정하여 높이차에 의한 도상 자갈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
- (31) 일반철도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 (32) 궤간
양쪽 레일 안쪽 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하며,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mm 아래 지점을 기준으로 함
- (33) 궤도
레일·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
- (34) 궤도틀림(irregularity of track)
열차의 반복하중에 의해 궤도에 발생하는 궤간, 수평, 방향, 고저, 평면성 등의 틀어짐
- (35) 노반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토목구조물 및 토공
- (36) 도상
도상은 레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열차 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 또는 체결장치를 소정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며, 온도에 의한 레일의 좌굴을 방지하고 침목의 종방향력에 저항하는 궤도재료로서 일반적으로 깻자갈 또는 콘크리트가 사용
- (37) 레일(rail)
- ① 레일은 열차 하중을 직접 지지하며, 차륜이 탈선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차량의 안전 운행을 확보.
 - ② 레일은 침목과 도상을 통하여 열차 하중을 넓게 노반에 분포시키며, 원활한 주행 면을 제공하여 주행저항을 적게 하고, 신호전류의 궤도회로, 동력 전류의 통로도 형성하는 역할을 하여 열차를 안전하게 유도하는 궤도의 가장 중요한 재료
- (38) 레일 체결장치(rail fastening device)
- ① 레일을 침목 또는 다른 레일 지지구조물에 결속시키는 장치를 레일 체결장치라 함.
 - ② 레일 체결장치는 레일에 가해지는 각종 부하요소, 즉, 레일 상하방향, 레일 좌우방향, 레일 종방향의 하중 또는 작용력, 여기에 수반된 회전력, 충격력 및 진동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함.
 - ③ 레일 체결장치는 좌우레일을 항상 바른 위치로 유지시켜야 하며, 이와 같은 부하요소를 침목, 도상 등 하부 구조에 전달 또는 차단하는 역할을 함
- (39) 레일신축
레일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신축하는 현상
- (40) 분선
열차운행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㉔ 주본선, 부분선)
- (41) 분기기(turnout or switch)
분기기는 열차 또는 차량을 한 궤도에서 타 궤도에 전이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궤도상의 설비
- (42) 선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
- (43) 설계도(drawing)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면으로서 공사 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면을 말하며 토지, 구조물, 기타 시설물의 형태, 치수, 내부구조, 기타 내용을 공학적인 표현방법에 의하여 나타낸 그림

(44) 소음

소음이란 듣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소리. 즉, 소음은 일반적으로 기계·기구·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음, 불쾌한 음, 충격성의 음, 음악감상이나 대화를 하는 음, 주의 집중이나 작업을 방해하는 음 등 사람이 원하지 않는 모든 소리라고 정의되며 소음 발생원에 따라 공장소음, 교통소음, 생활소음으로 구

(45) 슬랙

차량이 곡선 부를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바깥쪽 레일을 기준으로 궤간을 넓히는 것

(46) 시공기면

노반을 조성하는 기준이 되는 면을 말하며, 선로 중심선 노반 상면의 높이를 레일면(RL)으로부터 레일높이, 침목두께, 도상두께, 배수 기울기에 따른 높이 변화량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면, 토공, 교량 및 터널의 시공기면은 동일한 높이로 해야 함.

(47) 시공계획서

수급인이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계약 문서와 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숙지한 후 공사 착공부터 완공, 준공할 때까지 전체 공정에 대한 공사를 시공할 시공계획서를 말함.

(48) 실시설계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 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

(49) 열차

동력차에 객차 또는 화차 등을 연결하여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

(50) 자갈궤도

도상구조에 깐자갈을 사용하는 방식의 궤도구조

(51) 장대레일

레일을 연속으로 용접하여 한 개의 길이가 200m 이상으로 구성된 레일

(52) 장대레일 채설정

부설된 장대레일의 체결장치를 풀어서 응력을 제거한 후 다시 체결함을 말함.

(53) 전진기지

철도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장비를 유치하고 궤도재료를 보관, 가공하여 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장소

(54) 절연이음매 (insulation joint)

레일과 이음매판의 볼트 주위 및 유간에 직접 파이버(fiber) 또는 합성수지(plastic) 및 기타의 재료로 된 절연재를 삽입하여 전기를 절연시키는 이음매

(55) 접속구간 또는 접속부

교량과 토공 또는 터널과 토공과 같이 노반 상태가 변화하는 구간이나 유도상궤도와 무도

- 상궤도와 같이 궤도구조 형식이 변화하는 구간
- (56) 정거장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한 철도시설 등을 설치한 장소
 ([조차장(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 및 신호장(열차의 교차 통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을 포함])
- (57) 좌굴
 레일의 온도상승 때문에 레일이 휘는 현상
- (58) 진동
 ① 진동이란 질점 또는 물체가 외력을 받아 평형 위치에서 반복 운동하는 현상.
 ② 진동에는 주기 운동과 불규칙으로 운동하는 비주기 운동으로 나눌 수 있음.
 ③ 일반적으로 기계나 구조물은 질량, 강성, 감쇠가 분포된 계로써, 질량과 강성은 물체가 정적인 평형 위치를 중심으로 진동하는 원인이 되며, 감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동이 소멸되는 원인이 됨
- (59) 차량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
- (60) 철도
 전용 용지에 토공, 교량, 터널, 배수시설 등 노반을 조성하여 그 위에 레일, 침목, 도상 및 그 부속품으로 구성된 궤도를 부설하고 그 위를 기계적, 전기적 또는 기타 동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일시에 대량의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육상 교통기관
- (61) 침목(sleeper or tie)
 침목은 레일을 소정 위치에 고정시키고 지지하며, 레일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을 도상에 넓게 분포시키는 역할
- (62) 캔트(cant)
 차량이 곡선구간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쪽 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 레일을 높게 부설하는 것
- (63) 콘크리트궤도
 도상구조에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방식의 궤도구조로서 ‘사전제작 콘크리트궤도’와 ‘현장 타설 콘크리트궤도’ 등을 말함.
- (64) 하중
 구조물 또는 부재에 응력이나 변형의 증감을 일으키는 전체의 작용력
- (65) 하화
 자동차 및 화차에 적재된 화물을 내리는 작업
- (66) 도상 콘크리트층(Track Concrete Layer : TCL) : 레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열차 하중을 넓게 분포시켜 노반에 전달하고 침목(또는 레일을 직접)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궤도구성 요소로서 콘크리트도상궤도에서 자갈궤도부 자갈도상의 역할을 콘크리트로 대신한 층
- (67) 시공상세도 또는 시공도(shop drawing)
 ① 설계도를 기준하여 실제 현장 작업순서에 따른 시공순서도 또는 제작도를 말한다.

- ②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의 불명확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 및 자료를 말한다.
- ③ 기타 규격, 치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의 상세도 등을 말한다.
-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1.1.5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즉시 시방서의 변경을 요청하고 발주자는 즉시 이를 승인한다.

1.1.6 수급인의 책무

(1) 설계서 검토

- ①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 상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의 오류, 누락 및 설계서 간의 상호 모순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조치한다.
- ②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특히, 주요 자재의 반입시기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기초적인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③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 결과, 아래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및 이 시방서 제1장/ 1.1.7설계변경 / (1)설계변경 사유에 규정된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 기간연장 사유 외에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시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한다.

(2) 법령의 준수

-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관련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3) 제 규정 준수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정한 제 규정 및 절차서/지침서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된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관련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규정, 절차서, 지침서 순으로

적용한다.

1.1.7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③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④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⑤ 기타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2) 변경요청 서류

설계변경 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제1장/ 2.2공무행정 및 제출물/ 2.2.1일반사항/ (21)설계변경 요청에 따른다.

(3)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 ①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한다.
 - 가. 전체공사 개요, 당초 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대한 장단점 비교표
 - 나.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유지보수 및 시공을 고려한 자재공급계획
 - 다. 당초 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내역 비교
 - 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 마.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①항에 규정된 서류
- ②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기술·공법 내용에 관한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가 복사,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1.1.8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 수

수급인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계약 기간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공사 기간 중 강우일 수가 평균 강우일 수보다 많을 때
-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③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④ 설계도서 내용에 대한 민원제기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사가 지연될 경우가 있을 때
- ⑤ 보상협의,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할 때

- ⑥ 기타 계획변경 등 발주자의 사정 변경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할 때
- (2)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제1장/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2.1일반사항/ (21)설계변경 요청에 따른다.

1.1.9 기성량 조정

- (1)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궤도구조 개량공사의 주입 모르타르 수량, 기존선 자갈 철거수량, 세척 신자갈 수량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수량 변경이 예상되는 공종 및 수량은 시공 후 실측수량에 의거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준공 시 정산처리를 하여야 한다.

1.1.10 현장인력 및 전문기술자의 배치

수급인은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②항(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기준 등)의 건설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한 건설기술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숙련된 기술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배치함은 물론, 궤도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변경, 준공, 기성 등 공사행정 서류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당해 공사에 관련되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요원으로 배치한다.
-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인이 선정한 현장대리인 및 공사작업자(종사자)가 부적합한 행위를 하여 공사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경고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실정보고 한다.
- (3) 수급인은 계약 직후 당해 공사에 종사할 직원의 조직표와 시공경력을 포함한 명부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며, 공사감독자의 자격 적격 확인대상인 직원이 이동할 때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 투입한다.
- (4)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공사현장에 시공관리자를 두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관리를 하도록 한다.
- (5) 시공상 궤도작업 책임자를 두고 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도록 하며 이력서를 사전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다음의 자격을 갖춘 특수 기능자들은 사전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을 얻어 배치하여야 한다.
 - ① 모터카 및 보선장비(MTT, STT, RE, DTS) 운전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및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한국철도공사)」 자격요건 보유자
 - ② 기타 보선장비 운전기능자 : 보선장비 운전 숙련자

표 1.1-1 시공관리자 등 자격요건

구분	내용
시공관리자	· 콘크리트케도 시공 시 2년 이상 콘크리트케도 실무 시공업무능력을 보유한 자
측량관리자	·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측량 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토목 또는 측량분야 중급기술자 자격을 부여받고 업무수행능력을 보유한 자
레일용접공	· 철도레일용접인정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철도안전전문인력(레일용접)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비파괴검사 산업기사	· 초음파탐상(UT), 자분탐상(MT) 등의 비파괴시험을 시행하는 자로 비파괴검사산업기사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④항 ‘별표 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 1년 이상 철도 케도분야 업무에 종사한 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의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및 한국철도공사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 제9조(자격요건)의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철도안전 전문기술자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의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 (7)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분야별 전문기술인(공종별 책임자)를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관리를 하도록 한다.
- (8) 발주자의 서면 승인 없이 필수요원의 재임명이나 교체를 할 수 없다. 만약 교체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격이나 조건은 관련기술인 배치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1.1.11 건설기술 사용

공사 시공에 있어 건설신기술, 특허권, 실용신안,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공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 수급인은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 재료

내용 없음.

1.3 시공

내용 없음.

2. 관리 및 행정

2.1 공사관리 및 조정

2.1.1 일반사항

(1) 현장대리인의 업무

- ①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중지되는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업무

-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한다.
- ②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 ③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④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공사감독자는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⑤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한다.

⑥ 공사의 일시 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①항에 해당하는 경우
- (나) 공사의 이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 (라)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 (마)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하는 경우

(3) 사전조사

- ① 수급인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검토하며, 현장여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 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공사시행 중에 조사 불충분으로 인한 공기지연, 비용증감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진다.
- ② 수급인은 필요시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 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 ③ 수급인은 선로차단시간 및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철도공사) 관계자와 차단공사를 위한 운전협의 등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열차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현장위치 및 궤도공사 공정상 야간차단 시간 내에 공사가 어려운 개소는 사전에 관련부서(철도공사)와 협의하여 화물열차 등 운전시간을 조정하여 작업이 가능한 차단 시간을 확보토록 한다.
- (4) 공사수행
-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시정, 이행 조치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는다.
 - ②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를 이행한다.
 - ③ 수급인은 공사 기간 중 주변 건조물 및 기타의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시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인근 건조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우려되거나 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후속 조치를 취한다.
 - ④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각종 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시설물의 출입, 문서의 열람 및 제출 요구,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 ⑥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중대 결함을 인지하였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구두로 즉시 보고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7일 이내에 결함 내용, 기술적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가) 사업품질시스템(현장 품질관리계획서) 이행상의 주요 결함
(다만, 통상적인 부적합 사항은 제외)
 - (나) 설계도서상의 상호 불일치 및 건설을 위해 승인된 설계서상의 주요 결함으로써 이 시방서 각 장에 명시된 기준과 상충하는 사항
 - (다) 시공 중인 구조물 혹은 기자재의 손상으로 인해 광범위한 평가, 재설계 및 수리가 요구되는 사항
 - ⑦ 수급인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①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이 시방서 제1장/ 2.1공사관리 및 조정/ 2.1.1일반사항/ (8)동절기 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시공 부분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고 관리한다.
 - ⑧ 수급인은 공사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공사시행 전·중·후의 과정을 기록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관리한다.
- (5) 책임 한계
-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구간을 보호한다. 수급인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 기간이 아닐지라도 그 공사의 모든 부분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를 완료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부담한다.
 - ④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발주자 소유의 기자재 및 장비 등을 분실 또는 손괴한 경우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한다.
 - 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방호대책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 ⑥ 수급인은 사급자재에 대한 품질확보의 책임이 있으며, 품질확보를 위한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 ⑦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⑧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⑨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 ⑩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6) 공사구간의 우선 사용
- ① 발주자는 궤도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후속공사(전차선공사 또는 신호공사 등)의 일부 공종을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우선 사용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의무, 계약 조건의 규제가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우선 사용된 구간에서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후속공사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협조한다.
 - ③ 우선 사용된 공사구간에서 궤도의 손상 원인이 후속공사에 있거나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 부분을 보수한다.
- (7) 응급조치
- ① 수급인은 시공 기간 중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의 지시로 제3자가 시행한 응급조치에 대한 소요 비용은 수급인이 즉시 지급한다.

- ③ 상기의 ①, ②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로 제3자가 시행한 보수 및 수리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즉시 지급한다.

(8)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종은 공사를 중단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공사감독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어 품질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경우
다만,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에 대한 보강작업,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9) 공사장 관리

①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 (가) 수급인은 기존 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도로 폭을 확장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 (나)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 표지등을 설치하고, 신호원을 배치하여 공사 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다)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라)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 지점의 전방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 도로 상에 적어도 두개 이상의 경고 표지를 설치한다.
- (마)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며,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바)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차량의 안전 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한다.
- (사)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② 작업 시간

-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 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나) 공정상의 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야간작업 또는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작업 필요성이 인정할 때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른다. 또한,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시행할 때도 사전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비용(추가 건설사업관리비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③ 공사현장관리

- (가)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시행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나) 타 분야 공사와 관련하여 지장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공사에 직접 관련된 타 수급인의 공사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다) 공사 시공 중에 공사감독자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 (라) 시가지 공사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소음, 분진, 진동, 악취, 붕괴, 추락, 전도 등 공중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마)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바)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평소 기상예보 등에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 (사)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한다.
- (아) 위험물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자) 공사현장의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호책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관계자의 승인이 없는 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 (차)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바로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산업재해조사 규정에 따라 상세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카)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타) 다른 공사와 병행하거나 동시에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상호 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파) 시공 중에 사고, 풍수해, 화재, 일반인의 무단출입, 풍기문란, 도난 등에 대한 예방책을 사전에 강구한다.
-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고용한 인원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업무수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용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서면 승인 없

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할 수 없다.

(거) 퇴거당한 인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너)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인은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에게 근로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④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것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를 전담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다) 공사구역 내에는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시하여 주변의 선로구조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확인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 처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공사 장소, 장비 사용하는 지상설비 등으로 인하여 통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일이 있을 때는 '설계도, 표준도'에 의하여 가설울타리, 철망 등의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작업 중 대중에게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서 작업구역에 이동책을 설치한다.

(마) 작업장 내에서는 시공 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화기 사용 시에는 특별히 화기단속에 유의한다.

(바) 공사 중 가설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하며 전담 전기기술자에 의해 항상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

(사) 작업장 내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 완성부분 등에 작업자가 상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정비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아) 공사용 재료는 노반 상에 방치하지 못한다.(단, 부득이 노반 상에 적치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자)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 위치를 작업자에게 상시 주지 시켜야 한다.

(차)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며, 동시에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른다.

(카) 수급인은 공사장에서 벗어난 도로상에서 자재 및 장비를 운반할 때 모든 법적인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타) 수급인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재나 장비 이동 시 발생하는 도로의 손상 및 기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0) 하도급

① 하도급 관리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다)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라) 위 ‘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하수급인에 대한 교육실시

수급인은 계약문서의 조건과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 확보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1) 관련 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 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기준 등을 상시 비치한다.

- ①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 ② 관련 사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 ④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관련 공사 표준시방서
- ⑤ 적격심사서류
- ⑥ 당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비치서류
- ⑦ 해당공사 관련 한국산업표준(KS), 한국철도표준규격(KRS), 철도용품규격서(KRCS), 국가철도공단 표준규격서(KRSA)
- ⑧ 기타 이 시방서 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의 각 항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등

(12)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 ① 검사 결과 불합격이 될 경우에 수급인은 불합격 내역에 대하여 재시공, 보수 또는 보강작업 하며,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신청서를 제출한다.
-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3) 공사협의 및 조정

- ①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전차선, 신호공사 등)와의 종합적인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공사착수 전에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 ②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전차선, 신호공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③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인접공사와 관련된 전·후 공사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종합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케도, 전차선, 신호분야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4) 공정관리

① 공사착수 회의

수급인은 공사 관련자가 참여하는 공사착수 회의를 개최하며,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한다.

③ 통합정보시스템 운용에 따른 공사관리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은 발주자가 운영 중인 통합정보시스템을 적용하여 자료 및 내역 관리, 공정관리, 개소별 실적 및 품질관리를 한다.

④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5) 재산 및 경관의 보호 및 복구

① 수급인은 공공 및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입회하거나 별도 지시를 하기 전에 천연기념물이나 소유경계표지, 재산표지 등을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그것들을 이전할 수 없다.

② 수급인은 공사수행기간 작업의 태만, 소홀,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해서 공공 및 개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줬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한다.

(16) 산림, 공원 및 공용지의 보호

① 수급인은 공사작업이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기타 공용지에서 시행될 때 담당 관계기관이나 산림 및 공원을 관리하는 모든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작업장을 질서 있게 정돈하여야 하며 모든 오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7) 분쟁

① 당해 계약문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

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쌍방의 협의로 해결한다.

- ②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는 당사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18)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 ① 수급인은 공사수행 동안 수급인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공사가 인수될 때까지 공사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직접,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
- ② 수급인이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 ③ 수급인이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금전상 지급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위 ①, ②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청구 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수급인의 면책사유가 발주자에게서 충분히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 한다. 단, 수급인이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해서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는 수급인의 지급책임은 면제된다.

(19) 채권양도의 금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명승인이 없는 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며, 채권양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기술지식 및 비밀엄수

- ① 발주자는 계약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하는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② 수급인은 본 공사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및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할 수 없다.

(2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 ①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끝낸 부분 또는 대여품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수급인은 이 사실을 바로 발주자(건설사업관리단)에게 보고한다.

②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가) 수급인은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를 불문함),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인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인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 '비상사태'라 함) 등 비상사태와 직접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파손과 정부 및 제3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나) 발주자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인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③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가)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

있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 대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

- (나)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는 발주자는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 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2.1.2 재료

내용 없음.

2.1.3 시공

내용 없음.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2.1 일반사항

(1) 서류비치 및 제출

- ①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또는 해당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에 항상 비치한다.
- ③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물의 작성과 제출절차 등

① 작성 및 확인

- (가)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나)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수급인은 이 지방서 각 장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 문서에 비용이 계상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규격 등

- (가)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 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작성 제출한다.
- (나)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 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③ 추가 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에 관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이 지방서 각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미제출 시의 제한

이 지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⑥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

상으로 하여 전과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착수계

① 수급인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공사착수계를 발주자에 제출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출서류

- (가) 공사착공계(【별지 제1호 서식】)
- (나) 현장대리인계(【별지 제2호 서식】)
- (다) 위임장
- (라)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 (마) 철도기술담당 지정계(【별지 제3호 서식】)
- (바) 철도기술담당 재직증명서
- (사) 안전관리 지정계(【별지 제4호 서식】)
- (아) 품질시험요원 지정계(【별지 제5호 서식】)
- (자) 환경관리자 지정계(【별지 제6호 서식】)
- (차) 기술요원계(【별지 제7호 서식】)
- (카) 현장요원계(【별지 제8호 서식】)
- (타) 전산장비 비치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
- (파) 기술인 경력증명서
- (하) 수급인 현장사무소 조직 및 기구표
- (거) 예정공정표(【별지 제10호 서식】)
- (너)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 (더) 안전관리계획서
- (러)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서
- (머) 착공전 사진

③ 제출 시기 및 부수

착공 후 10일 이내에 당해 공사 착수 3일전까지,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조정회의 관련

- ① 수급인은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및 이행, 기타 계약 내용 이행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 조정 및 확정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품질조정회의를 개최한다.
- ② 품질조정회의 후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과 발주자 품질부서의 장이 합의·서명 날인한 회의록 사본 3부를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5) 설계서 검토 및 사전조사 보고서

-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이 지방서 제1장/ 1.1.6수급인의 책무/ (1)설계서 검토 및 2.1.1일반사항/ (3)사전조사에 따라 설계서 검토 및 사전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까지 3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② 수급인은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조사사항
 - (가) 기존 선로 구조물 확인(궤도 시공구간의 기존시설물 상태 등)
 - (나) 기존선 선형 확인(필요시 측량조사)
 - (다) 선로 변에 설치된 전기, 통신 등 관련시설물의 조사 확인
 - (라) 재료적치장, 자재운반로 조사
 - (마) 분기기개량구간 분기기 부설상태 등의 확인
 - (바) 기타 시공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 (6) 시공일반 계획서
 - ① 수급인은 품질조정회의 결과 및 당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설계서 및 현장조사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는다.
 - ② 시공일반 계획서는 계획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하며, 관리본을 보관한다.
 - ③ 시공일반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당해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가) 조직, 품질관리/품질시험계획
 - (나) 안전/환경관리 계획
 - (다) 공정/공사비관리 계획 및 공정표
 - (라) 기자재수급 계획
 - (마) 인력/장비수급 계획
 - (바) 민원사항처리 계획
 - (사) 기타 관련 조직 간 인터페이스 관리, 시공상세도를 포함한 주요 문서제출 계획 등
 - ④ 제출 시기 및 부수: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시, 3부
- (7) 품질경영시스템 문서
 - ① 품질관리계획서
 -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이 시방서 제1장/ 4.1.3품질관리계획서의 제출 및 4.1.6품질관리 요건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3부를 최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위 '가' 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 책임, 절차, 공정, 자원 등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기술한 문서인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를 작성하여 최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3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작업절차서
 - (가) 수급인은 이 시방서 제1장/ 4.1.7품질관리 추가요건에 따라 대상 공종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작업절차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1) 목적

- 2) 적용범위
- 3) 참조문서
- 4) 책임사항
- 5) 용어정의
- 6) 일반사항
- 7) 작업절차
- 8) 품질기록(품질확인서 서식 등)
- 9) 업무 흐름도 등

다. 제출 시기 및 부수: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승인본(관리본) 2부

④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점검표(ITP·ITC), 검사(점검) 요청서(ITR)

(가) 수급인은 4.1.7 품질관리 추가요건 및 【붙임 1】의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ITP) 작성·운용지침’에 따라 해당 작업에 대한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점검표(ITP·ITC), 검사(점검) 요청서(ITR)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1)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점검표(ITP·ITC) : 작업절차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거나, 공종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종 착수 30일 전까지, 2부
- 2) 검사(점검) 요청서(ITR) : 승인된 ITP의 검사점을 기준으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할 대상작업 수행 1일전까지, 2부

⑤ 시공계획서

(가)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해당공종 착수 30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나) 시공계획서는 시공일반 계획서 및 작업절차서에 따른 단위 작업의 시행에 수반되는 가변적인 요소의 운영계획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형식으로 작성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1) 현장조직표
- 2) 작업 공정표
-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 4) 품질관리 계획(품질시험계획 포함)
- 5) 안전관리 계획
- 6) 환경관리 계획(비산먼지 방지 등)
- 7) 소요장비, 인원, 자재 등의 투입 및 운용계획
- 8) 우천 시에 대비한 계획
- 9) 야간작업 시 조명 계획
- 10) 기타 당일 작업 시행에 수반되는 특수 상황에 대비한 가변적인 제반 요소의 운영 계획
- 11) 재해대비 방안
- 12) 시공상세도(필요시)

- (라) 제출 공사
이 지방서 각 항에 따른다.
- (마) 제출 시기 및 부수: 검사요청서 제출 시, 승인본 2부
- ⑥ 수급인은 상기의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문서 외에 다음의 품질 관련 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가) 품질심사계획: 해당연도 1월 말까지, 2부
 - (나) 품질심사보고서: 품질검사 후 30일 이내, 2부
 - (다) 각종 지적서(부적합사항 보고서 등): 월간 진도보고 시 사본 첨부
 - (라) 교육훈련실적: 월간 진도보고 시 사본 첨부
 - (마) 품질경향 분석보고서: 공사감독자 요구 시
 - (바) 품질기록목록: 공사감독자 요구 시 및 예비준공 검사 시
 - (사) 기타: 품질조정회의에서 합의된 사항(회의록)에 따름
- (8) 환경관리계획서
수급인은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시 발생폐처리계획서, 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를 명시하며 관련 법령에 당해 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대장
 - (가)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제②항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행현황을 기록·관리한다.
 - (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또는 변경 시에는 10일 이내에 2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② 사업착공 등의 통보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사업 착공 등의 통보)에 따라 사업착공·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③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①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 항목별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사 연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4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④ 환경사고보고서
수급인은 환경사고 발생 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환경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제출한다.
- (9) 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의 ‘별표 7(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에 의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공사착수 전까지 2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
- (10) 확인측량보고서

-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47조(일반행정업무) 및 제52조(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및 이 시행서 2.1.1 일반사항/ (3) 사전조사 및 7. 선로기준표 설치에 따라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확인측량보고서 및 성과품 2부를 당해 공사착수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② 확인측량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가) 일반 기준점 성과 [보조기준점 위치, 거리, 표고]
 - (나) 측량 시 발생한 문제점 및 처리 내용
 -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 (라) 측량방법
- (11) 계약자 공정표
 - ①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리기준공정표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자 공정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완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자의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한다.
 - ② 계약자 공정표 등급 구조는 전체계약 기간에 대한 총체 공정표와 당해 연도의 사업비에 대한 연간 공정표로 구분되며, 연간 공정표는 총체 공정표에서 당해 연도 시행분을 발췌한 일부분이며 공정표 운영의 기본은 총체 공정표이다.
 - ③ 수급인은 발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공정관리 전산프로그램과 전자데이터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호환성 확인을 거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 ④ 계약자 공정표 현황관리
 - 수급인은 계약자 공정표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 기간마다 현황관리 하고, 만약 공정 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만회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⑤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정된 계약자 공정표를 작성한다.
 - (가) 계약(또는 기간) 변경
 -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업무범위 변경
 - (다) 계약자 공정표상에 불가피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일정 변경을 할 경우에 일정변경관리 절차를 승인받거나 개정지시를 받았을 때
 - (라) 당해 연도 사업비 계획 등으로 발주자의 변경지시가 있을 때
 - ⑥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 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준공일을 초과할 경우 공정계획을 변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 ⑦ 수급인은 수정계약자 공정표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 즉시 잔여공사분에 대해서 수정 전의 계약자 공정표는 무효화한다.
 - ⑧ 제출 시기 및 부수:
 - 수급인은 계약자 공정표 개정 요청 시 각 3부를 제출한다.
- (12) 사급자재 관련 서류
 - ① 사급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 (가) 자재검사 관리
 - 1) 공사감독자는 시험성적서 원본(부분 또는 사본), 시험결과보고서(시료 형상 등)를 공인

시험기관에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의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공인시험성적서 유선(온라인) 확인보고서 【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공장시험성적서 포함) 및 세금계산서 위변조 사실 확인시 발주자에게 근거를 첨부하여 즉시 보고한다.
- 3) 건설사업관리단은 주요자재의 경우 발주자 입회하에 시료채취 및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최초)하고, 시험성적서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한다.
- 4) 검사 및 시험 시 공장시험이 불가한 항목 또는 검사방법이 공인기관 시험에 의하는 경우 시험의뢰용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직접 지정·채취하여 시험을 의뢰하고, 시험성적서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성적서는 원본을 건설사업관리단에서 보관)
- 5) 건설사업관리단은 반입 자재에 대한 수불부 작성/관리 및 세금계산서 진위여부(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하고 조회 결과보고서를 작성 관리한다.

(나) 대상 자재(신규)

- 1) 공급원 승인요청 대상 자재는 【별표 1】에 따르며, 이외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른다. 다만, 가설용 자재는 공급원승인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및 제77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설공사용 자재는 ‘(가)’항과 동일하게 공급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2) 수급인은 동일자재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자재 공급원을 공사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비상시(공급자의 부도, 생산 중지 등)에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독과품목일 경우에는 1개만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 3) 공급원 승인신청시 성능이 검증되어 사용성이 확인된 자재 중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작성방법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라) 첨부서류

-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명(단, 해외자재인 경우 납품 회사분 또는 사업자등록증)
- 2)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3) 납품실적증명서 또는 국토부 고시(철도용품 형식 승인·제작자 승인 시행지침)에 의한 형식승인대상용품으로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 ㉠ 국산자재의 경우(최근 5년 이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생한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
 - ㉡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 등에 납품한 실적은 계약서(또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추가 제출
 - ㉢ 외자재의 경우

다음의 ㉡ 제품자료 나.포함사항 2) ㉣ 항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에 따른 공장검사

를 실시함

㉔ 납품실적 없는 자재

- ㉑ 철도안전법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인증서
- ㉒ 표준규격(KS, KRS, KRCS, KRSA)에 등록된 자재는 해당 규격에서 정한 시험항목에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이 경우 반드시 생산 공장검수를 시행하여 적합여부 판단) 한다.

※ 생산 공장 검수 시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확인사항은 이 시방서 제1장/ 3.3.1자재관리/ (3)사급자재의 관리/ ③공급원 자재의 공장검수 다/ 항에 따른다.

- 4) 제품자료: 2.2.1/ (12)사급자재 관련 서류/ ②제품자료에 따른다.
 - 5) 견본: 2.2.1/ (12)사급자재 관련 서류/ ③견본에 따른다.
 - 6) 시험성과 대비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7)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시험결과보고서(시료 형상 등) 제출
 - 8) KS규격 표시증(인증서) 및 인증서(해당시)
- (마) 발주자(건설사업관리단 포함)로부터 기 공급원 승인이 된 자재
- 1) 기 공급원 승인이 된 동일회사의 동일 품목의 자재에 대하여는 기 승인된 공문으로 대체 승인하되 공인기관의 품질시험 성적서(승인요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자체 공인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기 공급원 승인 공문유효기간 : 승인된 날로부터 1년간)
 - 2) 다만, 공문유효기간(승인된 날로부터 1년간)이 지났어도 승인요청당시 철도 현장에 반입중인 자재의 경우는 공인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최근 3개월 이내 자체 공인 시험성적서 포함), 품질보증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건설사업관리단 반입증명서 필요)
 - 3) 납품회사(대리점 포함)가 변경될 경우 납품회사(대리점)의 사업자 등록증, 품질보증각서 제출
 - 4) 기 공급원 승인이 된 동일회사의 동일 품목의 자재 중 승인요청 당시 기 승인된 현장의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신규 공급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5) 기 공급원 승인이 된 동일회사 동일품목 중 규격이 다른 경우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바) 발주자는 공급원으로 이미 승인한 업체에 대하여 1년 이상 납품한 실적이 없거나 최초 승인 당시의 공급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기록(자체 품질검사 기록, ISO인증 심사기록, 구매자에 의한 검사/시험기록 등)이 미흡한 경우, 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급원의 공장을 직접 검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재의 생산 공장에 대한 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사) 제출 시기 및 부수
- 1)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는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 2) 이 시방서 각 항에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로서 제1장/ 2.2.1/ (12)사급자재 관련 서류/ ②제품자료/ 나.포함사항/ (나)/ ㉔항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제출한다.

② 제품자료

(가) 자료제출 대상 자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 시 제품의 자료를 제출할 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지방서 제1장/3.1.1/ (3)사급자재의 관리/ ⑤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부재에 따른다.

(나) 포함사항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한다.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는 12개월 이내의 품질시험성적서로 사본의 경우는 수급인이 사전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 KS, ES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인증품목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제외

㉡ 동일품목의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자재 납품시 제출가능(조건부 승인)

㉢ KS를 받지 못한 국내·외 특수자재의 완제품이나 일부 부속품이 해외자재로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인증범위 ㉣항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해외 생산회사의 품질보증서 및 사용실적서로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대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인증범위

㉠ 관련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규정한 품질시험 대행 국·공립시험기관)에서 인증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국제 시험기관 인증기구 협의회의 상호 인증 협정에 서명한 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공인시험기관의 12개월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기관이 시험 전 항목을 시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험항목을 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한 결과를 종합 판정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자는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에 의뢰하여 진위여부 확인

- 유선(온라인) 확인보고서 작성

- 위·변조 확인 시 발주자에게 근거를 첨부하여 즉시 보고

- 주관부서(철도공사)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확인 시 관련법에 의해 고발조치 등 행정 조치 시행

[예 : 형법 제20장(문서에 관한 죄)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234조(위조문서 등의 행사)]

3)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 지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이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이 지방서 각 장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 견본

(가) 제출대상 자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 시 견본을 제출할 대상 자재의 종류는 실내에 보관이 가능한 자재를 대상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포함 사항

- 1) 자재의 견본
- 2)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 3) 납품 소요시간
- 4) 기타 이 시방서 각 장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 품질검사 대장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①항 ‘별지 제42호 서식(품질검사 대장)’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품질검사 대장을 작성하여 시험자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해야 한다.

⑤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수급인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한다. (【별지 제18호, 제19호 서식】)

⑥ 자재 검수부

수급인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자재검수부를 작성한다.

⑦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 서식】과 같이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며 품질 부적격 자재발생현황 관리대장을 【별지 제22호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관리한다.

(13) 지급자재 관련 서류

- ① 수급인은 공사 시작 후 지급자재 청구서 【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행부서의 장에게 지급자재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행부서의 물품담당자는 물품관리규정 등 철도공사 각종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지급자재를 인도받은 수급인은 지급자재 영수서 【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행부서의 물품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급자재를 지급받은 수급인은 지급자재 수불부 【별지 제25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1부는 수급인 현장사무소에 갖춰두어야 하며 지급자재 저장장소에는 현품표 【별지 제26호 서식】를 따로 갖춰두어야 한다.
- ④ 공사감독자는 지급자재 수불 및 사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수급인은 지급자재 사용현황 【별지 제27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급자재 사용·보고에 관하여는 철도공사 각종 규정에 따른다.

- ⑥ 수급인은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시공상세도

① 제출 및 승인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을 시공 전 상세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나) 수급인은 레일의 절연위치 및 레일 현장용접 위치를 표시한다.

(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며, 작성 대상은 공사조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철도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상세도 작성 시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를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준공상세도를 이 지방서 제1장/ 2.2.1/ (23)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②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및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설계서의 요구 사항을 종합 하여 작성하며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 정보를 명시한다.

③ 작성대상

(가) 현장여건에 따른 선로기울기 적용 및 평면선형 조정 계획

(나) 궤도구조별 적정 도상두께 확보를 위한 궤도표준단면

(다) 직결식 분기기 개량 시공순서도 및 상세 시공계획

(라) 콘크리트궤도의 배수처리도

(마) 콘크리트궤도 시공이음 및 신·수축이음부 위치, 간격, 설치방법, 재료 등 상세도면과 시공법

(바) 침목배치도

(사) 운행선 및 운행선 인접공사에 따른 시공순서도 및 상세 시공계획

(아) 단계별 시공계획 변경 시 변경에 따른 시공순서 및 상세 시공계획

(자)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을 요구한 사항

④ 도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

도면상에 도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도면에 주석으로 설명한다.

⑤ 도면크기 및 축척

(가) 도면크기: A3

(나) 도면축척: 시공상세도 종류별로 알맞은 축척 사용

⑥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수 전, 2부

(15) 중요 문제점 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수행 과정에서 중요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며,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① 현장조사 결과
- ② 현장 보호대책
- ③ 기타 관련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

(16) 진도 보고

① 공사일지

수급인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익일(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 09:00까지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② 공사진도 보고

수급인은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공사진도 보고를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익월 5일까지 1부를 제출한다.

(가) 해당 기간에 수행한 실공정 및 익월계획

(나) 해당 기간에 사용한 주요 장비실적 및 익월계획

(다) 공종별 실투입 인원 및 익월계획

(라) 자재 보유현황 및 현장반입 관련 현황

(마) 사전 검토사항

계획된 공정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게 될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그 원인의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한다.

(바) 부진공정 및 만회대책

수급인은 예정공정대비 실제공정을 비교하여 예정공정의 90% 미만인 공종에 대하여 부진사유를 분석하고 시공계획 전반 사항을 재조정하여 만회계획을 수립한다.

(【별지 제30호 서식】)

(17) 사업시행 계획

① 연간 사업시행계획서

수급인은 당해 연도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총괄 및 세부추진일정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매년 1월 말까지 2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월별 자금소요계획서

수급인은 해당기간 내 자금실적 및 해당 월 이후 자금소요계획서를 공사감독자 요구 시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한 주기에 따라 2부를 제출한다.

(1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①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예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서류의 제출, 착공 및 준공에 관련한 관계기관 과의 협의 등의 행정업무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한다.

②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날인하며,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직인날인을 받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9) 공사 사진

①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디지털 사진 전자화일 포함)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며, 공사감독자 요구 시 또는 준공 시 이 지방서 제1장/ 2.2.1/ (23)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② 촬영방법

(가)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해체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 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한다.

(나) 사진 촬영 시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scale), 폴(pole), 표척(staff) 등을 세워 동시에 촬영하되 연속된 시공과정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동일한 각도로 공사착수 전, 시공 중, 시공 완료 후로 구분하여 촬영한다.

(다) 특히, 사진만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구조물 완공 후에도 특별관리가 필요한 개소는 비디오 촬영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한다.

(20) 공사실명제

① 수급인은 공사, 감리 실명관리에 따라 공사 참여자의 개인기록 및 기관기록을 해당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요구 시 또는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② 수급인은 외부기관 및 발주자의 공사현장 점검 시 방문일지를 기록·관리하며 공사감독자 요구 시 또는 준공 시 관련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1) 설계변경 요청

① 설계변경 요청 시 제출 서류

(가) 수급인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및 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항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할 때 작성방법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다) 설계변경 설계서

- 1) 설계변경(제 회)설계서 표지
- 2) 설계변경(제 회)설계서(【별지 제31호 서식】)
- 3) 목차(차례)
- 4) 설계변경설명서(【별지 제32호 서식】)
- 5) 설계변경사유서(【별지 제33호 서식】)
- 6) 공사(추가)시방서(【별지 제34호 서식】)
- 7) 과업(추가)내용서
- 8) 설계변경예정공정표(【별지 제35호 서식】)
- 9) 설계변경예산명세서
- 10) 설계변경공중별예산조서
- 11) 설계변경지급자재조서
- 12) 설계변경철거발생품조서

- 13) 설계변경철도공사제공기계기구조서
- 14) 설계변경 철도공사직원급명세서
- 15) 설계변경일위대가표
- 16) 합의서
- (라) 설계변경(제 회)설계도
- (마) 설계변경(제 회)단가산출서
- (바) 설계변경(제 회)수량산출서
- (사) 주요구조물 변경에 대한 구조계산서
- (아)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사진 등)
- ② 공사기한 연기 시 제출서류
 - (가) 제출서류
 - 1) 준공기한연장 사유서(【별지 제36호 서식】)
 - 2) 준공기한연장 공정표(【별지 제37호 서식】)
 - 3) 준공기한연장 결의서(【별지 제38호 서식】)
 -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 ③ 제출 시기 및 부수: 사유 발생 시, 각 3부
- (22) 기성검사신청서
 - ① 공사기성부분 검사(정식)
 - (가)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제출서류
 - 1)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39호 서식】)
 - 2) 기성부분 수량산출서
 - 3) 기성부분 개소별명세서
 - 4) 기성부분 준공조서(【별지 제40호 서식】)
 - (다)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 ② 기성검사신청서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공사 기성부분 사진첩(약식 기성검사신청서는 제외)
 - (나) 안전관리비 사용명세
 - (다)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라)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실시여부
 - (마)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 (바) 시험기구의 갯수와 활용여부
 - (사) 지급자재 관리실태
 - (아) 기타 기성부분검사에 필요한 사항
- ③ 공사간이기성부분 검사(약식)
 - (가) 발주자는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간이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나) 간이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할 때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간이 기성부분 개소별 명세서【별지 제41호, 제42호 서식】, 간이 기성부분준공조서【별지 제43호 서식】를 확인한 후 간이 기성부분준공조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간이기성부분 검사시 3회마다 1회는 정식기성검사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3) 준공서류

① 준공도서 인계계획서

(가) 수급인은 준공검사 3개월 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당해 공사의 준공자료(기록) 인계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인계계획에 따라 준공자료(기록)를 발주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 1) 사업명
- 2) 계약자명
- 3) 준공도서 자료내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상 제출자료 포함)
- 4) 자료의 형태 및 수량
- 5) 이관 일정

(나) 준공도서 파일링 기준, 편철방법, 이관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및 제규정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② 제출 시기 및 부수

(가) 준공계는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하고, 그 외의 문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요구한 일정 부수를 제출한다.

③ 공사준공 준비

(가)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나) 한국철도공사의 각종규정 및 관련법규에 따라 다음을 준비하여야 한다.

- 1) 한국철도공사의 각종규정에 의하여 선로중심 측량을 시행하여 선로곡선 시중점(BC, EC 또는 SP, PC, CP, PS) 및 주요 중심 또는 이에 대한 보조점에 말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공사준공도 작성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정한 도면작성 기준에 따라 도면 표준화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3) 수량산출서 작성은 한국철도공사의 각종규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한 수량산출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4) 아래 ④호 바에 의하여 준공 개소별명세서를 작성한 후 준공조서 등의 공사준공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5) 준공지급자재 조서 및 준공철거발생품 조서를 작성하고 잔량에 대한 반납 조치 등의 지급자재출납 및 사용을 정리하여야 한다.
- 6) 수급인은 공공시설, 국공유지 및 사유지의 망가진 부분은 원상복구 등 민원사항을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④ 공사 준공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공사준공계(【별지 제44호 서식】)
- (나) 준공검사보고서(【별지 제45호 서식】)
- (다) 공사수도증(【별지 제46호 서식】)
- (라) 감독조서(건설사업관리조서)
- (마) 준공조서(【별지 제47호 서식】)
- (바) 준공개소별 명세서
- (사) 준공지급자재조서
- (아) 준공철거발생품조서
- (자) 준공운송비
- (차) 준공계약수수료
- (카) 준공도
- (타)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한 문서

⑤ 준공검사신청서

준공검사신청서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공사기록사진첩 및 전자파일(CD 등)
- (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 (다)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또는 각종 시험성적서
- (라) 준공선로횡단도
- (마)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결과보고서
- (바) 선로제표(곡선표, 구배표 등)
- (사) 준공내역서, 준공 CD(준공도 등)
- (아) 대장(공사대장, 건널목대장 등)
- (자) 카드(건널목 등)
- (차)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카)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타) 기타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서류, 공사기록 자료 및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보고서

⑥ 공사준공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준공 준비사항을 이행하고 공사감독자의 점검 및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원【별지 제48호 서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준공 검사

- (가)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자 및 검사기간을 정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준공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 1)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2)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실시여부

- 3) 품질관리에 따른 각종 시험실시 여부
- 4) 지급자재의 관리실태 및 철거발생품 처리 적정여부
- 5) 시공 후 매몰된 부분에 대한 공사기록사진
- 6) 공사준공 준비사항

(다) 준공검사결과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증감처리 하여야 한다.

⑧ 수급인은 준공 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에 따라 발주자에게 관련 도서를 제출한다.

⑨ 공사 수도증

발주자는 준공검사에 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수도하고 수도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24) 하도급 관련 서류

①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②항에 의거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 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하도급 계약 통보서에 첨부할 문서

- 1) 하도급 계약서(안)
- 2) 하도급 사유서
- 3) 공사량, 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원도급 대비 하도급 비율)
- 4) 하수급인(예정) 사업자 등록증 및 건설업면허증 사본
- 5) 하수급인(예정) 납세증명서
- 6) 하수급인(예정) 예정공정표
- 7) 하수급인(예정) 사용인감계
- 8) 하수급인(예정) 현장대리인 선임계
- 9) 하수급인(예정)의 전년도 관련 공사 시공실적
- 10) 하수급인(예정) 건설기술인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11) 공사비지급 확약서 또는 공사비 직불동의서
- 12)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

(다) 제출 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각 2부

② 일부하도급 통보서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 등의 통보) 및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나)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별지 제49호 서식】)에 첨부할 문서

- 1)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사본
- 2) 공사량(규모),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원도급 대비 하도급 비율)

- 3) 하수급인(예정) 사업자 등록증 및 건설업면허증 사본
 - 4) 하수급인(예정) 납세증명서
 - 5) 하수급인(예정) 예정공정표
 - 6) 하수급인(예정) 사용인감계
 - 7) 하수급인(예정) 현장대리인 선임계
 - 8) 하수급인(예정)의 전년도 관련 공사 시공실적
 - 9) 하수급인(예정) 건설기술인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다)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각 2부

(25) 공사기록

- ① 공사착수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시공정도, 기상조건 및 시험성적 등 필요한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준공시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한다.
- ② 입회 및 자료제출
공사완공 후에 확인이 곤란한 건조물 내부에 매설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립하는 재료의 강도 등에 있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형상,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한다.
- ③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과 시공 중에 추후 확인 또는 검사가 곤란한 매물부분은 물론, 실제 시행된 기술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한다.
- ④ 주요기록 보존사항
 - (가)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 궤도부설 전 과정에 대한 천연색 기록사진
 - (나) 특수장비의 효율 및 시공실적
 - (다) 전용공법 및 주요공종에 대한 시공기록 비디오 촬영
 - (라) 공사품질관리 시험성과표

2.2.2 재료

내용 없음.

2.2.3 시공

내용 없음.

3. 자재관리 및 장비취급관리

3.1 자재관리

3.1.1 일반사항

(1) 공급원과 품질요건

- ① 수급인이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는 계약서 및 품질조건에 따른다.
- ②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③ 수급인은 이미 승인받은 자재공급원에서의 자재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 제1장/ 3.1.1/ (3)사급자재의 관리에 따라 공사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궤도재료는 KS/KRS/KRCS/KRSA 규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KRS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시한다.
- ⑤ 궤도재료의 일반적인 자재관리 및 품질보중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 ⑥ 공사감독자는 시험성적서 원본(부분 또는 사본), 시험결과보고서(시료 형상 등)를 공인시험기관에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의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선(온라인) 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 자재에 대한 수불부 작성/관리 및 세금계산서 사실 여부(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하고 조회 결과보고서를 작성 관리한다.
- ⑦ 공사감독자는 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의 위·변조 및 부적격 자재로 인한 하자발생 시 발주자 절차서에 따라 조치한다.

(2) 적용기준

① 사용자재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가설시설물용 자재 제외)를 사용한다. 다만,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다음 각호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적용을 기본으로 한다.
- 2) 「철도안전법」에 의한 한국철도표준규격 표시품(이하 KRS 표시품이라 한다.)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의한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 용역업자(품질검사용역업자) 또는 국·공립시험기관에서 한국산업표준 또는 한국철도표준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시행하여 KS 또는 KR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제①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R)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녹색(친환경) 자재와 제품을 의무(우선)

적으로 적용한다.

- 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제②항에 따라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같은 법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자재와 제품을 의무(우선)적으로 적용한다.

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①항 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㉕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㉖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제①항 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 6) 한국철도공사(KRCS) 또는 공단(KRSA)에 등록된 규격용품에 등록된 규격용품

(나) 위 가 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때는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② 사용제한

(가)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된 자재에 대하여는 사용 제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를 하지 아니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3) 사급자재의 관리

① 사급자재 재료수급

(가) 사급자재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생산하며, 일일 생산량, 제작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에게 공급원 승인을 받아 수급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제작공장에 대한 설비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설비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지적될 경우 수급인은 공급원 변경 또는 설비보완을 하도록 한다.

(다) 사급자재 중 주요자재는 ISO의 품질관리 및 보증절차에 준하는 관리를 하며, 생산 전 제작자로부터 작업절차서를 받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라) 수급인은 제작(일정) 일정 및 제도자재 규격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는 검토 후 승인하며, 주요자재의 경우 발주자 입회하에 시료 채취 및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최초) 한다.

(마) 공사감독자는 고의로 부적합자재나 미승인 자재(시험성적서 위·변조 포함)를 납품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업공정에 지장을 초래한 납품업체에 대하여 확인즉시 공급원승인을 취소(납품금지)하여야 한다.

(바) 부적합품 납품에 따른 공정 지장 등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사) 또한, 발주자의 타 현장에서도 위의 사례를 근거로 해당제품에 대하여 공급원승인을 취소(납품금지)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사급자재의 사용

(가) 사급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이 지방서 제1장/ 2.2.1/ (12) 사급자재 관련 서류/ ①사급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사급자재 중 철도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재(침목, 분기기 등 상세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원 자재의 공장검수

(가) 공사감독자는 주요 궤도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서류 검토 시 직접 공급원의 공장을 확인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공장검수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장검수에서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한 후에 자재 반입하며, 승인받지 않은 자재 반입, 서류 오류 및 불량제품을 반입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 및 공기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생산공장 확인사항

- 1) 품질관리상태(품질관리계획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등)
- 2) 품질관리실 또는 연구실 운영상태
- 3) 시험장비 및 인원 등 보유현황
- 4) 생산품 관리상태
- 5) 생산품 하자관리상태
- 6) 기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 사용자재의 적격성(시방서, 설계도면, 자재설명서와 비교)

④ 반입 시기

(가) 수급인은 자재 반입 품질검사 소요일수를 고려하여 사전에 자재를 반입한다.

(나) 수급인은 자재를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 반입한다.

(다) 적재장소를 고려하여 깐자갈 등은 공사 진행에 따라 수급한다.

⑤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부재(「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가)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건설자재·부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는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발행된 공인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 1) 직결식 분기기
- 2) 레일체결장치(부속품 포함) 등 각종
- 3) 철근, 레미콘 등의 건설자재
- 4) 기타 건설부재 등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재·부재
-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5조(건설자재·부재의 범위) 제③항에 규정된 건설자재·부재

(나)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등에 의해 확인을 받은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부재가 발주자의 품질관리 요구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품질요구 조건에 만족하도록 해당 건설자재·부재를 검증, 관리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중 현장 반입 시 품질확인을 위하여 **【별표 2】**의 자재에 대하여는 추가로 관리시험을 시행한다.

⑥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제품 반입 시 궤도자재 표준규격서에 명시된 시험빈도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자재 제조사로부터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4) 지급자재의 관리

① 검사 및 확인

(가) 지급자재의 운반

지급자재에 대한 운반은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한다.

- 1) 설치도: 궤도재료의 제작 궤도부설 현장에 운반한 설치하는 조건
- 2) 상차도: 궤도재료의 생산 제작 공장 또는 가장 가까운 역(최기역)에서 운반차량에 상차하는 조건
- 3) 차상도: 궤도재료를 생산하여 궤도부설 현장 또는 궤도공사전진기지까지 운반하는 조건 (상차포함)이며, 현장 하화는 별도
- 4) 현장 도착도: 궤도재료를 생산하여 궤도부설 현장 또는 궤도공사 전진기지까지 운반하여 하화하는 조건

(나) 지급자재의 검사 및 확인

지급자재에 대한 운반 및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도착도인 경우는 도착 완료 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1) 납품서
-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 3)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 여부
- 4) 납품기일
-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납품되는 품목)
- 6) 구매계약 문서(궤도자재 표준규격서)에 규정된 품질확인 문서

② 지급자재의 품질 등

(가)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궤도자재 표준규격서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중 현장 반입 시 품질확인을 위하여 **【별표 2】**의 자재에 대하여는 추가로 관리시험을 시행한다.

③ 지급자재의 관리

(가)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나)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④ 수급인 지급자재의 공급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위 ④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납하거나 수급인이 사용 당시의 구매가격에 의한 대가를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⑥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때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이라 함은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수량 확인 오류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 ⑦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 수급인은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재료의 취급

- ① 재료는 취급 시 손상, 파괴, 충격,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② 공사용 재료의 상·하차 장소, 수량,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 ③ 공사용 재료는 도난, 화재, 열차지장 및 열차방해 방지에 유의하여 보관하되 보관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 ④ 재료의 적치 및 보관 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재료는 노반에 직접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나) 자재는 공사 시에 사용재료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적치해야 하며, 재료별 반출·입 일자, 수량, 규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다) 주요 궤도부속품 등은 보관 등급을 정하여 등급에 따른 보관·관리요건을 정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⑤ 재료의 적하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재료의 적하 시에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트롤리 및 화차에 적재 시 표시중량 이내로 하고 편적되지 않도록 하며, 운반 중 붕괴되지 않도록 결속을 한 다음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적하 시에는 충격 등으로 손상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로, 전차선, 신호설비 등 다른 시설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라) 레일을 트롤리 또는 화차에서 인력으로 내릴 때는 던지지 말고 미끄럼대를 사용하고, 크레인 등 장비 사용 시는 힘 또는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하며, 목재받침대를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마) 침목은 파손되거나 응력 이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떨어뜨려서는 안 되며, 만약 떨어뜨려서 파손되거나 이완이 일어날 때는 신품으로 교환한다.

(바) 레일체결장치가 가조립된 상태에서 운반되는 경우 침목 운송 시 레일체결장치가 이탈하지 않도록 하며, 소정 크기의 목재 받침대를 사용하여 손상 또는, 편압, 이상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⑥ 지급자재 중 레일운송(도로운송) 시 안전수칙에 유의하여 레일의 변형 등을 방지토록 한다.

(가) 레일 도로운송 시 다음과 같은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1) 운행허가 노선으로만 운행하고 허가된 기간에만 통행할 것
- 2) 차량 전후 및 최대폭 좌우에 안전시설물(깃발, 경광등, 야간안전신호 표시등) 설치.
- 3) 화물이 낙하 되지 않도록 결속 조치 철저히 할 것

(나) 레일 적재 및 결속

- 1) 받침목은 적재함 폭과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레일보다 30cm 이상 나오게 한다.

- 레일 받침목 고임 표준 : 25m 레일의 경우 슬라이드 4m, 6개소(3m~4m 간격)
- 2) 적재된 레일은 흔들림이 없도록 정렬하고 단단히 결속한다.
- 레일 길이별 결속 위치 표준 : 25m 레일의 경우 4개소 이상
- 3) 화물이 낙하 되지 않도록 결속 조치 철저히 할 것

(다) 현장 진입 시 안전수칙

- 1) 현장 도착 후 경적을 울리고 도착을 알리며, 위험요소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 2) 차량 스톱퍼 설치 여부를 확인할 것. 특히 경사면일 경우 설치 요청 후 진입할 것
- 3) 야간조명 부실로 후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은 조명 설치를 요청하고 진입할 것
- 4) 특히 장마철 침하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 때 저속 진입하고 경사면 등을 피할 것

(라) 현장 내 안전수칙

- 1) 안전모, 각반,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및 슬리퍼, 운동화 뒤꿈치 꺾고 신는 행위 금지
- 2) 송장 기재 내용과 현장일지 확인

(6) 재료의 관리

레일, 침목 등 재료의 관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레일, 침목 등의 적재, 적하는 적치, 적하용 기기와 장비를 사용하며, 레일의 적치 장소에는 레일의 구부러짐이나 휨 등으로 버릇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간격으로 목재 받침대를 설치한다. 또한, 적치 장소는 지반침하가 없어야 하고, 한곳에 모아 보관하되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세워야 한다.
- ② 레일
 - (가) 레일의 좌, 우측 레일을 구분하여 한쪽 단면을 일직선이 되게 적치한다.
 - (나) 장대레일의 적치 시 레일 저부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한다.
 - (다) 일정한 장소에 장기간 보관하는 레일 적치 시에는 15개, 5단 이하로 적치(레일길이 25m 기준)하며, 레일저부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을 벌려서 적치하여야 한다.
 - (라) 레일은 다음 표에 따라 단면을 도색하여 일정한 장소에 한쪽 단면을 일직선으로 되게 쌓고 레일종별, 길이 및 수량을 표시한 표지판을 세워야 한다.

표 3.1-1 레일 사용 구분

구분		단면 도색	선별 기준
신품	보통	백색	· 신품으로 본선 사용이 가능한 것
	열처리	황색	
중고품	보통	청색	· 일단 사용했다가 발생한 것으로 마모상태, 길이 등이 다시 사용 가능한 것
	열처리	황색(두부) 청색(복부, 저부)	
불용품		적색	· 훼손, 마모한도 초과, 단척 기타레일 종류상 불용 조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
기타			· 상기 이외의 것은 파 쇄물리로 취급한다.

③ 침목

- (가) 침목은 침목 중앙부가 지점(支點)이 되지 않도록 목재 받침대를 설치하되 레일체결장치

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광폭 침목의 적치는 10단 이하로 하며, 각재는 체결장치 최상단 높이보다 10mm 이상 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레일패드 등은 창고 또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그늘진 장소에 보관한다. 공사 시에도 취급에 유의하는 등 품질보장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7)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① 자재의 보관 부지

(가) 수급인은 자재 보관 적치 장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사용 불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며, 사용 후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한다.

② 품질변화 방지 조치

(가)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고, 수시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도상자갈의 경우 석산 및 중간 적치장에 야적된 자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층에 적재된 자갈 상차 시 토사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재 반입 시 품질 관리토록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 투입 전에 자재의 품질에 대하여 검사한다.

(라)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③ 지급자재의 관리부 작성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한다.

④ 자재 운반

(가) 수급인은 자재의 운반 방법 및 기기사용에 대하여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영업선을 횡단 또는 근접하여 중량물 및 장대물을 운반할 때는 장소, 수량, 시간 및 방법에 대하여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수용차, 트롤리, 궤도용 대차 및 자동차 등에 의하여 운반할 때 굴러 떨어지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보수용차 사용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원을 동승시킨다.

⑤ 화기 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한다.

⑥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⑦ 재고자재 선별 사용

궤도재료는 적재현황을 고려하여 재고자재 또는 기존 보관자재를 선별 사용토록 한다.

- (가) 보관된 레일 저부 및 저부 상면의 녹은 레일 체결시의 걱정 여부를 확인한 후 유해 시 조치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 (나) 이외 보관된 주요자재의 경우 성능 및 외관 상태 등 변질, 변형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3.1.2 재료

내용 없음.

3.1.3 시공

내용 없음.

3.2 장비취급 관리

3.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① 수급인이 궤도부설, 임시선 및 궤도절체 구간에 궤도를 부설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궤도장비 취급에 대하여 규정한다.
- ② 수급인은 궤도부설장비 사용 시에 「철도안전법」에 의거한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보선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한다.

(2) 제출서류

수급인은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비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장비의 취급

수급인은 장비의 취급 시에 다음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 ① 모터카는 「운전취급 규정(한국철도공사)」에 따른다.
- ② 수급인은 트롤리 및 자주식장비, 궤도장비(MTT, STT, DTS, RE)의 운전취급 및 취급자 자격요건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한국철도공사)」에 의하며, 취급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수급인은 트롤리 및 자주식 장비의 운전취급 및 조작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한국철도공사)」에 트롤리 및 장비운전 사항에 따라야 한다.
- ④ 모터카 사용에 대한 운전협의를 공사감독자가 관계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⑤ 수급인 모터카가 본선 운행 시에는 발주자가 임명한 자만이 운전 및 조작을 할 수 있다. 다만, 차단 공사 이외의 구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⑥ 운전 취급자는 명찰 및 완장을 착용하고 당해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모터카에 자격증 사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⑦ 장비운전속도
 - (가) 장비의 최고속도는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한국철도공사)」 제67조(장비 운전속도) 규정에 따라야 한다.

표 3.2-1 장비 운전속도

구분	운행 속도	장비명
1	160km/h	종합검측차
2	140km/h	궤도검측차(T1)
3	120km/h	전철시험차(OWMC), 선로점검차(TIC)
4	90km/h	멀티플타이템퍼(MTT, SMTT), 스위치타이템퍼(STT), 궤도안정기(DTS), 레일탐상차(RDC)
5	80km/h	밸러스트콤팩터(CO), 밸러스트클리너(CL), 밸러스트레귤레이터(RE), 모터카(MC, MSB), 분진흡입차(TVC), 전철보수장비(TML, TMM, TMS)
6	70km/h	대형침식차, 소형침식차(SCT), 호퍼카(CHC), 호퍼부수차(HSC), 유조트롤리(FLT, 영차), 살수트롤리(WLT, 영차)
7	60km/h	유조트롤리(FLT, 공차), 살수트롤리(WLT, 공차)

- (나) 운전형태 등에 따른 제한속도는 다음과 같다.
 - 1) 폭풍우, 안개 및 그 밖의 사유로 전도주사가 곤란한 때에는 신호기 앞에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 2) 둘 이상의 장비를 연결한 경우 최고속도는 연결된 장비 중 최고속도가 가장 낮은 장비의 최고속도를 적용하며, 추진운전의 경우는 25km/h 이하로 한다.
 - 3) 제동장치가 있는 모터카 트롤리(10톤)의 견인 운전속도는 50km/h 이하로 하고, 제동장치가 없는 모터카 트롤리를 연결하고 운전할 경우 다음 각 항과 같다.
 - ㉔ 장대 트롤리의 경우 10km/h 이하
 - ㉕ 모터카 트롤리(5톤)의 경우 30km/h 이하
 - ㉖ 모터카 트롤리(10톤)의 경우 40km/h 이하
- (다) 수급인은 장비의 운전실에 최고속도와 제한속도를 게시한다.
- (라) 차단장비의 작업 또는 이동시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임의운행은 금지한다.
- (마) 동일작업구간 내 2개 이상의 장비작업 시, 장비이동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책임자 통제하에 제동 안전거리를 확보토록 한다.

⑧ 모터카와 트롤리 연결 간격

모터카에 트롤리를 연결하고 운전할 때는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모터카의 적재 및 견인중량

- (가) 수급인은 모터카 차체에 적재중량과 견인중량을 표기하여야 하며, 중량을 초과하여 적재하거나 운전할 수 없다.
- (나) 자동연결기와 공기관통제동기를 갖춘 모터카는 침식차(비상차) 또는 화차를 연결하고 운전할 수 있으며, 이때 최대 견인량수는 다음과 같다.

표 3.2-2 모터카 최대 견인량수(환산)

기울기 \ 종별	15 ton형	25 ton형	45 ton형	비고
10/ 1,000 미만	3.4 량	5.1 량	6.8 량	
10/ 1,000 이상	1.7 량	3.4 량	5.1 량	

- (다) 위 나 항에 의하여 다른 차량을 연결하고 운전할 때는 「운전취급 규정(한국철도공사)」에 정한 바와 같이 상호연결하고 제동시험 등 운전상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운전한다. 또한 화차를 연결 또는 해방할 때는 「운전취급 규정(한국철도공사)」의 ‘제2장 운전 제7절 차량의 입환’에 준한다.
 - ⑩ 수급인은 각종 재료의 상, 하차 및 운반, 공사에 사용하고 있는 백호우(backhoe) 장비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여 정밀한 공사를 시행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⑪ 수급인은 시공사 자체 모터카 및 조작자를 공사에 투입하여 운용하여야 하므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과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한국철도공사)」에 의거 시공회사 운전취급자의 자격 및 장비취급요령 등을 숙지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관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4) 궤도장비 운용 및 관리
- ① 궤도장비 운용 및 관리는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 (가) 도상다지기 작업은 궤도장비로 시행하며, 대상 장비는 철도공사와 협의에 따른다.

- (나) 수급인은 임대장비 사용 중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 (다) 수급인은 임대장비에 대한 조작자, 연료, 윤활유, 공구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윤활유의 등급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과실은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 (라) 수급인은 임대장비를 포함한 중장비 장비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한다.
- (마) 수급인은 투입하는 장비의 기종이 공사 내역에 반영된 기종과 성능, 가격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장비조달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바) 수급인은 조달장비에 대하여 공정에 맞게 적기조달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며 이로 인한 공정추진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면 책임을 진다.

② 임대장비의 운용

- (가) 발주자 장비의 사용은 공사시점에서 장비운용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나) 한국철도공사 임대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의 손료, 조작자 인건비, 장비 운송비, 선로사용료 등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기타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부담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다) 철도전용 건설장비 임대비용은 사후정산 항목으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작업 불가 시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5) 각종 궤도장비의 작업 안전지침

①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궤도장비의 작업안전 지침을 따라야 한다.

- (사) 작업 자세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을 숙지하고, 운행선 근접공사 및 운행선상 작업 시에는 열차운전 상황을 파악하고 운전협의를 철저히 한다.
- (아) 장비의 이해
모든 조작자는 그 장비에 대한 모든 특성을 잘 소화하고, 이행한다.
- (자) 비사용품 및 예비부품 확보
단순한 고장에 대비하여 고장이 잦은 부품, 쉽게 훼손되는 부품을 파악하고 항상 예비품을 확보하고 만약을 대비, 응급복구용 장비 및 비상용품을 항상 준비한다.
- (차) 일상검수
수급인은 장비에 대하여 일상검수를 준수한다.
- (카) 운전관계 규정 숙지
사고와 직결되는 신호관계, 운전속도 및 열차방호 관계를 필히 숙지하고 반드시 역과 무선교신으로 확인 후에 운행한다.
- (타) 운전 취약개소 및 구내 배선숙지
선구마다 선로의 특성 급곡선, 속도제한, 신호의 특성 등 취약개소를 파악 숙지하고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운행토록 하고, 구내입환 전에 구내 배선을 익혀 장비의 진로가 맞

게 개통되었는지 직접 확인한다.

- (과) 무리한 작업 지양
- (하) 고장감지, 사고예방능력 배양

② 보선장비 운전원 수칙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보선장비 운전원 수칙을 준수한다.

- (가) 운전통보를 철저히 한다.
- (나) 각종 계기와 제동장치를 점검·확인한다.
- (다) 이동 전 각종 쇄정장치를 점검·확인한다.
- (라) 운행 중에는 장비의 성능에 따른 최고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 (마) 장비의 사소한 결함이라도 즉시 보수한다.
- (바) 장비 주위에서 화기 사용을 금한다.
- (사) 소화기는 주기적으로 충전(充填)상태를 점검하여 비치한다.
- (아) 주차 시 주차 브레이크 및 차륜지를 설치하고 정확한 주차여부를 확인한다.
- (자) 장비를 떠나기 전 장비가 안전하게 보호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백호우 운전원 수칙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백호우 운전원 수칙을 준수한다.

- (가) 공사작업장 주변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좋고 작업원이 출입하지 않도록 궤도 중심에서 2.5m 이상 떨어진 안전선(건축한계)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한다.
- (나) 모든 작업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단독작업은 절대 금한다.
- (다) 작업 중에 열차접근 시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궤도 중심에서 2.5m 이상 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한 곳에 정지한다.
- (라) 작업 중에 열차에 위급한 선로지장이 발생하였을 때는 우선 열차를 방호한다.
- (마) 열차운행을 중지(차단공사)하고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궤도중심에서 2.5m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 (바) 건축한계 밖에서 시행하는 작업이라도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하였는지를 수시로 확인한다.
- (사) 백호우 장비가 직접 궤도에 진입할 경우 고무타이어 부착장비에 한하여 시행하되, 부득이 무한궤도로 철도횡단 시에는 목침목 등으로 궤도 보호시설을 설치한 후 진입도록 하며, 무한궤도 바퀴로 인하여 침목이 손상된 경우에는 침목교환 등의 복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변상 조치한다.
- (아) 장비의 집계가 레일 또는 침목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고무보호 장치를 설치한 후 시행한다.

3.2.2 재료

내용 없음.

3.2.3 시공

내용 없음.

4. 품질보증 및 관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 (1) 수급인이 수립, 이행하는 품질관리에 대한 요건에 적용하는 것으로 발주자 품질관리 지침서를 기본으로 따라야 한다.
- (2) 수급인은 수행할 모든 작업에 대한 품질관리계획과 이의 이행을 위해 관련 절차를 수립, 유지한다.
- (3) 품질관리계획은 모든 품질 관련 업무 및 작업이 계약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4) 포장궤도구조 및 직결분기기 개량 최초 시공 시에는 품질확보를 위해 시공방법과 관련된 특허(신기술) 보유자의 전문기술인에 의한 기술지원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지원비는 기술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발주자에게 추가 요구할 수 없다.
- (5) 계약서의 품질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요건을 완화 또는 변경시킬 수 없다.
- (6) 품질보증 및 관리는 이 시방서 각 항에 공통으로 적용하며 각 항에 포함된 품질관리 요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1.2 용어의 정의

- (1) 관리본: 개정, 추가 기록 및 삭제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상 최신본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번호를 부여한 문서
- (2) 절차서: 어떤 활동 또는 프로세스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작업방법, 결과 측정 방법 등을 포함시켜 기술한 문서
- (3)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이용과정에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으로 품질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것이라는 신뢰 제공
- (4)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에 관련된 제반업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수립된 품질관리계획을 기술한 문서
- (5) 품질방침: 품질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의 최고 경영책임자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품질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의지와 방향
- (6) 품질 관련 문서: 절차서, 지시서, 도면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품질요건을 규정한 문서
- (7) 품질기록: 품질 관련 업무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완성된 서류
- (8)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품질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 책임, 절차, 공정, 자원 등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기술한 문서

4.1.3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출

- (1) 수급인은 이 시방서 제1장/ 2.2.1/ (7)품질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계획서는 계약서에 규정된 발주자의 품질관리

- 요구조건과 관계 법규를 만족하도록 작성한다.
- (2)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를 승인받으면 그 관리본 (개정번호 0)을 발주자에 제출한다.
 - (3) 수급인은 반드시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관련 작업이나 업무를 착수한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에는 조건부 내용과 관련이 없는 업무의 진행이 가능하다. 수급인은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건부 검토의견을 반영한 품질관리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4) 발주자가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서를 승인하기 전에 수급인이 수행한 업무나 작업은 사전에 문서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공기와 비용의 손실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5) 수급인은 발주자가 승인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다고 하여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 (6)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서 관리는 수급인의 책임이며, 계약 후 수급인의 모든 품질 관련 업무는 품질경영시스템 문서와 기타 계획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품질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그 품질관리계획서를 처음 작성, 제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 수급인은 계약범위 중 일부를 하도급 처리하여 하수급인이 별도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 품질경영시스템을 평가하여 수급인의 책임 하에 승인하고, 평가 후 14일 내에 평가보고서 사본 1부를 참고용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8) 이 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한 문서의 결함이나 부적합으로 인한 공기지연은 수급인의 손해배상 책임의무를 경감시키거나 면제시켜 주지 않는다.
 - (9)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업무는 해당 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이 항에 부합하는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를 수립하여 그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품질관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① 품질관리계획의 적용범위
품질관리계획의 적용 대상 구조물, 시설, 설비, 기기, 제품 및 업무
 - ②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배포 및 개정
 - (가) 작성, 검토, 승인, 배포 및 개정의 책임조직 식별
 - (나) 관리본의 배포
 - (다) 품질관리계획의 유효성 평가결과, 관련 규정, 법규, 표준의 개정, 고객의 기대와 요구사항 변경 및 시정조치 결과 등 개정 사유의 식별
 - ③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규정 또는 기술하고 있는 절차서(이하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라 함.)의 작성, 검토, 승인, 배포 및 개정
 - (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업무는 승인된 절차서, 설계서, 지침서에 의거 수행
 - (나) 작성, 검토, 승인, 배포 및 개정의 책임조직 식별
 - (다) 이 시방서의 각 장에 따른 절차서 개발
 - (라) 품질확인 조직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검토 및 승인

4.1.4 품질 관련 문서의 제출

- (1) 수급인은 계약 후 사용될 절차서의 상세 목록을 품질조정회의 시 참조용으로 제출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즉시 제출하며, 계약서 등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상기 절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관련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 (2) 수급인은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음의 문서 및 그 개정본을 제출한다. 이러한 문서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인의 책임조직이 승인 후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수급인은 아래의 문서 이외에도 계약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문서를 제출한다.
 - ① 수급인의 연간 품질심사계획
 - ② 품질심사 지적 사항을 포함한 품질심사보고서
 - ③ 발행 및 종결된 모든 부적합사항 보고서
 - ④ 품질경향분석 보고서
 - ⑤ 궤도자재 표준규격서(표준규격 제정 전인 경우 궤도자재 제작·구매 시방서)
 - ⑥ 품질기록 목록
 - ⑦ 기술 및 품질관리 요건이 포함된 구매문서

4.1.5 발주자의 권리

- (1) 당해 공사와 관련된 수급인의 모든 업무수행은 항상 발주자의 품질활동 즉, 품질검사(quality surveillance) 및 품질심사(quality audit)의 대상이 된다.
- (2) 발주자 또는 공사관리관은 수급인과 수급인의 주요 하도급업체의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품질관리계획의 유효성을 평가할 권리를 가진다. 품질검사 시 주요 지적 사항이 중복하여 발견되면 제작 또는 설치된 기자재나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동일 사항이 중복하여 지적받으면 제공된 용역이나 성과물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 (3) 수급인의 설계, 구매, 제작, 설치, 시공, 검사 및 시험 등에 대한 발주자의 품질검사 결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서가 품질관리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이 비효과적이고,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발주자 또는 공사관리관은 수급인에게 시정조치 또는 작업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4) 계약 수행기간 동안, 발주자 또는 공사관리관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설계, 제작, 설치, 시공, 검사 및 시험 등이 수행되는 모든 장소를 출입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하며 해당 품목 또는 업무를 검사, 감독 및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5) 발주자 또는 공사관리관은 품질경영시스템 이행 중 중요 문제점 발생 시 작업중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수급인은 작업중지 요구서 접수 후 즉각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이러한 작업중지에 따른 제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6) 발주자 또는 공사관리관이 수급인의 시설 및 설치 현장에서 품질검사 또는 입회검사를 수행한 사실이 수급인의 효과적인 품질관리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발주자의 품질검사 또는 입회검사가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면제시켜 주지 않는다.

4.1.6 품질관리 요건

수급인은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계열의 국제 품질관리 규격과 다음에 명시된 요건을 적용하여 품질관리시스템을 수립한다. 수급인은 본 품질관리 요건 적용 시 상충하는 점을 발견하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 품질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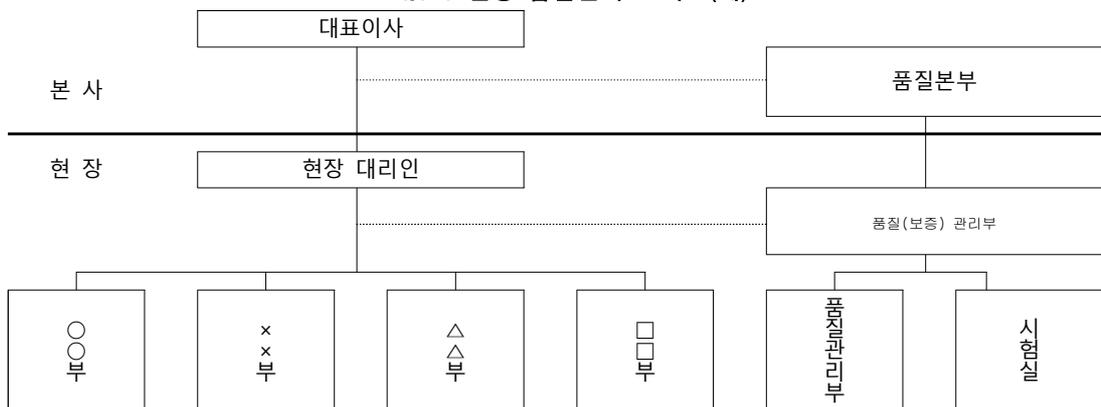
수급인의 경영책임자는 4.품질보증 및 관리 항의 품질관리 요건에 부합하는 수급인의 품질방침을 수립하고 서명한다. 품질방침은 품질관리계획서의 일부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① 수급인 회사 최고경영자의 품질에 대한 의지
- ② 수급인 현장조직의 품질목표
- ③ 발주자의 요구와 기대 반영
- ④ 수급인 조직원의 품질방침(품질관리계획) 숙지 및 이행준수 의무
- ⑤ 품질관리 조직의 책임과 의무 및 기능의 독립성

(2) 조직

- ① 수급인은 현장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현장에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하며, 본사 등에서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품질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②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행, 품질시험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며, 이 품질관리 조직은 관리대상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조직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비용과 공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 및 지위를 가져야 한다.
- ③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품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품질관리, 품질시험 등 본 공사의 품질 확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휘 관리하고,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에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며, 설계, 구매, 제작, 설치, 시공 등과 같은 품질달성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의 최고 책임자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수급인은 현장의 품질(보증)관리 수행을 위해 적임인 품질관리 요원(시험실 요원과 별도의 인원)을 상주 배치하며 현장 품질(보증)관리에 대한 조직표는 다음 표를 참고로 한다.

표 4.1-1 현장 품질관리 조직표(예)



- ⑤ 품질관리계획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 관리, 확인하는 모든 조직의 구조, 책임과 권한, 상호관계 및 의사전달체계를 명시하고 단위조직 내 각 직위자의 품질 기능상의 책임과 권한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직무기술서(분장표)를 포함한다.

(3) 고객 관련 프로세스

입찰문서와 계약문서에 명시된 일반요건, 기술요건 및 품질요건에 대해 내부 연관부서에 의한 적합성 검토를 한다.

(4) 문서관리

① 품질요건을 규정하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기술하는 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발행, 배포 및 개정관리를 위하여 절차서를 작성, 이행한다.

② 종합문서 목록

지침서, 절차서, 시방서, 도면 및 구매문서의 최신 개정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종합문서 목록이나 이와 상응하는 문서관리체계는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모든 문서는 해당 업무 수행 장소에 배포한다.

③ 품질관리계획서, 설계, 구매, 제작, 설치, 검사, 시험 등에 대한 문서 및 품질 관련 절차서와 지침서는 관리대상문서(관리본 문서)를 식별, 관리한다.

④ 문서의 검토 및 승인

문서는 정확한 품질 및 기술요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 해당 조직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구매

구조물, 시설, 설비, 기기 및 제품의 구매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절히 반영한다.

① 구매문서에 포함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공급)범위: 공급(수행)해야 할 품목(업무)범위 기술

(나) 기술요건: 성능요건, 운전(사용)조건 및 요구사항, 적용법규, 규격, 표준, 관련 설계문서 및 적용기준일

(다) 시험, 검사요건 및 적부 판정 기준

(라) 제작, 설치 및 특수 공정요건

(마) 청결, 포장, 운반, 선적 및 저장요건

(바) 품질관리요구 사항

(사) 문서제출 요건: 제출목적(검토, 승인, 참고용), 제출수량, 제출 시기 등

(아) 품질기록관리 요건: 제출해야 할 품질기록(형태, 수량, 시기)은 물론 수급인의 하도급 계약자가 유지, 보관해야 할 기록

(자) 품질검사 및 검사요건: 수급인 및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한 품질검사 및 품질 관련 문서/기록열람 권한 기술

(차) 부적합사항 관리 요건

(카) 예비 및 대체 부품

(타) 정지점 및 입회점 수립 요건

② 구매문서 검토사항

구매문서의 발행 전 기술 요건 및 품질관리 요건의 적합성에 대한 연관부서와 품질관리 조직의 검토

③ 구매품의 품질확인 문서

(가) 구매요건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품질확인 문서는 해당 장비의 현장설치 또는 사용 전에

현장에 비치한다.

(나) 품질확인 문서는 구매품목이 해당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품목과 일치함을 나타내는 식별표시를 포함한다.

(6)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식별 및 추적성

식별 및 추적이 요구되는 구매품(사용 자재)은 식별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를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한다.

(7)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프로세스의 타당성 확인

① 일반공정: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작, 시공 및 설치공정은 관리된 상태 하에서 수행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정확한 시방, 도면, 규정 또는 표준 적용

(나) 적합한 작업절차/지침서 사용

(다) 적합한 사용장비 및 환경조건

(라) 이행상태 확인

② 특수공정: 특수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특수공정으로 관리할 공정의 식별 및 특수공정 목록 작성

(나) 특수공정에 사용하는 장비, 업무작업자 및 절차에 대한 자격 인증 및 유지에 대한 절차, 책임조직 및 품질관리 조직의 참여 범위

(8) 제품의 시험 및 검사(모니터링 측정)

① 시방서, 도면, 규정 및 관련 규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품의 모니터링 측정은 제작, 설치 및 시공의 전 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② 검사 및 시험계획

(가) 검사 및 시험계획서는 제작, 설치, 및 시공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작성한다.

(나) 검사 및 시험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품질관리/검사조직이 검토한다.

- 1) 공정 진행 순서에 따라 작성
- 2) 검사, 시험대상 업무의 식별
- 3) 검사, 시험방법(관련 문서 및 개정번호)
- 4) 검사, 시험 책임조직
- 5) 해당 절차서, 도면, 시방서 및 개정번호
- 6) 발주자 및 수급인의 정지점 및 입회점
- 7) 필요 검사, 시험 및 계측장비
- 8) 검사, 시험결과 생성되는 성적서

③ 검사 및 시험성적서

검사 및 시험성적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검사/시험방법

(나) 선행요건(적용 시)

(다) 검사자/시험자 및 검사/시험 일자

(라) 적부 판정 기준

(마) 해당 절차서, 도면, 시방서 및 개정번호

- (바) 검사, 시험결과
- (사) 사용된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
- (아) 부적합사항 및 조치 내용
- ④ 검사자의 독립성: 검사는 검사 대상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감독하지 않고, 검사 대상 업무의 직속 책임자, 또는 책임조직에 직접 보고하지 않는 독립된 조직 또는 직원이 수행한다.
- (9) 부적합품의 관리
 - 규정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품목의 부적절한 제작, 설치, 시공 또는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합품을 식별, 문서화, 평가, 격리하고 처리방안을 결정하여 관련 조직으로 통보한다. 부적합품의 관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① 식별
 - (가) 품목의 특성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적합품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품목별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위 포장이나 다발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한다.
 - ② 격리
 - (가) 격리 가능한 부적합품은 처리방안 결정 시까지 명확히 구분된 별도의 장소에 격리, 보관한다.
 - (나) 격리 불가능한 부적합 품목은 부적절한 사용 또는 후속공정으로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③ 처리방안
 - (가) 부적합 품목의 처리방안이 용도변경, 특별채용으로 당초 설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당초 설계에 상응한 관리방법에 따라 발주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처리방안 중 용도변경 및 특별채용은 품질관리 조직이 검토한다.
 - ④ 경향분석
 - (가) 부적합 사항의 품질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부적합 보고서를 분석하고, 주요 결과는 상부 경영층의 평가와 해결을 위하여 보고한다.
 - (나) 경향분석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행 시마다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10) 제품의 보존
 - 공급 품목의 손상이나 열화 등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의 범위와 특성, 품목, 역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 ① 취급: 취급 시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주요 품목별 취급절차서를 작성한다.
 - ② 보관
 - (가) 품목의 제작완료 시점부터 설계상의 위치에 최종 설치 시까지 부식, 오염, 열화, 물리적 손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관, 유지방법에 대한 상세절차서를 수립한다.
 - (나) 계약범위 내의 품목은 저장방법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분류된 등급에 따라 보관한다.
 - (다) 저장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 ③ 포장: 보관기간, 보관조건, 취급조건 등을 고려하여 포장한다.
 - ④ 보존: 제품이 품질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방법을 수립한다.
- (11) 품질기록의 관리
 - ① 품질에 대하여 문서화된 증거인 기록·관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가) 기록의 작성 및 관리: 작성될 기록 및 그 기록의 관리 요건은 해당 절차서 및 구매문서에 명시한다.
- (나) 기록의 유효성: 품질관리계획 요건에 따라 작성되고 권한이 부여된 자가 서명 날인한 것만을 품질관리 기록으로 간주한다.
- (다) 기록의 식별 및 추적성: 기록은 해당 품질 관련 수행업무 또는 품목명 등을 정확하게 분류 및 식별하여 추적성을 유지한다.
- (라) 기록의 분류: 기록은 영구 또는 비영구 보존기록으로 분류하여 보존
- 1) 영구 보존기록: 다음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구보존 기록으로 간주한다.
 - ㉠ 품목, 설비 또는 시공의 안전성, 신뢰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기록
 - ㉡ 품목, 구조물, 설비의 유지보수, 제작업, 수리, 교체 또는 개조와 관련된 중요한 기록
 - ㉢ 사고나 오동작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기록
 - 2) 비영구 보존기록: 영구기록에 해당하지 않으나 품질 관련 수행업무 및 품목의 품질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기록으로 관련 법규 또는 사내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 ② 품질기록 목록
- (가) 수급인은 작성할 기록목록을 품질조정회의 시 제출하여 발주자 품질(보증)부서와 상호 협의·조정한다.
- (나) 기록목록에는 기록의 종류, 보존 기간, 보존형태, 생성 시기, 발주자 제출 일정 등을 명시하며 계약 기간 지속적으로 개정·관리한다. 또한, 계약종료 예정 60일 전까지 품질기록의 적절한 상태 및 이관을 발주자 품질(보증)부서의 확인을 받고 미비점을 보완한다.
- ③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수급인이나 수급인 하도급업체의 기록은 발주자가 승인한 수급인의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에 따라 보존하고, 보존 기간에 발주자는 이러한 기록을 열람 및 재생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④ 관련 업무가 종결되기 전 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기록을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수급인은 기록의 폐기 전, 그 기록에 대한 인수 의사를 문의하여 발주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 (12) 품질심사
-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과 효율적인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 ① 심사주기
 - (가) 품질관리계획서상의 각 품질요소에 대하여 수급인의 내부 품질심사는 최소한 연 1회 이상 수행
 - (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계약 기간 중 1회 수행
 - ② 심사계획 및 통보: 수급인은 매년 내·외부 연간 품질심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③ 심사결과 조치
 - (가)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치요구서와 함께 심사종료 후 20일 내에 발주자에 보고한다.

(나) 수급인은 심사종료 후 30일 내에 심사보고서와 발행된 시정조치요구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 심사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사업명, 제목, 일자, 범위, 심사자, 시정조치사항, 심사설명,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작성·검토·승인자의 서명

(라) 피심사 조직의 시정조치에 대한 책임사항 명시

④ 발주자의 품질심사 지적사항의 시정조치: 수급인은 발주자의 품질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심층 조사, 재발방지를 포함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조치요구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발주자에 제출한다.

(13) 적격성, 인식 및 교육훈련

① 적절한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 훈련

(가) 교육 및 훈련 대상 임직원과 적용기준, 규격 및 절차를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나) 품질 관련 업무착수 전 품질관리계획 및 관련 절차서에 대해 교육을 받은 직원의 배치

② 업무수행 직원의 자격인증

(가) 수행업무 중 품질검사, 시험, 특수공정 설계확인 및 기타 적합한 기능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특정업무 작업자의 자격인증에 필요한 교육, 훈련 및 기준

(나) 자격인증 기록의 유지관리

4.1.7 품질관리 추가요건

(1) 품질관리 추가요건은 이 시방서의 품질관리 요소 중 현장설치 또는 시공과정상의 품질검사와 관련된 사항(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9.1항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추가요건 및 발주자와의 연계업무(인터페이스) 관리기준을 제공한다.

(2)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ITP)

① 수급인은 계약 후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작성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대리인에게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를 제출하며, 【붙임 1】의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ITP) 작성·운용지침을 준용한다.

(가) 수급인이 시공, 설치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 및 시험 수행계획 제시

(나)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의 입회점/필수확인점 설정

(다) 발생예상 품질 확인문서의 제시

② 시공, 설치 공정의 진행에 따라 초기의 검사 및 시험계획서는 해당 공정 완료 시까지 승인된 절차에 따라 개정 관리하고, 개정된 검사 및 시험계획서는 최초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조정이 가능한 경미한 개정은 공사감독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수급인이 수행하는 검사나 시험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였다 하여도 수급인이 관련 계약서, 규격, 표준 및 절차서와 일치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입회점/필수 확인점

① 입회점은 시공,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중요한 단계로서 지정된 공정에 대해 검사자(입회점 지정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대상공정수행 예정 3일 전까지 수행한다. 수급인은 입회요청

확정통보 후 검사자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 ② 필수 확인점은 시공, 설치, 검사 및 시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서 지정된 공정에 대해 검사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대상 공정수행 예정 7일 전에 통보하고 2일 전에 확정, 통보해야 한다. 수급인은 입회요청 확정 통보 후 검사자로부터 입회할 수 없다는 서면통보를 받았을 경우 이외에는 검사자의 입회 없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4) 부적합사항

- ① 부적합사항이란 작업 또는 품목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함이나 오동작, 문서, 절차상의 오류 또는 오용으로 인해 설비, 용역 또는 작업의 품질이 불만족한 상태를 말한다.
- ② 수급인은 발견된 부적합 사항을 부적합사항보고서(NCR)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 ③ 수급인의 도면, 절차서 또는 기타 발주자가 승인한 문서상의 요건이나 발주자의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요건에 대한 부적합 사항 중 처리방안이 '용도변경' 이나 '특별채용' 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처리방안도 부적합사항보고서(NCR) 사본을 발주자 참조용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④ 수급인은 기술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처리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 ⑤ 부적합 품목은 별도의 장소에 격리 또는 해당 품목 혹은 작업 사항에 꼬리표 부착, 표식, 표찰 등의 방법으로 식별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 ⑥ 부적합품(사항) 및 부적합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작업은 처리방안을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는 사용이나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없으며, 처리방안이 용도변경이 나 특별채용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재검사 및 재시험 되어야 한다.

(5) 작업절차서

- ① 수급인은 관련 기술시방서, 규격, 표준 및 설계문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작업과정을 단계적으로 기술하고 작업자 및 장비에 대한 자격부여 요건 및 품질관리기준이 포함된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수급인 품질부서의 검토를 거쳐 최소한 해당 공종 공사 착공 30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작업절차서 사본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② 수급인은 작업 특성에 따라 작업절차서를 세분화 또는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의 관련 품질경영시스템 문서와 부합하도록 작성한다.

(6) 품질확인 문서

- ① 수급인은 계약서, 관련 규격 및 표준에 규정되어 있거나 발주자가 승인한 수급인 품질 관련 절차서, 작업절차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서 요구된 검사보고서, 시험기록서, 자재성적서 등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품질확인 문서에는 대상작업 및 품목에 대한 명확한 식별, 관련 계약서, 도면 및 수급인명 등을 포함하여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되는 품질확인 문서 표지에는 발주자의 사업분류번호 체계에 따라 문서번호를 명시한다.
- ③ 품질확인 문서(품질기록)의 관리 및 이관 시기, 방법 등은 발주자가 승인한 절차(서)에 따

라 수행한다.

4.1.8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기준

- ① 수급인은 공사용 궤도자재의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과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이 시방서 각 장에서 정한 해당요건 및 관계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 ②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때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이 아래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 (가) 국·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발행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 (나)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 (다) 「철도안전법」에 의한 한국철도표준규격(KRS) 인증품
 - (라) 한국철도공사(KRCS) 또는 국가철도공단(KRSA)에 등록된 규격용품
 - (마)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 ④ 설계변경 등에 따라 ③의 가~마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⑤ 수급인은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규정된 시험을 시행한다.
- ⑥ 궤도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발주자에서 제시하는 궤도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시험장소

- ①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결과기록

- ① 수급인은 품질검사 대장 및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또는 검사/시험보고서 등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한다.
-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검사신청서, 준공검사신청서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한다.

- ③ 품질검사 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또는 검사/시험보고서 등은 이 지방서 제1장/2.2.1/ (12)사급자재 관련 서류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 반출 등

- 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 수급인은 시험작업일지, 검사/시험보고서, 품질확인서 또는 지적서(finding reports)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가 시공에 투입되지 않도록 식별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장외로 반출한다.

- ②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 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5)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로 수급인이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다.

(6) 재시험

- ①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 ②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7) 품질시험·검사의뢰

- ①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용역업자)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로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수급인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용역업자)에게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용역업자)에게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수급인이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용역업자)에게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4.1.9 현장시험실

(1) 인력·장비기준

4.1.8(품질시험·검사)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④항 ‘별표 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용역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시험·검사장비는 국가공인기관의 검·교정을 받는다.

(3) 비치서류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1.10 품질 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4.2 재료

내용 없음.

4.3 시공

내용 없음.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케도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적용한다.

5.1.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 (1) 수급인은 현장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운행선의 열차와 승객, 주민과 통행인 및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상을 한다.

5.1.3 안전관리 일반

(1) 안전관리계획서의 준수

수급인은 이 시방서 제1장/ 2.2.1/ (9)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거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2) 인허가

수급인은 화기, 유류저장소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는다.

(3) 출입자 통제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4)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시행(【별지 제14호 서식】)
-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 ④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 ⑤ 술을 마신 자 또는 허약자의 작업 금지
-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 ⑧ 현장 정리정돈

(5) 안전관리조직

-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 ②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 ③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①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6) 안전점검

수급인은 【붙임 2】 시공사 세부점검표(궤도_안전)에 따라 점검한다.

① 자체 안전점검

수급인은 공사기간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한다.

② 정기 안전점검

-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 (나) 수급인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때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한다.
- (다) 수급인은 정기안전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5.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는 표 5.1-1에 따른다.

표 5.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분	적용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 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화재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 등 착용
· 안전리본, 흉장(기습표), 각종 안전 스티커, 무재해 기록판 등	·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

- (2) 운행선 인접공사의 안전조치는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한국철도공사)」에 따른다.

(3) 전기사고 예방대책

- 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 금지
-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및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 금지
- ④ 옥외 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 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 ⑥ 고압선 통과 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4) 화재예방 대책

-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을 점검한다.

- (가) 전기 무단사용 금지
-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 (다) 자재보관 및 대기실 용도 외 사용 금지
- (라) 각종 공사용 자재방치 금지
- ②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 (5) 안전·보건 장구 사용
수급인은 각종 작업 시에 표 5.1-2와 같이 지정된 안전·보건 장구를 사용한다.

표 5.1-2 안전·보건 장구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콘크리트 타설 작업 · 감전 우려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 절전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안전관리자 등	· 반사조끼, 안전띠(X반도)
·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절연장갑 또는 방전고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먼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 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5.1.5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이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 (1) 가설동력
 - ①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 ②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 ③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2) 위험물 저장소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며 화재방지에 관련되는 법령 등에 따라야 한다.

5.1.6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이 발생 시 해당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

5.1.7 안전보건교육

-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 (2) 안전관리 관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에 따라 당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한다.
- (3)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5.1.8 안전일지

수급인은 안전일지를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한다.

5.1.9 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 안전관리비의 사용

-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공사현장 내에 비치한다.
- ②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한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5.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5.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목	사용 내역	산출 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 기·방법 등)에 의해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시행하 는 정기안전점검	현장여건에 따라 산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 절(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참조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②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1.10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

(1)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①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의 [별표 2]에 따름

②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가)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나)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2)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②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3)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②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화’ 또는 운전취급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

- ③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
- (4) 정식보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5)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5.1.11 화재예방

- (1)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소화기, 감시자 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특히 지하구간 작업 시)
- (2)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3) 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에 추가하고 근로자 사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개시 한다.
- (4)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대형소화기(25kg)를 비치하며, 진화장비 배치장소를 숙지하고 작업 전 사전 훈련을 한다.
- (5) 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화재대처용 마스크를 비치한다.
- (6) 작업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5.1.12 열차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열차안전운행)

- (1) 안전관리 대책
 - ① 수급인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② 수급인은 작업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공사감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 ④ 안전관리요원은 작업 전에 현장종사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일지를 비치·기록하고,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수급인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⑥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 ⑦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 시공방법, 작업개소별 이동계획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⑧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설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 ⑨ 철도선로 내 및 이에 접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열차접근 시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⑩ 중량물 공사자재 운반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로리) 사용을 동반 시행하면 선로일시사용중지 시행계획을 공사감독자와 협의 작성·승인 하에 시행하고, 소정의 작업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⑪ 열차감시원은 수급인이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시켜야 한다.
- ⑫ 모든 작업원은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휴대품을 지참한 열차감시원을 고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⑬ 열차운전에 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역장 및 사업소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⑭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 ⑮ 철도운행안전협약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⑯ 공사감독자는 차단작업 시 관제, 역 등의 승인 없이 작업하면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 ⑱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확인한다.
- ⑲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승인 전 선로 내 진입 금지를 교육하고 열차감시원은 작업 종료 후 모든 작업원이 선로에서 철수 완료 시 까지 선로 내 방호를 시행 한다.
- ⑳ 주변 소음으로 인하여 열차 진입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작업자(2인 1조)간 상호 감시하며 작업 한다.
- ㉑ 본선으로 열차운행 시 큰 소음으로 인하여 장비열차 등의 진입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선 열차운행 시에도 작업을 일시 중지한다.
- ㉒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 ㉓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대책은 안전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방안

- ① 본 작업 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가) 다음사항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한다.
 - 1)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 2)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 3)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및 작업자 이동동선, 출입절차
 - 4)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관련역, 관련 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역과협의 후 단락시행, 장비운전원 및 작업원 적합성검사 철저 이행)
 - (나)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처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 1) 시설물(설비) 철거설치 관련 해당 역장과 사전 업무협의
 - 2)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역과 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서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 3) 작업협의 전에는 선로 내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 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 4)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확보 및 열차사이 일시사용중지
- (다)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 1)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 2)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착용 생활화(야간 및 터널작업 시 발광형 안전조끼)
 - 3) 안전보호구 및 복장 착용 부적격자 현장 투입 제한
 - 4)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등을 점검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 5)작업 전 장치별 공중별 금지사항 교육
- (라)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한다.
- 1) 열차감시원 배치 및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야간 및 터널작업 시 발광형 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손전등,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 2)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 등)
 - 3)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 4) 백호우 등 장비의 높이제한장치 설치여부 및 정상작동상태 및 고장부위가 없는지 확인하고 고장부위 발견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후 즉시 조치.
- (마) 차단작업전 최종열차 통과여부를 확인한다.
- ② 작업 시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가)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 1) 열차감시원은 가능한 철도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근무토록 유도하여 이상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철도 무경험자는 교육 강화 및 특별관리, 교육이수여부 확인)
 - 2)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보호구와 휴대품 소지여부(안전조끼[야간 및 터널작업 시 발광형 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확인하고 열차감시원 근무일지에 서명
 - 3) 열차감시원의 배치는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 수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
- (나)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 2)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
 - 3) 작업반경 내의 작업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수시 확인
- (다)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 (라) 주변의 현지어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작업 및 타성에 젖은 작업을 금지
- (마) 안전관리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매일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한다.
- 1) 점검관리대장 기록 유지
 - 2) 시정사항은 조치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행결과 확인

- 3) 현장대리인은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일 확인
- (바) 안전한 시공 및 철도운행선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 1) 열차운행선 근접지역 및 정거장 구내 공사 시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등의 제규정에 따라 시행
 - 2) 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 3)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 4) 레일절단 및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불꽃에 의한 작업원 화상 및 선로변 화재발생 우려 여부
 - 5) 공사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표를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
 - 6) 선로에 입접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조끼[야간 및 터널작업 시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 7) 철도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을 통일되게 한다.
 - 8)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감독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을 통제한다.
 - 9)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를 징수한다.
- ③ 작업 시행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가) 다음 항목으로 합동점검 시행한다.
 - 1)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 2)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 3)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 및 사업소, 운전관제에 통보, 전기안전관리자 접지걸이 철거 및 급전여부 확인
 - (나)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 (다) 최초열차 통과시 이상여부를 확인

5.1.13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 (1) 안전보건 관리
 - ①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 ②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④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⑤ 수급인이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정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 ⑥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 ⑦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 ⑧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 ⑨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 ⑩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⑪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 ⑫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2) 보건상의 조치

- ①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가)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 (나)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 (다)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 (라)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 (마)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 ②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③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 (나)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④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 ⑤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가)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 (나)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 (다)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5.1.14 야간 열차운행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 (1) 작업 전에 위험요인을 사전 예측하여 시공사 안전원에게 지시하도록 하고 작업 중 안전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시정토록 하며 작업 종료 후 주간 점검 사항의 모든 요인을 확인 후 시정토록 한다.
- (2) 작업 방법 중 위험요인 발견 시는 시공 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시공토록 협의한다.
- (3) 작업 도중 급작스런 단전에 대비하여 주변 전기 공급 체계를 숙지하고 해당 분소와 비상 연락체계를 강구하고 있어야 한다.
- (4) 모터카 운전 취급 관계
 - ① 공사감독자는 모터카의 지조여부를 확인한 후 운행사항을 야간 근무자에게 인수인계한다. (작업 지조 포함)
 - ② 야간 근무자는 작업 전·후 해당 해당감독자 및 관계역에 통보한다. (출입인원 및 시간 통보)
 - ③ 당일 작업 상황과 인접 현업 시설사업소(시설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모터카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확인 조치한다.
 - ④ 차단구간(공사구간)에는 관계역과 공사감독자는 협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협의된 공사 모터카 외에는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 ⑤ 모터카의 복귀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하에 복귀해야 하며 임의로 복귀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⑥ 트로리에 적치된 발생자재의 안전관계를 선탐자와 확인 한 후 복귀토록 한다.
 - ⑦ 콘크리트 타설 중 최종 회차 타설 시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고 공사감독자는 작업소요시간 및 복귀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⑧ 모터카가 공사 구간 내 운행 간 각종 장애물의 호가인 및 작업원의 대피 등을 지시토록 하여야 한다.
 - ⑨ 작업장 내에서는 작업원의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가급적 에어식 경적은 사용치 않도록 유도하고 전기식 경적을 사용토록 한다.

5.1.15 작업공종별 안전조치

- (1) 공통사항
 - ① 안전조치
 - (가) 작업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1) 당일 작업계획(작업량, 인원, 순서와 방법, 위험요인, 작업개소별 이동계획 등) 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2) 개인별 임무
 - 3) 열차감시인, 건널목임시관리원 지정 및 임무, 근무요령 등

- 4)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 (나) 작업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안전관리자 (운영안전협의담당자) 및 공사감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에 열차 또는 차량과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열차감시인 배치
 - 2) 계속경보 또는 무경보 등의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 3) 안전표지 및 서행발리스 설치(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 4)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에 안전설비 설치(안전울타리, 임시차막이, 안전보호망 등)
 - 5)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6) 전차선 단전상태 확인 및 협의
 - 7) 해당 역장과 협의하여 수신호등 설치 및 확인
 - 8)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조치 확인(선로전환기 쇄정상태, 방향 등)
 - 9) 기타 안전시공을 위한 제반 안전 확보 조치
- (다) 작업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선로지장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의해 열차감시원 배치 및 열차감시원의 소지품목, 열차감시요령등의 숙지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 1) 작업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에 열차 또는 차량과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할 때는 작업구간 전·후 양방향에 열차감시인을 배치한다. 다만, 선로순회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와 열차 또는 차량과 접촉할 우려가 없음이 확실한 작업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 승인 후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로 또는 운행선로 인접 작업
 - 다수의 작업원이 한 곳에 집중하여 시행하는 작업
 - 장비(건설장비 포함) · 공구류 등의 소음을 수반하는 작업
 - 터널 내 작업
 - 기타 안전사고 우려 있는 작업
 - 2) 열차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 안전보호구(안전조끼[야간 및 터널작업 시 발광형 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 휴대용무전기 또는 휴대전화기
 - 열차운전시각표
 - 확성기 또는 경보기(호각)
 - 적색기(등) · 백색기(등)
 - 3) 열차감시인은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전호를 현시한다.
 - 열차 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에는 백색등 현시
 - 열차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 4) 작업자는 제3항의 경보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속히 대피한다.

- 5)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 ② 작업시행 승인(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3장 제38조)
-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승인 신청
- (나) 역장은 관제사에게 작업시행승인 요청
- (다) 관제사는 열차운행상황 등을 확인 후 승인
- (라) 관제사는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통보
- (마)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에게 통보
- ③ 작업 지연 시 조치(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3장 제39조)
- (가) 계획된 시간 내에 공사중 사용개시 또는 작업 완료가 불가능 할 경우 시행부서장은 운전명령에 의거한 완료예정시각 30분전까지 작업시행 협의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작업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나) (가) 항의 승인요청을 받은 관제사는 열차운행상황 등을 파악한 다음 승인하고 운전정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관제사는 나항에 의하여 승인한 경우 인접 역장으로 하여금 승무중인 승무원에 대한 통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작업완료 조치
- (가) 작업책임자(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승인된 작업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완료 즉시 작업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작업시행승인 협의를 한 역장 및 관제사에게 공사중 사용개시 대상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사용개시 또는 작업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 (나) 작업완료시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차단열차가 기지 또는 역에 완전히 도착하거나, 트로리를 궤도에서 철거하여 안전한 지역에 유지한 시각. 단, 신호보안장치를 지장하였을 때는 이를 정상복구 완료한 시각
 - 2) 건설기계 및 휴대용공구류를 이용한 작업은 건설기계 또는 공구류를 안전지역으로 철수한 시각. 단, 신호보안장치를 지장 하였을 때는 이를 정상복구 완료한 시각
 - 3) 전차선 단전 작업은 급전을 완료한 시각
 - 4) 차단장비가 기지 또는 역에 완전히 도착한 시각
 - 5) 선로를 사용중지, 변경, 신설한 경우 정상기능을 확보한 시각
- 작업책임자(응급보수자 포함)는 작업완료 후 최초열차 통과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호보안장치를 변경한 작업을 완료한 경우 초기 장애를 대비하여 응급보수자를 24시간 동안 지정 배치하여야 한다.
- ⑤ 작업자 준수사항(고압전선관련 안전수칙)
- (가) 작업자가 강관파이프나 철근 등을 높이 메고서 전차선이나 급전선 밑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공사용 중장비가 선로를 횡단할 때는 전차선과 급전선의 접근 위험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검측한 후 통과시켜야 한다.
- (다) 전차선이나 급전선에 근접해서 작업을 할 때는 감시원을 붙여서 이동이나 작업시 위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라) 고압선에 근접하여 비계, 거푸집, 철근 등의 조립 및 해체나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는 작업원들에게 수시로 주위를 환기시켜야 한다.
- (마) 현장책임자는 사고시 전기사업소에 긴급연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두어야 한다.
- (바) 위 사항 이외의 고압선에 근접하여 작업할 경우 작업자 스스로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 ⑥ 현장대리인은 작업의 총책임자로서 안전을 위하여 기계기구, 장비, 인원을 확인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을 착공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현장대리인은 당일작업 착공전에 작업원에게 안전교육 및 열차대피 요령등을 교육시켜야 하며 작업개소에는 선로작업표를 건식하고 서행개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서행예고, 서행, 서행해제 신호기와 통과 특정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⑧ 열차운행선 또는 운행선에서 인접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작업원 및 장비가 반대선으로 대피함으로 인한 사상사고 예방하기 위하여 반대선 선로를 횡단할 수 없도록 안전웬스, 안전울타리 등 안전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 ⑨ 현장대리인은 작업시행 전 작업원의 신체적조건과 복무상태, 안전보호장구(안전헬멧, 안전띠, 안전조끼(발광형 안전조끼 등), 안전복, 안전화 등) 착용을 확인 점검하고, 당일 작업내용과 각자의 임무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교육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⑩ 중량물 취급 또는 각종 장비작업 시행시 반드시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⑪ 열차운행선 주변의 모든 작업은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작업중이나 이동시에는 열차접근을 작업원에게 알릴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반드시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⑫ 열차감시원 · 건널목 임시안내원 · 철도전기안전관리자 배치 및 안전교육 시행
 - (가) 선로인접작업, 집단선로보수작업, 소음을 수반하는 작업, 작업 공기구의 제거 등으로 열차대피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각종 작업등은 열차감시원, 건널목감시원을 배치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나) 열차감시원, 건널목감시원은 안전조끼와 완장착용 및 휴대무전기 또는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작업원에게 열차접근을 알릴 수 있는 확성기 또는 호각 등 적절한 경보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또한 열차감시원은 위급한 상황에서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작업책임자는 열차운행선 또는 운행선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각종작업시행 전에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한 후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라) 작업책임자는 건널목 제어구간내 또는 건널목 인접하여 시행하는 각종작업시행 전에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한후 건널목 감시자를 배치 하여야 한다.
- ⑬ 장비운전원 적합성 검사(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60조)
 - (가) 장비운전원은 장비운전업무에 종사하기 1시간 전에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나) 적합성검사는 「장비운전적합성검사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1) 작업책임자
 - 2) 작업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출발역장이 시행한다.
- ⑭ 작업원 적합성 검사(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9조)

- (가) 장비운전원은 장비운전업무에 종사하기 1시간 전에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나) 작업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원 적합성 검사 기록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각 호의 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1) 작업책임자 안전관리책임(담당)자
- ⑮ 나 의 1)호에 의해 적합성검사를 시행한 작업책임자는 출발역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⑯ 시행부서장은 「장비운전적합성검사표(별지 제3호 서식)」를 장비에 비치, 관리한다.
- ⑰ 안전설비
 - (가) 여객 및 통행차량, 현장 인근 주민 및 통행인에게 위협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적절한 특수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 (나) 기설 건조물, 수리시설 및 기타 교통기관에 대하여 위험이 우려될 때에도 지정된 안전설비 이외에 필요에 따라 적절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 (다) 투시가 좋지 않거나 소음이 심한 공사개소는 필요 시 감시원이외 안전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열차접근 경보기 및 건축한계접근 경보기 등)
- ⑱ 사고보고

공사현장에서 각종 사고 발생 시는 즉시 공사감독자와 인근 역장에게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⑲ 보수작업의 제한 등

공사 시공에 있어서 열차의 서행 및 작업의 제한이 따르는 경우 다음에 의한다.

 - (가) 레일체결장치, 탈선방지가드레일 설치 및 철거작업과 도상자갈을 끊어내는 작업을 할 때에는 서행을 요하므로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 (나) 기온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우천 등 작업이 곤란할 때에 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 ⑳ 선로차단작업
 - (가) 선로를 일시 절단하거나 장애하여 열차운전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르는 작업 등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에 의거 선로차단공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 (나) 가 항에 의거 승인된 선로차단공사의 작업량은 승인된 차단시간 또는 1회의 열차상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 시행하고 작업량의 변동이 불가능하고 차단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인원, 장비 추가투입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시행하여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당일 차단공사 운전협의시 기 승인된 시간과 변동이 있을 시에는 운전협의 된 차단시간에 작업을 마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량 등을 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㉑ 가설물 설치
 - (가) 열차운전에 지장되거나 여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가설물은 미리 설계도에 명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 (나) 기타시설물, 철도시설물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와 미리 협의하되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됨이 없도록 한다.

㉒ 작업조명

공사 시행에 필요한 조명은 설계도서에 명시하는 외, 소정의 조도를 확보해야 하며, 조명의 방법 및 사용기기에 대하여 미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㉓ 레일가스압접 및 테르밋트 용접시 발생된 부순물은 선로변 화재예방을 위해 당일 현장 반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출용 자재는 당해 용접수량 이상을 상시 구비 하여야 한다. 또한 당일 작업 종료 후 완전한 처리가 되었는지 재확인하고 철수 하여야 한다.

㉔ 본 공사 시행중 안전조치 불이행과 작업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있거나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급회사 제3자의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도 수급인이 져야한다.

㉕ 수급인은 작업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시행 단계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시행 방법은 선로관리처-911호 (2015.02.25.)에 의한다.

- (가) 계약 후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
- (나) 공사 착수 전 전과교육
- (다) 공사 착수 후 일일 안전교육
- (라) 공사 착수 후 특별·정기 안전교육

㉖ 수급인은 열차지장작업(일시사용증지, 인접공사 등) 시 작업원의 안전확보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세부시행 방법은 철도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알림(토목시설처-801호, 2018.03.26)에 의한다.

- (가) 1단계 - 작업 전 사전 준비
- (나) 2단계 - 작업현장 대기장소로 작업원 이동
- (다) 3단계 - 작업현장 안전설비 등 설치
- (라) 4단계 - 작업 시행단계
- (마) 5단계 - 작업완료 후 현장 철수 및 최초열차 확인

㉗ 위 사항 이외 수급인은 한국철도공사 현장 안전확보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 규정(지시)의 이행을 철저히 하며(각각 첨부생략), 본 공사 시행중 각종 관련법규, 지침, 규정 등이 개정될 시에는 변경된 법규, 지침, 규정 등으로 적용한다.

- (가)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제2020-84호, 2020.10.30.)
- (나)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제2020-85호, 2020.10.30.)
- (다) 열차운행선 공사 안전관리대책(토목시설처-225호, 2013.01.24.)
- (라) 공사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토목시설처-1054호, 2013.05.03.)
- (마) 표준안전시방서(안전처-3380호, 2015.07.15.)
- (바)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안전강화 추가 지시(수송조정처-2384호, 2016.05.05.)
- (사) 발광형 안전조끼 착용 철저 지시(궤도기술처-2708호, 2017.07.10)
- (아)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알림(토목시설처-801호, 2018.03.26.)
- (자)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토목시설처-925호, 2018.04.09.)

(2) 작업공중별 안전조치

① 침목교환

(가) 준비작업

- 1) 작업구간의 교환수량, 운반장비, 차단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단작업계획 수립(운반, 교환, 회수)
- 2) 전차선구간의 침목교환 작업은 차단작업계획 수립시 전차선 단전을 포함하여 수립
- 3) 장물화차를 이용하여 침목의 상·하차를 시행할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충분한 시간 전 화차 요청 협의
- 4) 전차선구간의 곡선선로 침목교환은 편위 측정 및 조정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작업전 사전협의 시행
- 5) 선로에 신호시설물로 침목교환시 지장이 우려되는 개소는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 6) 침목 상·하차를 위한 장비유치 선로가 열차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선로일시사용증지를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장비를 유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적재

- 1) 재료를 적재하는 선로에 전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차선단전 (단로기)후 시행하여야 한다.
- 2) 재료의 적재는 트로리(10톤) 또는 장물화차(50톤)에 적재하되 적재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적재된 재료가 운반을 위한 이동 중 낙하 등이 우려될 경우 결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운반배열

- 1) 모터카를 이용하여 재료를 운반할 경우 견인운전을 원칙으로 하며, 화차 또는 트롤리 운행시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3절, 제4절] 규정을 준수하여 운행.
- 2) 작업 전 작업에 투입되는 모터카, 화차 또는 트로리, 백호우 등은 사전에 점검을 시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조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3) 운반이동시 장물화차 또는 트로리에 작업자의 탑승은 금지하여야 한다
- 4) 백호우를 상차하여 이동할 경우 별도의 결박을 시행하여 이동 중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5) 재료의 배열(하화)은 사전에 교환개소를 확인하여 적정개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노반이 부족한 독비탈 또는 결도랑 등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6) 곡선선로에서의 재료하화는 가능한 한 곡선 외측에 시행하여 작업 중 장비(백호우)의 전도를 예방하여야 하며, 재료하화시 전철주 및 신호트러프 등 시설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7) 작업책임자와 모터카 운전원은 무전기 등을 활용하여 상호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백호우)에는 반대선열차 및 작업자 등과의 접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시 장비유도요원을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 8) 작업완료 후 작업책임자는 재료운반 구간에 대하여 확인하고 열차접촉 등 이상이 우려되는 개소는 조치 후 작업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차) 침목배열

- 1) 선로일시사용중지 승인 후 작업 시행하고, 사전 준비 작업 금지 하여야 한다
- 2) 침목교환시 부설기준에 맞추어 신침목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간격틀림 및 직각틀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장비(백호우)를 이용하여 침목을 교환할 경우 재료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며, 고무트랙을 설치하여 이동시 레일 및 침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 교환작업 시 선로가 부분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며, 양로가 필요한 구간은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5) 현 침목 인출시 흠어졌거나 흘러내린 도상은 침목교환과 동시에 긁어모아 원상복구하고 도상다짐을 하여 선로의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6) 연속적으로 침목교환을 시행한 후 1종 장비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전차선 구간의 경우 전차선의 편위 변화여부 및 철거된 신호시설물의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종료하여야 한다.(전차선 편위 측정 및 조정, 신호시설물의 설치, 철거는 관련부서에서 시행)
- 7) 임시신호기(서행예고표, 서행표, 서행해제표)는 적정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발생품 회수

- 1) 당일 발생된 재료는 당일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회수가 불가할 경우 건축한계 외방에 견고히 적치하여야 한다.
- 2) 발생품의 회수는 트로리 또는 장물화차의 적재중량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상차하여야 하며, 이동중 재료의 낙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차하여야 한다.
- 3) 발생된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적치하여야 하며, 목침목의 경우 분류 등급별로 100정(1무더기) 쌓아 포장을 씌워야 한다. 또한 강설물(스파이크, 앵커 등)은 종류별로 자루에 담아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바) 뒷정리

작업이 완료된 개소는 공사감독자가 선로유지관리기준 및 열차운행지장여부 등에 점검을 시행하고 이상이 우려되는 개소는 수급인에게 조치토록하고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레일용접 작업

(가) 준비작업

- 1)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 2) 가스압접기 등 압접장비는 작업 전, 중, 후 수시로 점검한다.
- 3) 산소, 아세틸렌 등의 가스는 각 가스의 특성(지연성, 가연성, 독성)에 따라 보관함을 별도로 제작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 4) 가스저장소 주변에는 인화성 및 가연성물질을 두지 말고 가스 특성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한다.
- 5) 호스연결부 및 용기 용접부 등 주요부분은 비눗물 및 누설 탐지기로 수시 점검한다.
- 6) 용접작업장 접근로 및 작업장 내에는 안전표지 및 작업안내표지를 부착한다.
- 7) 용접작업용 문형크레인 설치 시에는 지반을 다지고 설치하여 전도를 방지하도록 한다.
- 8) 가스 저장소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중지 및 작업종료 시 잠금을 실시한다.

- 9) 가스용기 및 가스집합 장치에는 각 가스에 맞는 역화방지기를 설치한다.
- 10) 가스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전도의 우려가 없는 견고한 지반에 보관한다.
- 11) 압력조정기의 정상작동 여부는 수시로 점검 한다.
- 12) 용접으로 인하여 소음민원이 우려되는 개소는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3) 용접작업장에는 분말소화기와 같은 적절한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레일용접

- 1) 선로일시사용중지 승인 후 작업 시행하고, 사전 준비 작업 금지 하여야 한다.
- 2) 시력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안경을 착용한다.
- 3) 산소밸브는 기름이 묻지 않도록 한다.
- 4)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의 뒤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5)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공급구의 밸브, 코크를 잠근다.
- 6) 당일 용접 미 시행 시 이음매관을 견고히 체결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1.16 환경관리 일반

(1) 환경관리 행정

수급인은 이 지방서 제1장/ 2.2.1/ (8)환경관리계획서에 의거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 ②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 ③ 환경 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 ④ 사후환경영향 조사의 내용기록 및 조사·협조
- ⑤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 ① 수급인은 이 지방서 제1장/ 2.2.1/ (8)환경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 ②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 관련 기관으로부터 환경 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확인 가능한 시정 전·후의 자료 및 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3) 환경분쟁의 조정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 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4) 건설폐자재의 활용

- ①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적정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이 지방서 제1장/ 2.2.1/ (8)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해 관리한다.

- ② 수급인은 건설폐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별지 제50호 서식】에 따라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한 뒤 지침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한다.

5.1.17 자연환경 보전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 폐유를 회수하여 처리한다.

5.1.18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별표(환경기준)’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며, 궤도공사 현장에 공사요원용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

(1) 소음·진동

-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소음·진동 관리법」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생활환경 지역 내에서는 공사열차 또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한다.

(2)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3) 건설오니(汚泥)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일축압축강도 \leq 50 kPa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한다.

(4) 대기질

- ①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배치플랜트, 터널 내 환기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설치·운영하며,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②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한다.
- ③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한다.
- ④ 공사용 차량 운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 (가) 공사용 차량의 이동로, 비산먼지 발생가능 물질 적치 장소 등에 살수를 시행하고, 차량 운행속도를 저속으로 제한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 (나) 현장작업 시에는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은 즉시 제거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쌓아둘 경우에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다) 계속 반복되는 주요 현장 진출입로, 특히 민가 주위에 있는 개소에는 차륜세척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5) 폐기물 관리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주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②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제②항 제2호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며, 최종 처리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한다.

 - ① 폐기물 처리대책
 - (가) 공사수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잉여물 및 부산물은 최대한 재활용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나) 공사구간 및 인근지역에 공사폐기물을 무단투기하지 않아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계몽, 홍보를 통하여 불법적 투기를 자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 공사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예방정비 및 부품교환을 통하여 기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생하는 폐유는 적정용기에 보관한 후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 (라) 인부들에 의해 발생하는 분뇨는 각 작업구간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적정하게 수거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폐기물 처리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다.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나)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 (다) 비용산출 :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상·지역 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산출한다.
 - (라) 기존선 철거 시 발생하는 폐자갈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유해물 성분검사를 시행하고 폐기물 처리가 필요할 경우 발주

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를 시행한다.

③ 폐수 배출시설 설치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설치·운영한다.

④ 궤도공사 완료구간 내 발생품 및 폐기물 등을 완전히 처리하고, 공사 목적물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6)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한다.

5.2 재료

내용 없음.

5.3 시공

내용 없음.

6. 가설공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 (1) 공사 중 사용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4)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 (5)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6.1.2 제출서류

수급인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가설 구조물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사전에 이 지방서 제1장 / 2.2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며, 가설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6.1.3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 (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른다.
-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4) 당해 공사에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공인받은 기존시설에 접속(당해 설비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하고, 자재 및 공법은 관련 법규 및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 (5)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할 수 있다.
-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1.4 가설전기

- (1)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 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2)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 (3)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 (4)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및 사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5)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6)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7)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8)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 (9) 주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은 공사 중 위치변경 가능성이 적고, 접근과 통제가 용이하며,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10)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 (11)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 (12)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 (13)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 (14)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하여야 한다.
- (15)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6.1.5 가설 조명

- (1) 작업장의 조명은 75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 (2) 궤도공사 외 가설조명은 선행공사와 협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3)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 (4)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5)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6)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 (7)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해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8)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 (9) 작업 중 분진이나 매연 등으로 인하여 조도가 저감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10) 정전 등 비상시에도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기구
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 (11)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6.1.6 가설 냉·난방

- (1) 수급인은 시공 작업시 명시된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냉·난방설비를 설치
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2) 발주자가 냉·난방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 설비 및 열량계를 설치한다.
- (3) 가설 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
이 수행하여야 한다.

6.1.7 가설환기

재료의 양생, 습기 제거 등 품질관리에 필요하면 환기설비를 한다.

6.1.8 통신시설

수급인은 통신시설을 설치한다.

6.1.9 가설상수도

-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
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 (2) 현장 내 가설상수를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표준시방서(K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의 3.2.1 기존관과의 연결공사’에 따른다.
- (3) 가설상수시설은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가설상수 배관은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결방지를 위하여 임시단열을 하거나 퇴수가 가능한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 (5) 발주자가 급수비를 지급하는 경우 수량보전시설을 별도 계량기를 설치한다.

6.1.10 가설하수시설

- (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
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2)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 가설하수시설 철거 및 복구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① 기존 시설물 연결부위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복구에 철거를 기하여야 한다.
 - ② 가설하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가설하수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필요시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해당 시설물의 관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6.1.11 가설현장배수

- (1) 현장 바닥은 자연배수 되도록 경사지게 시공한다.
-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한다.

6.1.12 가설공용 시공장비

수급인은 크레인,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공계획서에 표기한다.

6.1.13 가설방호책

-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물이 시공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방호책을 설치한다.
- (2) 통행과 기존 건물의 출입을 위해 바리케이드와 지붕이 있는 가설방호책을 설치한다.
- (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을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한다.
- (4) 차량통행으로 공급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6.1.14 가설울타리

- (1) 공사장 내외 및 재료투입구 등의 위험부분에 대하여 안전 펜스를 설치하며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시설을 설치한다.
- (2) 공사현장 주위에 가설울타리를 높이 1.8m 이상으로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며 잠금장치를 한다.
- (3)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6.1.15 현장 보안

- (1) 공사 착수 후 조속한 시일이내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6.1.16 주차장

- (1) 수급인은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 한다.
-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써 타인의 교통소통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 (4) 필요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1.17 공사표지판

- (1) 수급인은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 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현장에는 법령이나 지방서에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6.1.18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2)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리해야 한다.

6.1.19 현장 사무소(수급인 부담)

- (1)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 (2) 근무인원수를 고려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 (3)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바닥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용 사무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 (5) 사무소와 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6.1.20 현장 시험실

-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 (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을 확보한다.
-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6.1.21 용지의 사용

- (1) 가설사무소 용지의 확보 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관리의 용지를 일시 점용할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지 사용에 따른 임대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한다.

- (2) 발주자 관리 이외의 용지를 일시 사용하여야 할 때 수급인은 토지 소유자와 관련기관에 토지 일시사용에 관한 계약체결이나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민원이나 행정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1.22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공사장 내의 임시 시설물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철거한다.

6.2 재료

내용 없음.

6.3 시공

내용 없음.

7. 선로기준표 설치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 (1) 궤도부설 및 보수의 기준이 되는 중심선 측점 등의 선로기준표를 설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 (2) 수급인은 시공측량 등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7.1.2 측량관리자 지정

- (1) 수급인은 측량에 드는 제반 기구 장비와 인원을 동원하며, 자격을 갖춘 측량관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7.2 재료

내용 없음.

7.3 시공

7.3.1 시공측량

- (1) 일반철도의 시공측량 및 제반 기준점 설치방법은 표 7.3-1 및 표 7.3-2에 따른다.
- (2) 특수 궤도구조물(분기기 등)의 위치는 평면도와 종단면도의 위치를 원칙적으로 따르며, 부득이한 변경사항이 발생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한다.

표 7.3-1 일반철도 시공측량 및 기준점 설치방법

측점 구분	설치 장소	비고				
1차 중심선 측점	1. 궤도중심 간격 5.0m 미만일 경우 : 복선 선로중심에 설치 2. 궤도중심 간격 5.0m 이상일 경우 : 각선의 선로중심에 설치 3. 측점 설치위치 · 본선 200m 간격 · 곡선부 시·종점(완화곡선, 원곡선, 종곡선)	· 노출높이는 -토공의 경우: 250mm -교량, 터널의 경우 : 콘크리트못으로 설치				
2차 중심선 측점	설치위치는 1차 중심선과 동일(1차 중심선 상간)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직선부</td> <td>매 20m 간격</td> </tr> <tr> <td>곡선부</td> <td>매 10m 간격</td> </tr> </table>	직선부	매 20m 간격	곡선부	매 10m 간격	
직선부	매 20m 간격					
곡선부	매 10m 간격					
보조 기준점	중심선 측점에 직각으로 좌우에 설치 · 복선구간(교량, 토공): 궤도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약 5.5m) · 단선구간(교량, 토공): 궤도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약 3.0m) · 터널의 경우는 적정개소에 설치					
임시 m표	· 토공, 교량의 경우에는 하본선 쪽으로 노반 중심선에서 약 6.15m 이격하여 설치하고, 터널의 경우에는 측벽 1m 상에 설치함. (설치간격은 200m 간격)					
임시 km표	· 토공, 교량의 경우에는 하본선 쪽으로 노반 중심선에서 약 6.15m 이격하여 설치하고, 터널의 경우에는 측벽 1m 높이에 설치함.					

표 7.3-2 일반철도 분기부의 시공측량 및 기준점 설치방법

구분	설치 방법	비고
중심선 측점	표 7.3-1의 일반구간의 설치방법에 의거 시행	궤도수급인
분기부 주요 측점설치	궤도중심선에 설치 · 분기부 전단, 분기부 후단, 이론평교점	궤도수급인
도상높이 측정기준점	분기선 쪽에 레일레벨 -45cm 높이로 설치	궤도수급인

7.3.2 최종 선형측량

중심측량과 고저측량 결과를 선로 중·평면도 및 선형계산서와 대조 검토하여 최종 선형측량 성과물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7.3.3 궤도측량 허용오차 범위

(1) 측량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7.3-3 측량의 허용오차 범위

구분	측량 종류	내용	허용 오차	비고	
궤도 측량	1차 중심선 측량	설계 선형과의 차	1cm 이내		
	2차 중심선 측량	1차 중심선 측점과 비교	중심선 방향	3cm 이내	
			길이 방향	2cm 이내	
	보조 기준점	보조기준점과 중심선 말뚝과의 거리 오차		2cm 이내	
		수준측량 왕복 오차		$8\sqrt{L}$ mm	L : km
		인접 수준점에서 측정치와 임의점 노선 수준측량 오차		3mm 이내	
	궤도정비 기준점	각도 측정시 평균값과 측정횟수마다 측정각의 차		5초 이내	
		측정치와 처음 설치한 핀의 위치		± 10 mm 이하	
		연속된 3개의 핀을 직선 연결 시 중앙 측정 핀기량		1mm 이내	
	수준 측량	두 수준점사이의 오차		$5\sqrt{L}$ mm	L : km
		두개의 연속 측정 사이의 경사 m당		± 0.25 mm	
		레일 한점과 가장 근접한 수준점으로부터 측정 시 오차		± 5 mm	

(2) 건축한계 등의 검측은 궤도부설 및 타 분야와의 시공이 경합할 때 반드시 상호 입회하에 검측을 시행한다.

8. 궤도시설물 준공 시 검사와 허용기준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궤도공사에서 궤도시설물의 인계·인수 및 준공 시의 검사기준과 허용기준에 적용한다.

8.1.2 제출물

수급인은 이 시방서 제1장/ 9.인계·인수 및 준공에 명기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8.2 재료

내용 없음.

8.3 시공

8.3.1 검사

(1) 궤도검측 방법

일반궤도, 특수궤도(분기기 등)에 대한 궤도틀림 등의 검측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① 측정용 기기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그 기기의 기능, 정도에 대한 검 교정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기를 사용한다.
- ② 일반궤도의 궤도틀림 측정에 있어서 양로작업까지의 검측은 검측 기능이 장치된 다짐기계 또는 인력으로 측정하고 추가다짐 이후의 검측은 궤도검측차에 의한다.
- ③ 궤도틀림량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궤간틀림: 확대는 ‘+’, 축소는 ‘-’ 로 표시한다.
 - (나) 수평틀림: 직선부는 좌측레일, 곡선부는 내측 레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레일 반대측 레일 이 높은 경우는 ‘+’, 낮을 경우는 ‘-’ 로 표시한다.
 - (다) 고저틀림: 직선부는 좌측레일, 곡선부는 내측 레일을 기준으로 하며, 높은 틀림의 경우는 ‘+’, 낮은 틀림의 경우는 ‘-’ 로 표시한다.
 - (라) 방향틀림: 직선부는 좌측 레일, 곡선부는 외측 레일을 기준으로 하며, 궤간 외방으로 어긋나 있는 경우에 ‘+’, 궤간 내방으로 틀린 경우는 ‘-’ 로 표시한다.
 - (마) 뒤틀림: 궤도의 평면에 대한 뒤틀림 상태를 말하며 일정한 거리(3m)의 2점에 대한 수평틀림의 차이로 구한다.
- ④ 분기기는 일반궤도에 준하여 검측하되, 추가의 궤도틀림량 측정위치 및 항목은 별도로 정한 분기부 검측자료에 따른다.

(2) 허용 한도

- ① 궤도틀림 준공기준은 이 시방서 【붙임 3】 궤도틀림의 관리기준에 따른다.

9. 인계·인수 및 준공

9.1 일반사항

9.1.1 인계·인수 및 준공

- (1) 수급인은 준공 또는 부분 준공 전에 궤도공사가 완료된 일부 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km 단위의 인계·인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인계·인수 요청을 하였을 경우에 예비인수·인계검사, 인수·인계검사 등 공사감독자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필요시 인수를 할 수 있다.
- (3) 수급인은 완성궤도를 발주자에게 인계·인수전까지는 궤도정비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 (4) 수급인은 인계·인수가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의 책무가 없으며, 최종 준공 시에는 인계·인수 구간이 포함된 준공관련 문서 및 도서를 이 지방서 제1장/ 2.2.1/ (23)준공 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9.1.2 예비준공검사

- (1) 수급인은 준공 2개월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발주자에게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예비준공검사는 준공검사에 준하여 실시한다.
 - ① 예비준공검사원
 - ② 공사내역서
 - ③ 정산설계도서
 - ④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 ⑤ 기타 관련 문서
- (3) 수급인은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품질검사 성과 총괄표)에 따른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를 제시한다.
- (4) 예비준공검사자(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9.1.3 준공검사

- (1)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후 준공검사원을 접수하고, 예비준공검사 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확인한다.
- (2)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①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부
 - ②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문서
 - ③ 시공 후 매몰 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 기록문서 및 시공 당시의 사진

- ④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 ⑤ 발생품 정리부
 - ⑥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 현황
 - ⑦ 공사의 사전 검측확인 문서
 - ⑧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 ⑨ 설계검증 및 유효성 확인관련 문서
 - ⑩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 (3) 준공 검사자는 점검표를 작성하여 확인한다.
- ① 준공부분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확인
 - ② 시공 시의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비치한 각종 기록에 대한 검토 및 확인
 - ③ 수중, 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외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에 대한 시공기록 또는 매몰 전 촬영사진 확인
 - ④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사 여부
 - ⑤ 품질시험에 대한 결과조치 적정 여부
 - ⑥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 확인
 - ⑦ 발생품 또는 지급자재 중 잉여자재 처리 적정성 여부
 - ⑧ 폐자재, 가설물 등 현장 정리정돈 상태
 - ⑨ 제반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 ⑩ 준공검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서
 - ⑪ 기타 준공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4) 준공검사 불합격인 경우 지적사항을 재검토 및 보완하여 재검사한다.
- (5) 준공검사 결과 합격일 경우 준공조서를 작성하여 시공부서장에게 제출한다.

9.1.4 시설물 인계·인수

-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3)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때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4)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인계·인수검사 및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 (5) 시스템분야(전력, 신호, 통신 이하 '시스템분야' 로 한다.)로의 궤도시설물 인계·인수 궤도시설물 시공중 또는 시공완료 후에 관련분야와 합동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6)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입회인이 된다.

9.1.5 인계·인수검사 및 준공검사 내용

- (1)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 서명한다.
-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계·인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최종본을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 (3)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자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한다.
- (4)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 (5) 발주자가 시행하는 인계·인수검사 및 준공검사 시에는 아래 사항을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 ② 분기기 등 타분야와 인터페이스 처리가 필요한 설비기기의 작동 등 기능점검
 -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 ⑦ 인계·인수 전 청소 이행상태
 - ⑧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9.1.6 단계별 열차속도 상승

시공완료 후 단계별 열차운행 속도상승에 따른 궤도정비를 한다.

- (1) 수급인은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궤도신설구간, 운행선 변경구간의 궤도를 표 9.1-1의 단계별 속도상승에 적합하도록 정비한다.
- (2) 다만, 철도건설사업시행자(발주자)가 열차안전 운행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사업자(공사)와 협의하여 단계별 속도상승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안정화 작업 등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음 표의 시행시기와 관계없이 점검기준을 확인한 후에 곧바로 다음 단계의 속도상승으로 진행할 수 있다.

표 9.1-1 단계별 열차운행 계획

단계별	열차속도	시행시기	점검기준
1단계	20km/h	최초 개통열차에 대하여 이후 통과열차는 40km/h	궤도정비기준 이내
2단계	60km/h	1단계 개통 후 3일 이내 또는 누적통과 톤수 300,000 ton 이상 통과 후 (다만, 우선 도래하는 기준을 적용)	궤도정비기준 이내
3단계	80km/h	2단계 개통 후 3일 이내 또는 누적통과 톤수 600,000 ton 이상 통과 후 (다만, 우선 도래하는 기준을 적용)	궤도정비기준 이내
4단계	100km/h	3단계 개통 후 3일 이내 또는 누적통과 톤수 800,000 ton 이상 통과 후 (다만, 우선 도래하는 기준을 적용)	궤도정비기준 이내
5단계	정상속도	4단계 개통 후 3일 이내 또는 누적통과 톤수 1,000,000 ton 이상 통과 후 (다만, 우선 도래하는 기준을 적용)	궤도정비기준 이내

- (3) 수급인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한국철도공사)」에 의거 발주자가 수립한 종합시험운행 계획에 따른 시설물 검증시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9.1.7 유지관리

- (1)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유지관리지침에 명시한다.
- (2) 특수공법 또는 특이 개소 등 유지관리상 유의해야 할 대상개소 및 동 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방법에 대하여는 준공 시에 유지관리지침에 별도로 제시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에는 교육을 시행한다.
- (3) 최종 인계·인수 때까지 궤도시설의 유지관리
선형의 관리는 경제성과 내구연한 연장 도모 및 열차운전의 안전을 위한 최적의 관리를 위하여 이 시방서 제1장/ 8.궤도시설물 준공 시 검사와 허용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9.1.8 보수예비품

- (1)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 예비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보수 예비품을 우선 사용하고, 이때 수급인은 즉시 보충한다.
- (2) 보수예비품은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규격,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9.1.9 공사장 정리

-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여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부분 인계·인수 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 (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에서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철거한다. 또한, 지장물 현황을 파악하고 지장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9.1.10 인계·인수 관련 문서/도서 작성 및 제출

- (1) 수급인은 인계·인수 요청 시에 발주자가 인계구간의 유지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 시방서 제1장/ 2.2.1/ (23)준공서류에 따라 공사 및 품질 관련 관련 문서/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또한, 발주자가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문서/도서를 요구할 시에는 지체 없이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 (2) 인계·인수 시에 작성, 제출할 서류/도서는 발주자 절차서를 기본으로 다음을 포함하며, 제출부수는 3부를 전자파일(CD롬)과 함께 제출한다.
 - ① 인계·인수 수량조서
 - ② 인계·인수 도면
(도상표준 단면도, 궤도부설도, 시공도, 선로용품도 등)
 - ③ 시방서 변경분(궤도자재 규격서 및 공사시방서)
 - ④ 선로일람약도(T.E.D)
 - ⑤ 장대레일 부설대장
 - ⑥ 장대레일 설정작업 기록표

- ⑦ 궤도검측자료(최종궤도인계보고서, 1km마다)
 - (가) 궤도공사 완료 후 각종 검측기록지
 - (나) 용접, 분기기 검측기록부
- ⑧ 분기기 및 분기기 주요 부품에 대한 이력카드
- ⑨ 선형계산서 및 측량성과물(곡선선형 데이터)
- ⑩ 다짐작업 기록표
- ⑪ 현장용접 시공기록부
- ⑫ 공사사진첩 및 공사 비디오촬영(CD 또는 DVD 등)
- ⑬ 공사참여자 실명제 기록부
- ⑭ 시설물관리대장(ERP시스템)에 등록을 위한 준공시설물 기준 정보(시설물 마스터)작성자료
- ⑮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 ⑯ 기자재 구매서류
- ⑰ 공사관련 기록부(주요자재 정산서, 인·허가 관계철 등)
- ⑱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 ⑲ 기타 시설물 인계·인수에 필요한 자료

9.1.11 하자 담보

- (1) 궤도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시설관리자가 정한 사항 이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제①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른다.

※ 관련법 참조 : 궤도공사 5년(궤도철거 및 부대공사 제외)

- (2) 하자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하자검사)에 의거 하자검사를 시행한다.
- (3)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재료비, 직원급료 등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 시행한다.
- (4) 하자담보 보증금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 보증금)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및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 보증금률)에 따른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공중 및 하자담보 보증금률은 조정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 하자보증 기간 품질기준은 「선로유지관리지침」,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보수기준 또는 교체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9.2 재료

내용 없음.

9.3 시공

내용 없음.

▶ 【별표 1】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자재명	레일, 탄성분기기, 직결분기기 레일체결장치 등
-----	---------------------------

▶ 【별표 2】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

자재명	시험 항목	시험 빈도
초속경 모르타르	컨시스턴시 시험	1일 타설 마다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	
	압축강도 시험	
	염화물함유량 시험	
에폭시	힘, 압축, 부착강도	1일 타설 마다
	길이변화율	
무수축 모르타르	플로	1일 타설 마다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	
	압축강도 시험	

▶ 【별지 제1호 서식】

공 사 착 공 계			
<건설사업관리 공사>			
○○ 장 귀하		○○ 처 장 (인)	
		감 리 자 : ○○회사 대표이사 성명 ○○○ (인)	
		년 월 일	
확 인	사업책임기술인 ○○○(인)	공사관리관 ○○○(인)	수급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인 가 번 호	() 제 - 호	공사코드	
공 사 명			
착 공 기 한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년 월 일			
기 사	붙임 : 1. 현장대리인계 6. 기술요원계 11. 품질보증계획 또는 2. 철도기술담당 지정계 7. 현장요원계 품질시험계획서(별책) 3. 안전관리자 지정계 8. 전산장비 비치계획서 12. 안전관리계획서(별책) 4. 품질시험요원 지정계 9. 조직 및 기구표 13. 환경영향평가 이행 5. 환경관리자 지정계 10. 예정공정표 계획서(별책)		

(297mm×210mm)

▶ 【별지 제2호 서식】

현 장 대 리 인 계			
<건설사업관리 공사>			
○○ 장 귀하		○○ 처 장 (인)	
		감 독 자 : ○○회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성명 ○○○ (인)	
		년 월 일	
		수급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인 가 번 호	() 제 - 호	공사코드	
공 사 명			
성 명			
기 사			
붙임 : 1. 위임장 2. 재직증명서 3.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분) ※ 서식 제37호 : 관련협회 미발행 분야에 한함, 이하동일 4. 자격증 사본(관련협회 미발행 분야에 한함), 이하동일			

(297mm×210mm)

▶ 【별지 제9호 서식】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전산장비 비치 계획서</div> <div style="text-align: left; margin-bottom: 10px;"><건설사업관리 공사></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30%;">○○ 장 귀하</div> <div style="width: 65%;"> 감독자 : ○○회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성명 ○○○ (인) 수급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div> </div>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기 사
	※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과 연계운영 될 수 있는 장비 1. H/W · 컴퓨터 (586급이상) · 프린터 (A ₃) · 플로터 (A ₀) · 디지털카메라 · 팩스 등 2. S/W · AUTO CAD, 워드프로세서 등 3. PC통신, 인터넷 등			

(297mm×210mm)

▶ 【별지 제10호 서식】

<건설사업관리 공사>

인 가 번 호	○○ () 제 호		예 정 공 정 표				건설사 업관리 용역업 자		○○회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성명 ○○○(인)								
공 사 코 드																	
작공 년월일	년 월 일		공사명 :				수급인		○○회사 현장대리인 성명 ○○○(인) 지정시→철도기술담당 성명 ○○○(인)								
준공 년월일	년 월 일																
공 사 종 류	단 위	수 량	공사비 (천원)	가중치 (%)	월			월			월			월			기 사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예시→			30										100
									2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계			예 시	10	20											
				→	10	20											

1. 월별 예정공정율 확인(S곡선)할 수 있도록 작도
 2. 각 공정별 그래프 그리기는 굵은선 기준
 3. 단위는 내역서 상의 공중단위(m, km, kg 등 소문자) 표기
 4. 가중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중별로 표기(전체공사에 대한 %)
 5. 공사종류 구분은 주요공정을 기준으로 표기
 6. 계란의 표기요령은 당해공정율(상단)과 누계공정율(하단)기입
 7. 용지크기는 시행부서와 협의
- ※ 총체공정표는 PERT-CPM 및 병풍식으로 별도작성 보고

(297mm×210mm)



▶ 【별지 제11호 서식】

품 질 시 험 계 획

공사명 :
 수급인 :

작성일 :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회수

공사종류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비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나. 시험인력

등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명	비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사항 기재

(210mm×297mm)

▶ 【별지 제12호 서식】

환 경 사 고 보 고 서

공사명 :

소속기관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 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 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 【별지 제17호 서식】

☞ 서식1.

품질검사 대장												
일련 번호	연월일	시험·검사 구분	재료	시험·검사 종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검사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확인		비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210mm×297mm [백상지 80g/m² (재활용품)]

☞ 서식2.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명 :

① 일련 번호	② 년. 월. 일	③ 시험·검사 구분	④ 재 료	⑤ 시험·검사 항 목	⑥ 시험성과	⑦ 시험·검사자	⑧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확인
		※ 건설자재별로 작성					

(210mm×297mm)

▶ 【별지 제21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출현황
 - 품 명 :
 - 규 격 :
 - 수 량 :
 - 불합격내용 :
 - 반출 입자 :

장외 반출	
전경 사진	

주) 사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 인 자 : 현장대리인

(인)

▶ 【별지 제22호 서식】

품질 부적격 자재발생현황 관리대장

번호	연월일	공구명	현장명	시공자	자재 현황						품질부적격 현황			시험 실시 기관	조치 사항	작성자	확인자	비고
					제품 종류	자재명	생산자	납품자	반입 일자	반입량	사용량	항목	시험 결과					

▶ 【별지 제23호 서식】

지급자재 청구서

○○ 장 귀하

물품운용담당 (인)

인가번호 ○○ 제 호(년 월 일)

공사 코드

공사명

감독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

자재번호	자재내역	단위	구분	계 획 수 량	전회까지 수량	금 회 청구량	지급희망 월 일	지급희망 장 소	비 고
			신품						
			중고						

상기 물품을 청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일 :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210mm×297mm)

▶ 【별지 제24호 서식】

지급자재 영수서

○○ 장 귀하

물품운용담당 (인)

인가번호 ○○ 제 호(년 월 일)

공사 코드

공사명

감독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

자재번호	자재내역	단위	구분	계 획 수 량	전회까지 수량	금 회 영수량	영 수 월 일	영 수 장 소	비 고
			신품		A4 종				
			중고						

상기 지급 물품을 정히 영수함.

영 수 일 :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210mm×297mm)

▶ 【별지 제25호 서식】

지급자재 수불부

공사명 :											
공사코드 :											
수급인 :											
자재번호 :											
자재내역 :											
년월일	설 계 량		수 입		사 용		잔량	비고	확 인		
	단위	수량	금일	누계	금일	누계			담당자	현장대리인	감독자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210mm×297mm)

▶ 【별지 제26호 서식】

지급자재 현품표

○ 옥외보관 자재

년 월 일 현재

자재번호	자재내역	단 위	구 분	수 량	비고
			신품 중고	A4 종	

○ 창고보관 자재

년 월 일 현재

자재번호	자재내역	단 위	구 분	수 량		
				수 입	불 출	잔 량
				A4 종		

(210mm×297mm)

▶ 【별지 제27호 서식】

(월)지급자재 사용현황

수 신 : ○○ 분임물품관리관

감독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인)

참 조 : 분임물품출납담당자

년 월 일

명령번호 : 제 호

(제출일 기입)

자재번호	자재내역	단위	구분	사용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 물품분류번호, 단가 금액 출납카드, 등기 ⇒ 물품출납원 기입 · 사용목적 : 인가번호 기입					
사용목적 : 공사코드 : 공 사 명 :					등기 . . .		

(210mm×297mm)

▶ 【별지 제28호 서식】

공사일지

1. 일반현황

○○년 ○월 ○일

공사명		작성자	현장대리인 : (인)	온도	최고		℃
					최저		℃
위치		확인자	공사감독자 : (인)	기상	강우량		mm
					강설량		mm

2. 공정현황

가. 총괄

구분	누계 (%)			당해 연도 (%)			
	총계	전년까지	당해 연도	금일계획	금일실시	대비	누계
계							

나. 세부내역

공종	단위	설계량	보합	실시량			진도 (%)		
				전일누계	금일	누계	금일실시	당해 연도 누계	전체 누계

3. 인원현황

구분	전일 누계	금일 투입	누계 인원	비고
계				

4. 장비현황

장비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고

5. 주요자재명

품명	규격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량
			전일누계	금일	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6. 주요 작업내용

금 일 작 업 내 용	명 일 작 업 내 용

▶ 【별지 제29호 서식】

공사진도보고(월)

년 월 일 감독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인)

공사명 : 수급인 : ○○회사 현장대리인 ○○○ (인)

공사종류	단위	수량		진도			내용	동원인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대비		구분	단위	전월	금월	누계		
								요원	인					
								기술자	인					
								노무자	인					
								계	인					
								지급자재						
								품명	규격	입하		사용		잔량
							금월			누계	금월	누계		
								장비현황						
								구분	단위	전월	금월	누계		
								특기사항						

(420mm×297mm)

▶ 【별지 제30호 서식】

공사(용역)부진 사유서

인가번호	제 호	년 월 일	공사 코드				
공사명							
착공(수)년월일	년 월 일						
준공예정년월일	년 월 일						
진도	년 월 일 현재	계획	%	실적	%	대비	%
부진사유 :							
※ 첨부 : · 공기만회대책 수정공정표 · 기타 참고 서류							
년 월 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 : (인)							
수급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 장 귀하							

(210mm×297mm)

▶ 【별지 제31호 서식】

년도					
품 신 : ○ ○	제	-	호	년	월 일
인 가 : ○ ○ ()	제	-	호	년	월 일
공사코드 :					
공사명 : _____					
설계변경(제 회)설계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 회)]					
(회 계) 예산관리센터) 사업코드)					

(297mm×210mm)

▶ 【별지 제32호 서식】

1. 설계 변경 설명서	
가. 공사명 :	당 초
나. 위치 :	변 경
다. 목적 :	
라. 공사(용역)개요 :	
마. 공사(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바. 골재원 :	(필요시 표기)
사. 토취장 :	(필요시 표기)
아. 사토장 :	(필요시 표기)

(297mm×210mm)

▶ 【별지 제33호 서식】

2. 설계 변경 사유서		
공사(용역) 종류	사 유	기 사

(297mm×210mm)

▶ 【별지 제34호 서식】

3. 공사 (추가)시방서
<p>※ 1. 표 안쪽은 크기 12</p> <p>2. 기존 줄 및 칸은 컴퓨터 활용에 용이하도록 삭제</p> <p>3. 번호체계 : 문서관리요령에 의거 시행</p> <p style="margin-left: 20px;">1.</p> <p style="margin-left: 40px;">가.</p> <p style="margin-left: 60px;">(1)</p> <p style="margin-left: 80px;">(가)</p> <p style="margin-left: 100px;">1)</p> <p style="margin-left: 120px;">가)</p> <p>4. 여러장일 경우 첫 장만 제목표기(전 서식 공통적용)</p>

(297mm×210mm)

▶ 【별지 제35호 서식】

4. 설계 변경 예정 공정표														
공사(용역) 종류	단위	수 량	공사(용역) 기간										기 사	
			1/15	2	3	4	5	6	7	8	9/18			
		(예시)→												당초
														변경
		1. 착공일과 준공예정일을 표기하고 가운데는 월만 기입												
		2. 점선(당초) 및 실선(변경)으로 표기(예시)												
		※ 세부공정표 등은 따로 작성 별도관리												

(297mm×210mm)

▶ 【별지 제36호 서식】

준공기한연장사유서			
<건설사업관리 공사>		○○ 회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인)	
인 가 번 호	() 제 - 호	공사코드	
공 사 명			
준공기한	당 초	년	월 일
	변 경	년	월 일
사 유			
		년	월 일
		수급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297mm×210mm)

▶ 【별지 제37호 서식】

준공기한연장공정표														
〈건설사업관리 공사〉														
인 가 번 호	○○ () 제 호			공사명 :			감 독 자							
공사 코드							○○회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성명 ○○○(인)							
착공 년월일	년	월	일				수 급 인							
준공 년월일	년	월	일				○○회사 현장대리인 성명 ○○○(인)							
공사 종류	단위	수 량			년									기 사
		계약	시행	잔량	1/10	2	3	4	5/10	6	7	8	9/10	
														당초 : 변경 :
														기한연장:○○일간

(297mm×210mm)

▶ 【별지 제38호 서식】

준공기한연장(제 회) 결의서														
〈건설사업관리 공사〉														
○○ 장 귀하														
○○ 본 부 ○○ 처장 (인)														
감독자:○○회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인)														
품	신	제			-	호	년	월	일					
인	가	() 제			-	호	년	월	일					
공사	코드													
공사	명													
계약	년월일													
수	급	○○ 회사			대표이사 ○○○									
준	당	년 월 일												
	변	년 월 일												
	사	별			첨									
첨	부	1. 준공기한연장사유서 2. 준공기한연장공정표												

(297mm×210mm)

▶ 【별지 제39호 서식】

<건설사업관리 공사>

제 회 기성부분 검사원

1. 인가번호 : () 제 - 호
2. 공사코드 :
3. 공 사 명 :
4. 계약금액 : 원정(W)
5. 계 약 년 월 일 :
6. 착 공 년 월 일 :
7. 준공예정년월일 :
8. 기성부분불 금액
 - 전 회 까 지 기 성 액 : 원정(W)
 - 금 회 기 성 액 : 원정(W)
 - 금회까지 누계 기성액 : 원정(W)
9. 금회 기성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10. 현재공정 : 년 월 일 현재 %

위 공사를 수급 시행함에 있어 기성부분 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확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	○○○(인)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이사 귀하

(210mm×297mm)

▶ 【별지 제42호 서식】

간이 기성부분(제 회) 개소별명세서													
공사명 :						금회기성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공사종류	규격	위 치		단위	단가	계 약 량		전회까지 기성금액	금회기성량		누 계 기성 금액	잔금액	기 사
		부터	까지			수량	금 액		%	금 액			
		k	m	k	m		.						
						1. 사용부서 : 토목 2. A ₃ 횡으로 작성 3. 금회기성량의 %는 수량에 대한 것임							

(420mm×297mm)

▶ 【별지 제43호 서식】

<건설사업관리 공사> (제 회 간이 기성부분) : 회수는 본 기성을 포함하여 연속기재, 이하동일 준 공 조 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사명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종목</th> <th>예산관리 센터</th> <th>사업코드</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건설가계정 표설정</td> <td></td> <td></td> <td></td> </tr> <tr> <td>직노원 가코드</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종목	예산관리 센터	사업코드	금 액	건설가계정 표설정				직노원 가코드			
종목	예산관리 센터	사업코드	금 액												
건설가계정 표설정															
직노원 가코드															
다음과 같이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본부 ○○처장 (인) (계약부서에 송부시 : 이하동일)															
감독자 : ○○회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인)															
공사인가번호	() 제 -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공사코드		착공년월일	년 월 일												
공사정리번호		준공기한	년 월 일												
수급인 상호명	(인)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자산 번호	비목	공사종류	단위	단가	계 약 량		전회까지 기성금액	금회기성량		누 계 기성금액	잔금액	그외의 직접비	취득사유 및 기 타		
					수량	금 액		%	금 액						
※ 금회기성량의 %는 수량에 대한 것임, 이하동일															

(420mm×297mm)

▶ 【별지 제44호 서식】

공 사 준 공 계 (크기 20)			
<건설사업관리 공사>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 ○ 장 귀하 (크기 20)</p> <p>※글자크기는 이하동일</p> </div> <div style="width: 50%;"> <p>○○ 본 부 ○○ 처장 (인)</p> <p>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회사 대표이사 ○ ○ ○ (인) (크기 20)</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div> </div>			
확 인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수급인 주 소 :	
	○○○(인)	상 호 :	성 명 : (인)
인 가 번 호	() 제 - 호	공사코드	
공 사 명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년 월 일		
기 사			

(297mm×210mm)

▶ 【별지 제45호 서식】

준 공 검 사 보 고 서			
<건설사업관리 공사>			
인 가 번 호	() 제 - 호	공사코드	
공 사 명			
감 독 자	○○ 회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성명 ○ ○ ○		
수 급 인	○○ 회사 대표이사 성명 ○ ○ ○		
검 사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검 사 사 항	붙임 준공 조서와 같음.		
기 사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준공 되었음을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검사자 : ○ ○ 회사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성명 ○ ○ ○ (인) 입회자 : 직급 성명 ○ ○ ○ (인) ←(지정시) </p> <p style="text-align: center;">○ ○ 장 귀 하</p>			

(297mm×210mm)

▶ 【별지 제46호 서식】

공 사 수 도 증			
<건설사업관리 공사>			
인 가 번 호	() 제 - 호	공사코드	
공 사 명			
착 공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년 월 일		
수 도 년 월 일	년 월 일		
확 인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상기 공사 수도를 완료함.	
	○○○(인)	년 월 일	○○○본부 ○○○처장 (인)
수급인 주소 :		상호 :	
○○○장 귀하		성명 : (인)	

(297mm×210mm)

▶ 【별지 제47호 서식】

<건설사업관리 공사> (최 종 회) <u>준 공 조 서</u>																	
	년 월 일부터	예산관리 센터	사업코드														
공사명 :	년 월 일까지	건설가계정표설정	금 액														
다음과 같이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되었음을 확인함.		직노원가코드															
년 월 일(수도일 기입, 이하동일)		○○○본부 ○○○처장 (인) (계약부서로 송부시, 이하동일)															
검사자 : ○○○회사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회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인)																	
공사인가번호	() 제 - 호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공 사 코 드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공사정리번호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수급인 상호 성명	(인)	준 공 년 월 일	년 월 일														
차 번 호	비 목	공 종	사 류	단 위	단 가	계 약 량		전회까지 기성량		금회기성량		준 공 량		중 감		그 외 의 비 적 접 비	취 득 사 유 기 타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 【별지 제48호 서식】

<건설사업관리 공사>

준 공 검 사 원

1. 인가번호 : () 제 - 호
2. 공사코드 :
3. 공 사 명 :
4. 계약금액 : 원정(W)
5. 계 약 년 월 일 :
6. 착 공 년 월 일 :
7. 준 공 기 한 :
8. 준공년월일 :
9. 기성부분별 금액
 - 전 회 까 지 기 성 액 : 원정(W)
 - 금 회 기 성 액 : 원정(W)
 - 준 공 금 액 : 원정(W)
10. 금회 기 성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공사를 수급 시행함에 있어 공사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를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확	책임건설사업관 리기술인
인	○○○(인)

수급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이사 귀하

(210mm×297mm)

▶ 【별지 제49호 서식】

(앞쪽)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공사명	
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사유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수급인에게 협력업자로	
	등록된 연월일	

하도급 내용	공사의 종류			
	하도급내용(을)	도급액(① 하도급 부분): 하도급(예정)금액: ② 하도급률:		
	하도급내용 (예정·변경)일		하도급 공사기간	착공(예정): 준공(예정):
	사회보험료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반영 요율	반영금액
	③ 고용보험			
	④ 산재재해보상보험			
	⑤ 국민연금보험			
	⑥ 국민건강보험			
	⑦ 노인장기요양보험			
	⑧ 퇴직공제부금			
*③~⑧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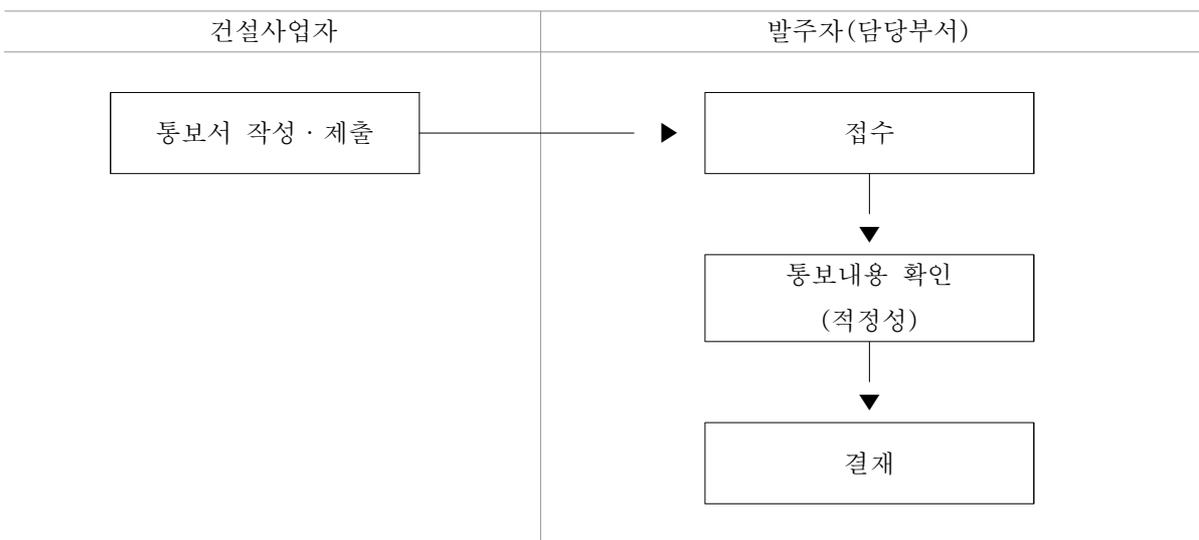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합니다) 사본 2. 공사량(규모) ·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유의사항

- ① 하도급 부분 금액은 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직접 · 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 를 포함합니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② 하도급률은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이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 제50호 서식】

건설폐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 가. 사업명 :
 - 나. 사업기간 :
 - 다. 공사비 :
 - 라. 사업시행자 :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 실적

구분	재활용 실적					문제점 및 사후대책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위치	재활용시기	

3. 재활용 계획

구분	발생량	재활용 계획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시기

▶ 【별지 제51호 서식】

궤도 부분 인계·인수서

1. 인계·인수 구간
 - 궤도 연장
 - 분기기
2. 구 분 : 궤도(상기구간 부대시설물 포함)
3. 일 시 :
4. 인계 및 인수자

구분		직책	성명	서명	비고
인계자	수급인				
인수자	발주자 (철도공사)	검토자			
		확인자			
		승인자			
입회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단)				

▶ **【붙임 1】**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ITP) 작성 · 운용지침

- 이 지침은 철도건설공사 현장의 공사 단계별 검사(검측)/시험관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업무수행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다.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 통신 및 기지분야 등의 건설업무에 적용)

1. ITP, ITC 작성 및 승인요청

(1) 승인요청

ITP 또는 ITC(Check list)는 작업절차서에 포함하여 승인 요청하거나, 별도 공종별로 작성하여 승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 * 품질검사 · 시험, 안전점검 사항 등을 포괄하여 작성하고, ITP의 검사점[필수확인점(H), 입회점(W)]은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ITP의 작업공정(검사/시험 항목) 및 ITC의 세부 작업공정 검사/시험/안전점검(세부 검사/시험) 항목의 누락이 없이 작성하여 제출 할 것

(2) 요청(제출) 시기

요청자(시공사)는 승인권자(건설사업관리단)가 검토, 승인하도록 해당 공종 착수 30일전에 여유 있게 제출

- * 당초 공정추진 계획과 달리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와 제출일정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승인권자의 검토사항

- (1) 합격 여부 판정 기준 및 작업절차/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관련규정* 등의 요건 부합여부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ITP의 검사점[필수확인점(H), 입회점(W)]은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ITP의 작업공정(검사/시험 항목) 및 ITC의 세부 작업공정 검사/시험/안전점검(세부 검사/시험) 항목의 누락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 공사시방서, 작업절차서, 기타관련 규격 및 표준법규 및 계약요건 등

- (2) 검사점 및 ITP기준을 참고하여 검사점(입회점, 정지점)을 지정
(3) 요청자가 작성한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보완토록 지시

3. 승인

- (1) 승인시기 : 승인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결과를 회신.
(2) 승인된 ITP/ITC는 해당공종 검사요청 업무에 적용되도록 관련자에게 배포.

4. 검사(점검) 요청서(ITR) 작성제출

- (1) 요청서 제출시기 : 승인된 ITP의 검사점을 기준으로 작업수행 1일 전까지
- (2) 제출 방법
요청자의 점검, 확인 내용이 기록된 점검표를 검사(점검)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검사(점검)가 검사(점검)를 위해 현장에 도착 시 제출할 수 있음.
- (3) 예외사항
해당 작업수행과 관련된 문서를 첨부 제출할 수 있으나, 사전에 제출되고 해당 작업을 명확히 이해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검사/점검/입회

- (1) 이행사항
검사(점검)점에 입회하여 검사/시험/안전점검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점검표를 활용하여 확인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2) 이행방법
검사(검측) 및 안전점검 결과를 점검표에 기록하고 검사(점검)자 확인란에 서명하여야 하며, 검사 종료 후 검사(점검) 보고서(IR)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단, 점검표(ITC) 및 보고서(IR)를 허위로 작성·조작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3)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지적서(NCR, CAR, FAN)를 발행하여 시정조치 요구 및 이행
- (4) 기타사항
검사(점검)을 수행하는 검사(점검)자는 요청자와 승인권자가 함께 사용하는 점검표가 없는 경우 해당 점검표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후속업무

- (1) 기록관리
검사(점검)자는 검사(검측) 및 안전점검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 및 기록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 (2) 결과활용
시험결과 또는 중요한 사항은 구조물 이력카드나 유지관리 매뉴얼에 기록하는 등 최종 인계인수 제출서류 및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7. 서식

<붙임 1_서식 1>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ITP)_시공분야

<붙임 1_서식 2> 검사(점검) 요청서(ITR)

<붙임 1_서식 3> 검사/시험/안전 점검표(ITC)

(시공사 작성 점검표를 건설사업관리단이 검토, 승인하는 경우)

<붙임 1_서식 4> 검사(점검) 보고서(IR)

▷▷▶ <붙임 1_서식 1>

검사 및 시험 계획서 Inspection & Test Plan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ITP) Inspection & Test (Including Safety Inspection) Plan		1. ITP번호: 1. ITP NO.		2. 개정번호: 2. REV.		3. Page of			
		4. 시공사/공구명: 4. Constructor/Section			5. 건설사업관리단/공구명: 5. Supervisor/Section				
		6. 공사(작업)명: 6. Work item(activity)			7. 장소/위치 7. Location				
시 공 사 CONSTRUCTOR				건설사업관리단 SUPERVISION CONTRACTOR (SECTION)					
8. 작성자(공사부서장) 8. Prepared by (Const. Manager)		9. 검토자(품질/안전부서장) 9. Reviewed by (Quality&Safety Manager)		10. 제출자(현장대리인) 10. Approved by (Site Representative)		11. 검토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검사점 지정자) 11. Reviewed by (Supervisor/Insp. point designator)		12. 승인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2. Approved by (Supervision sec. Mgr.)	
시공사(작성자, 검토자, 제출자), 감리단(검토자, 승인자)은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ITP)의 검사 및 시험항목이 지침서, 시방서, 도면, 규정 등에 대하여 단계별 작업공정의 누락 등이 없이 필수확인점(H), 입회점(W)이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13. 일련번호 13. Serial No.	14. 작업 공정 14. Work process	15. 적용문서 15. Applicable Document	검 사 점 Inspection Witness(W) and Hold(H) Point				20. 비고 20. Remarks		
			시 공 사 CONSTRUCTOR		건설사업관리단 SUPERVISOR				
			16. 공사부서 16. Performed by	17. 품질부서 17. Verified by	18. 안전부서 18. Verified by	18. 검사(점검)자 18. Inspector			

H(Hold Point : 필수확인점) : 검사(점검)자가 해당작업에 입회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검사점
 H(Hold Point : Essential checking point) : An inspection point which inspector must witness or check the relevant work before proceeding to the next work item.
 W(Witness Point : 입회점) : 검사(점검)자가 해당작업에 입회하지 않을 경우 다음 공정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검사점
 W(Witness Point) : An inspection point at the next work item may proceed without inspector's witness.

(1/2)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ITP) 연결지 ITP Continuation Sheet		1. ITP번호: 1. ITP NO.		2. 개정번호: 2. REV.		3. Page of	
		4. 시공사/공구명: 4. Constructor/Section			5. 건설사업관리단/공구명: 5. Supervisor/Section		
		15. 적용문서 15. Applicable Document			18. 안전부서 18. Verified by		
13. 일련번호 13. Serial No.	14. 작업 공 정 14. Work process	15. 적용문서 15. Applicable Document	검 사 점 Inspection Witness(W) and Hold(H) Point				20. 비고 20. Remarks
			시 공 사 CONSTRUCTOR		건설사업관리단 SUPERVISOR		
			16. 공사부서 16. Performed by	17. 품질부서 17. Verified by	18. 안전부서 18. Verified by	19. 검사(점검)자 19. Inspector	

H(Hold Point : 필수확인점) : 검사(점검)자가 해당작업에 입회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검사점
 H(Hold Point : Essential checking point) : An inspection point which inspector must witness or check the relevant work before proceeding to the next work item.
 W(Witness Point : 입회점) : 검사(점검)자가 해당작업에 입회하지 않을 경우 다음 공정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검사점
 W(Witness Point) : An inspection point at the next work item may proceed without inspector's witness.

(2/2)

▷▷▶ <붙임 1_서식 2>

검사(점검) 요청서(ITR)
Inspection Test(Including Safety Inspection) Request

Page ___ of ___

1. 발 신 1. From			
2. 수 신 2. To			
3. 검사(점검)요청서 번호 3. Insp. Test Request No.		4. 검사(점검)요청서 작성일자 4. Date of Issue	
5. 검사(점검)대상 공사(작업명) 5. Work Item(activity) to be inspected		6. 장소/위치 6. Location	
7. 검사(점검)요구 일시 7. Date/Time to be Inspected		8. ITP번호/개정번호 8. ITP No./Rev	
9. 검사(점검)점 일련번호/ 작업공정/검사(점검)점 종류 9. serial No./work process/identification of W/H Point			
10. 특기사항 (ITC 및 첨부물 등) 10. Remarks (ITC, Attachment, etc.)			
11. 위의 작업에 대해 (검사(점검) <input type="checkbox"/> 시험 <input type="checkbox"/> 입회점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요청하오니 검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In connection with the above work item, we hereof request your (Inspection <input type="checkbox"/> Test <input type="checkbox"/> Witness <input type="checkbox"/> others <input type="checkbox"/> .			
년 월 일 Year/Month/Date			
○ ○ ○ 회사 현장대리인 : ○ ○ ○ Company Name, Quality Manager : Name (Signature)			
전화번호(Tel. No.):		팩스번호(Fax No.):	

▷▷▶ <붙임 1_서식 3>

검사/ 시험/ 안전 점검표(ITC)

Inspection & Test(Including Safety Inspection) Checklist

(시공사 작성 점검표를 건설사업관리단이 검토, 승인하는 경우)

(Supervision Contractor reviews and approves checklists prepared by Construction Contractor)

Page ____ of ____

1. 시공사/공구명: 1. Constructor/Section			
2. 건설사업관리단/공구명 2. Supervisor/Section			
3. 검사점검표 번호 3. Checklist No.		4. 검사(점검)요청서 번호 4. Inspection Request No.	
5. ITP 번호 5. ITP No.		6. ITP 개정번호 6. ITP Rev.	
7. ITP 공사(작업)명 7. ITP Work Item(activity)		8. ITP 작업공정 8. ITP Work Process	
9. 세부작업공정 9. Details Work Process		10. 장소/위치 10. Location	
11. 시공사 검사/시험일자 11. Date of Insp./Test(Constructor)		12. 건설사업관리단 검사/시험일자 12. Date of Insp./Test(Supervisor)	
13. 점검표작성자(시공사) 13. Prepared by (Constructor)		14. 승인자(현장대리인) 14. Approved by(Constructor)	
15. 검토자(건설사업관리단) 15. Reviewed by (Supervisor)		16. 승인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6. Approved by(Supervisor)	

17. 일련 번호 17. Serial No.	18. 세부작업공정의 검사/시험/안전점검 항목 18. Inspection & Test Items for Details Work Process	19. 적용문서(합부판정 기준) 19. Acceptable Criteria	검 사 결 과 Inspection Result		22. 조치사항/비고 22. Action to be taken/Remarks
			20. 시공사 20. Constructor	21. 건설사업관리단 21. Supervisor	

* 검사/시험/안전점검 결과수치가 있는 경우 데이터를 기록) 합격인 경우에는 A, 불합격인 경우에는 UA로 표기
Record the results of checking in detail, if any inspection or test results exists. Mark "A"(Acceptable) or "UA"(Unacceptable).

	23. 검사(점검)자(시공사) 23. Inspected by (Constructor)	24. 검토자(건설사업관리단) 24. Approved by(Supervisor)
성명/서명 Name/Signature		
조직/소속명 Company/Position		
일 자 Date		

검사자 및 검토자는 검사 및 시험 점검표(ITC)의 검사/시험/안전점검 결과수치가 있는 경우 데이터 기록이 허위(조작)가 아니며 틀림이 없음을 확인 함

(1/2)

검사/시험/안전 점검표(ITC) 연결지

Inspection & Test(Including Safety Inspection) Checklist Continuation Sheet

Page ____ of ____

1. 시공사/공구명: 1. Constructor/Section			
2. 건설사업관리단/공구명 2. Supervisor/Section			
3. 검사점검표 번호 3. Checklist No.		4. 검사(점검)요청서 번호 4. Inspection Request No.	

17. 일련 번호 17. Serial No.	18. 세부작업공정의 검사/시험/안전점검 항목 18. Inspection & Test(Safety Inspection Include) Items for Details Work Process	19. 적용문서(합부판정 기준) 19. Acceptable Criteria	검 사 결 과 Inspection Result		22. 조치사항/비고 22. Action to be taken/Remarks
			20. 시공사 20. Constructor	21. 건설사업관리단 21. Supervisor	

(2/2)

▶ 【붙임 2】

시공사 세부점검표(궤도_안전)

일련번호	점검자	소속	성명	(인)
사업명/현장명			점검일자	.
구분	주요 점검사항			지적사항
고유	1) 작업 전 작업적합성 검사 (음주 및 건강상태)			
	2) 작업 전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신규자, 전입자 특별안전교육 포함)			
	2) 각종 작업 신호표지 설치여부 (작업표지판, 서행예고 및 해제표지판)			
	4) 열차감시원 및 작업원에게 열차접근을 통보할 수 있는 장비 휴대여부			
	5) 안전보호장구(안전모, 안전복, 안전화, 발광조끼) 착용상태			
	6) 안전펜스, 안전울타리 등 방호설비 여부			
	7)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승인 여부			
	8) 작업원의 음주여부 및 작업 후 뒷정리 상태			
	9) 재료관리 · 보관장소 및 도난, 화재, 열차지장여부 · 레일, 분기기의 받침대상태 · 레일의 적치시 한쪽 단면기준 정열상태 · 우수대비 부속품 조치상태			
	10) 선로운반 및 하화작업 · 적재시 편하중 및 낙하방지 상태 · 적재중량 및 제동기능 상태 · 장비 및 재료의 결박상태			
	11) 도상자갈살포 · 살포시 규정운전속도 10km/h 초과여부 · 작업원 소정위치 배치 여부 · 작업화차의 문 조작 지장 여부 · 자갈편기 하화 여부			
	12) 침목교환작업 · 균열 또는 파손여부 · 침목교환 구간의 도상다지기 상태 · 철거 침목의 정리 상태			
	13) 레일교환 작업 · 레일 취급시 해당기구 사용 여부 · 크레인 작업시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상태 · 레일취급에 따른 버릇이나 흠집여부			
	14) 작업현장확인 · 작업완료 후 뒷정리 상태 · 작업완료 후 선로상태유무에 따라 열차서행 적정성			

※ 점검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사항 없음(또는 N/A)으로 표시

▶ 【붙임 3】

궤도틀림의 관리기준

• 궤도틀림관리는 경제성, 내구연한,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단계를 구분하고 종류별 관리단계 기준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유지관리 담당 기관에서 동일 노선대에서 적용 속도대역을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준공기준(CV) : 신선 건설 시 준공기준으로 유지보수 시는 적용하지 않는다.
- (2) 목표기준(TV) : 궤도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허용기준으로 유지보수 작업이 시행된 경우 이 허용치 내로 작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 (3) 주의기준(WV) : 이 단계에서는 선로의 보수가 필요하지 않으나 관찰이 필요하고 보수작업의 계획에 따라 예방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 (4) 보수기준(AV) : 유지보수작업이 필요한 단계로 기준에 제시된 기간 이내에 작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 (5) 속도제한기준(SV) : 이 단계에서는 열차의 주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 (6) 측선이하 착발선, 차량기지, 보수기지 등 궤도검측차에 따른 검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력측정에 따른 검측을 시행하고 일반철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일반철도 궤도틀림 관리기준 (단위: mm)

(1) 고저틀림(또는 면맞춤)

관리단계	고저틀림 (mm)					고저틀림 표준편차 (mm)	비고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160<V≤230	
준공기준 (CV)	≤4	≤4 [2]	≤4 [2]	≤4 [2]	≤3 [2]	-	
목표기준 (TV)	≤6	≤5	≤4	≤4	≤4	-	
주의기준 (WV)	15≤	13≤	10≤	8≤	7≤	2.1≤	
보수기준 (AV)	21≤	19≤	15≤	13≤	11≤	-	3개월내 보수
속도제한기준 (SV)	28 (10 km/h)	26 (40 km/h)	22 (80 km/h)	20 (120 km/h)	18 (160 km/h)	-	

주) 1. [] : 콘크리트 궤도 기준

2. 속도제한규정의 고저틀림 값 이상인 경우에는 궤호의 속도 이하로 서행하고, 즉시 보수함
3. 상기 수치는 10m 대칭현 고저틀림 검측값에 적용함
4. 현방식 고저틀림의 값은 200m 이동평균을 기준선으로 설정하여 보정함
5. 고저틀림 표준편차는 총 200m 구간의 표준편차를 의미함

제1장 궤도공사 일반사항

(2) 방향틀림(또는 줄맞춤)

관리단계	방향틀림 (mm)					방향틀림 표준편차 (mm)	비고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준공기준 (CV)	≤4	≤4 [3]	≤4 [3]	≤4 [3]	≤3 [3]	-	
목표기준 (TV)	≤6	≤5	≤4	≤4	≤4	-	
주의기준 (WV)	14≤	12≤	9≤	7≤	6≤	1.6≤	
보수기준 (AV)	18≤	16≤	12≤	9≤	8≤	-	2개월내 보수
속도제한기준 (SV)	23 (10 km/h)	22 (40 km/h)	17 (80 km/h)	17 (80 km/h)	14 (160 km/h)	-	

주) 1. [] : 콘크리트 궤도 기준

2. 속도제한규정의 방향틀림 값 이상인 경우에는 궤호의 속도 이하로 서행하고, 즉시 보수함
3. 상기 수치는 10 m 대칭형 방향틀림 검측값에 적용함
4. 현방식 방향틀림의 값은 50 m 이동평균을 기준선으로 설정하여 보정한다. 다만 곡선사이의 직선구간이 200 m 이상이고 곡선반경이 1000 m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선 설정을 위한 이동평균 구간거리를 100 m로 할 수 있다.
5. 방향틀림 표준편차는 총 200 m 구간의 표준편차를 의미함

(3) 뒤틀림

관리단계	뒤틀림 (mm)					비고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준공기준 (CV)	≤3	≤3	≤3	≤3	≤3	
목표기준 (TV)	≤5	≤5	≤4.5	≤3	≤3	
주의기준 (WV)	13≤	10≤	9≤	8≤	6≤	
보수기준 (AV)	18≤	15≤	12≤	10≤	9≤	1개월내 보수
속도제한기준 (SV)	22 (10 km/h)	21 (40 km/h)	21 (40 km/h)	21 (40 km/h)	15 (160 km/h)	

주) 1. 뒤틀림 계산을 위한 기준거리는 3 m로 함

2. 속도제한규정 값 이상인 경우에는 궤호의 속도 이하로 서행하고, 즉시 보수
3. 준공기준과 목표기준의 값은 캔트체감량을 제외한 값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기준값은 캔트체감에 의한 뒤틀림 값을 포함한 값을 의미함

(4) 수평틀림

관리단계	수평틀림(mm)					비고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준공기준 (CV)	≤3	≤3	≤3	≤3	≤3	
목표기준 (TV)	≤5	≤5	≤4	≤3	≤3	
주의기준 (WV)	10≤	10≤	10≤	10≤	10≤	
보수기준 (AV)	20≤	20≤	20≤	20≤	20≤	3개월내 보수
속도제한기준 (SV)	-	-	-	-	-	

(5) 궤간틀림

관리단계	궤간틀림(mm)										비고
	V≤40		40<V≤80		80<V≤120		120<V≤160		160<V≤230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준공기준 (CV)	-2≤	≤5	-2≤	≤5	-2≤	≤5	-2≤	≤5	-2≤	≤5	
목표기준 (TV)	-3≤	≤11	-3≤	≤11	-3≤	≤11	-3≤	≤11	-3≤	≤11	
주의기준 (WV)	<-3	17≤	<-3	17≤	<-3	17≤	<-3	17≤	<-3	13≤	
보수기준 (AV)	≤-5	30≤	≤-5	30≤	≤-5	20≤	≤-5	20≤	≤-5	15≤	3개월내 보수
속도제한기준 (SV)	≤-11	35≤	≤-11	35≤	≤-10	35≤	≤-10	35≤	≤-9	27≤	
	(40 km/h)		(40 km/h)		(80 km/h)		(80 km/h)		(160 km/h)		

주) 1. 속도제한규정 값 이상인 경우에는 궤호의 속도 이하로 서행하고, 즉시 보수

제 2 장 분기기 개량공사

1. 직결식 분기기 개량

제 2 장 분기기 개량공사

1. 직결식 분기기 개량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 (1) 이 시방서는 기존선 목침목형 분기기를 직결식 분기기 개량화 공사에 적용한다.
- (2) 기존 목침목 철거 후 초속경 모르타르 및 직결식 체결장치 부설에 필요한 에폭시 주입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사용재료의 품질, 주입 및 배합 외에 주입면적, 비비기 온도, 주입속도 등 현장조건에 관련된 것들이 많으므로 사전 조사하여 재료의 공급방법, 시공설비 등을 포함한 시공을 계획하여야 한다.
- (3) 최초 시공 시에는 품질확보를 위해 시공방법과 관련된 특허(신기술) 보유자의 전문기술인에 의한 기술지원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지원비는 기술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발주자에게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1.2 참조규격

KS, KRS, ISO, ASTM, 제조물 책임법

1.1.3 제출물

- (1) 시공계획서 제출

본 공사에 대한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2) 시공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공사개요
 - ② 작업공법 및 공정관리
 - ③ 투입장비, 투입재료, 투입인력 계획
 - ④ 투입재료 시험 및 공사 품질관리
 - ⑤ 안전관리
 - ⑥ 계측관리(시공 중 선형관리)
 - ⑦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 ⑧ 기타사항

1.2 재료

1.2.1 주의사항

직결도상 제작에 사용하는 에폭시 모르타르 등 모든 재료는 규정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 사용하고, 관련 일반 구매처와 시험성적서 등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1.2.2 규사

에폭시 모르타르를 위한 규사는 일반 구매품을 사용하며 크기는 제5호와 6호를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표 1.2-1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2-1 규사의 성능 기준

사이즈	Mesh	mm/micron	비 고
5호	20~30	0.6~0.85	50:50으로 혼합사용
6호	30~60	0.25~0.6	

1.2.3 에폭시

에폭시는 주제와 경화제를 3:1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표 1.2-2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2-2 에폭시의 성능 기준 : (ECOCRETE HEP-100 참고)

구 분	기 준	시 험 방 법
압축강도(MPa)	2시간	5 이상
	3시간	30 이상
	7일	50 이상
휨 강도(MPa)	7일	15 이상
부착강도(MPa)	1일	4 이상
길이 변화율(%)	7일	±0.05 이내

KS F 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1.2.4 케미컬

케미컬은 고하중용을 사용하거나, 표 1.2-3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2-3 케미컬의 성능 기준 : (Hilti RE500 참고)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비 고
인발력 M27×30×240	kN	200 이상	
인발력 M30×35×270	kN	250 이상	

1.2.5 초속경물탈

초속경 물탈은 사용하거나, 표 1.2-4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2-4 초속경 물탈의 성능 기준 : (Mapegrout SV11K 참고)

구 분	단 위	기 준	시 험 규 정
컨시스턴씨(흐름)	%	150 이상	ASTM C 939
블리딩율	%	0.0	KS F 2433
팽창율	7일	%	0.0
	28일	%	
압축강도	3시간	N/mm ²	30 이상
	1일	N/mm ²	
	7일	N/mm ²	
	28일	N/mm ²	

ASTM C 1090
ASTM C 109

1.2.6 무수축 몰탈

무수축 몰탈은 표 1.2-5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2-5 무수축 몰탈의 성능 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시험규정	
플로우	mm	250 이상	KS F 4044:2004	
팽창율	%	0.0 ~ 0.4		
압축강도	3일	N/mm ²		20 이상
	28일	N/mm ²		40 이상

1.2.7 기타 재료

기타 부속재료는 시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를 변경코자할 경우에는 제작 검사자 또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품질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8 형태

모든 재료는 균질하고 유해한 불순물 등이 혼합되어서는 안된다.

1.2.9 제조 및 가공

모든 재료와 제품은 판매사의 품질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하며, 포장 제거 후 내용물을 확인하여 불순물이나 이상한 것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공사시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은 샌드그라인더나 세척 신나를 이용하여 제거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10 에폭시 몰탈 배합

주제와 경화제는 3대1 비율로 배합하여야 하며, 에폭시와 규사는 1대 5로 배합하여야 한다. 배합은 콘크리트 믹서기(자동) 혹은 핸드믹서기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잘 배합되도록 최소 3분 이상 배합하여야한다.

1.2.11 성능 및 외관 등

모든 재료는 KRS TR 0014 레일체결장치의 성능시방을 만족하도록 기준 강도와 접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외관에 유해한 불순물,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한다.

1.3 시공

1.3.1 시공준비

대상구간의 설계도서 및 분기기 제작도면 및 시공도를 검토한다.

1.3.2 현장답사를 통한 조사

- (1) 구조물의 위치로 선로 배선도 현황
- (2) 진입로 및 장비 대기장소, 재료 적치장
- (3) 분기기 검측 (궤간 및 선형)

- (4) 신호설비 간섭현황
- (5) 배수로 현황
- (6)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할 사항

1.3.3 재료반입

시공장비 및 재료의 반입방법 및 일정을 감독자와 협의 및 시공재료, 발생품의 현장 적치위치 및 발생품의 반출방법 및 일정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4 궤도검측

- (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현재 부설되어 있는 분기기의 검측을 실시하고, 정정작업 시행 유무를 감독자와 협의한다.
- (2) 침목 자리면 시공부분과 침목사이 시공구간을 분류하여 마킹을 실시하고, 작업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 (3) 분기기의 배수로 상태를 점검하고, 중앙배수로일 경우에는 원활한 작업을 위해 측방배수로 유도방안을 마련하고, 배수유도 구간을 마킹한다.

1.3.5 침목사이 시공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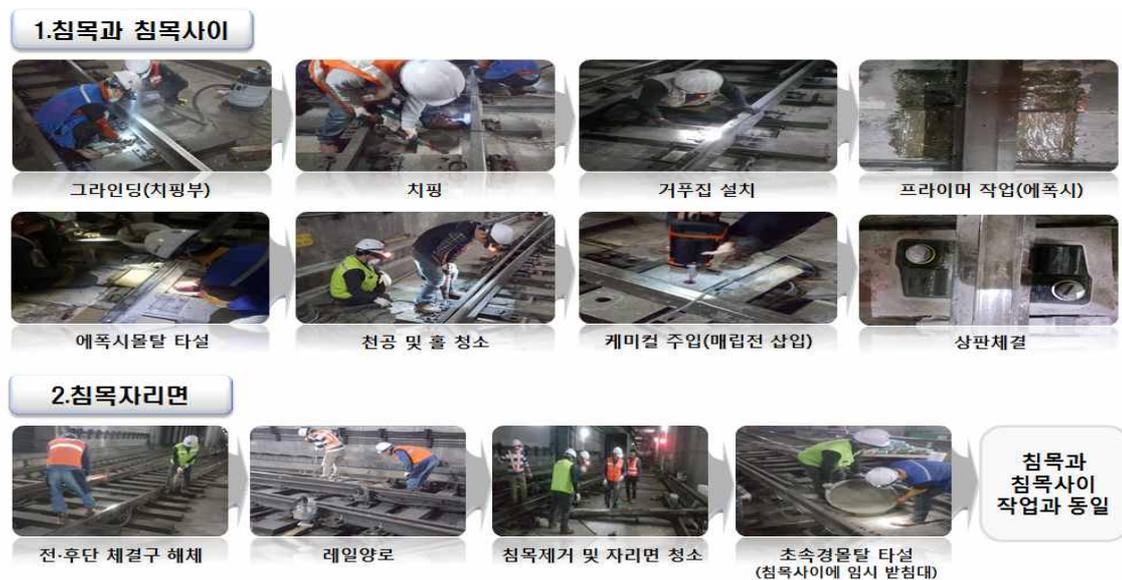
- (1) 플린스 콘크리트 설치구간을 글라인딩으로 표기한다.
- (2)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마킹구간에 요철면이 형성되도록 치핑을 실시한다.
- (3) 치핑구간에 레이턴스, 먼지, 유분, 수분 등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 (4) 치핑구간에 에폭시 모르타르 설치를 위한 거푸집 지그를 설치한다.(거푸집 지그는 탈형을 위해서 탈형제를 발라야 한다.)
- (5) 프라이머로 사용되는 에폭시(주제3 : 경화제1)를 배합비에 맞게 계량하여 전동믹서로 3~5분간 교반한다.
- (6) 치핑구간의 표면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로울러나 붓을 이용하여 프라이머를 고르게 바른다.
- (7) 에폭시 레진을 무게비(주제3 : 경화제1)를 준수하여 혼합한다.
- (8) 혼합된 레진을 무게비로 규사와 배합(일반적인 경우, 레진1 : 규사5)후 전동믹서를 이용하여 3~5분간 골고루 혼합한다.
- (9) 모르타르 설치부위에 흡손을 이용하여 에폭시 모르타르를 채운 뒤 들뜨지 않도록 눌러주면서 작업하며, 상부에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시공한다.
- (10) 에폭시 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 거푸집을 제거한다.
- (11) 해체한 거푸집은 다음 에폭시 모르타르 설치를 위해 구리스를 이용해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둔다.
- (12) 에폭시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상판을 가조립(클립체결) 하고, 천공지그를 설치한다.
- (13) 마킹된 구간에 $\varnothing 42$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천공을 시행한다.
- (14) 천공 홀을 청소용 철브러쉬 및 에어브러쉬,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3회 이상 청소한다.
- (15) 케미컬을 천공홀에 투입 후 매립전을 설치한다. 이때 케미컬과 매립전 사이에 간극이 형성되지 않도록 회전식으로 삽입하며, 케미컬이 일부 오버플로우 되도록 주입한다.

- (16) 케미컬의 완전경화 상태를 확인한다. 이후 레일을 양로한 후에 직결식 체결장치의 탄성패드 및 상판패드를 설치하고, 토크렌치를 통해 소정의 토크량으로 스파이크를 체결한다.
- (17) 기존 목침목 제거를 위해 전·후단 체결장치를 해체한다.
- (18) 목침목과 방진부츠를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
- (19) 목침목 구간에 무수축 모르타르를 콘크리트 도상면까지 타설 후 양생한다. 모르타르 타설은 열차운행 시작 시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양생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0) 궤간게이지 및 고마를 통해 궤도검측을 시행한다. 높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판패드(2t, 3t, 6t, 10t)를 이용하며, 궤간은 상판 톱니와서로 조정한다.

1.3.6 침목자리면 시공

- (1) 이음매부, 전철기부, 간류부, 텅레일 후단부, 크로싱&가드부, 용접부 신호케이블 간섭구간 등 침목사이구간에 부설이 불가능한 부분은 침목자리면에 시공을 실시한다.
- (2) 작업구간의 레일 양로를 위하여 전방 및 후방의 체결장치 클립을 해체한다.
(제거되는 침목의 경우 레일체결 상태에서 양로를 실시한다.)
- (3) 레일을 유압작기(25ton)를 이용하여 양로 후, 가받침대를 설치한다.
- (4) 측방 공간으로 목침목을 철거한다. (필요시 목침목 중앙부를 절단하여 목침목을 제거한다)
- (5) 목침목과 방진부츠를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
- (6) 초속경 무수축 모르타르를 무게비로 물과 계량하여 배합 후 강제식 믹서를 통해 3~5분 혼합한다.
※ 침목자리면 시공의 경우 작업1일에 침목 3개당 1개의 침목 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연속제거 불가)
- (7) 레일 가받침대를 설치하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게 한다.
- (8) 초속경 무수축모르타르 경화가 완료 후 “1.3.5 침목사이 시공구간” 시공순서에 따라 시공한다.

그림 1.3-1 시공 순서도



1.3.7 레일 망간크로싱 교체

- (1) 기존 목침목 및 체결시스템만 개량하는 경우 1.3.5, 1.3.6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선형정정 및 검측 후 마무리 하며, 레일/망간크로싱을 신규로 교체하는 경우 체결시스템 설치 후(선형정정 완료) 포인트부, 리드부, 크로싱부 순으로 레일/망간크로싱을 교체 설치한다.
 - ① 기존 기본레일 용접부를 절단한다.
 - ② 이음매부 이음매판을 해체 한다.
 - ③ 레일 교환을 진행 할 구간의 체결구를 해체한다.
 - ④ 포인트부, 리드부, 크로싱부 기본레일, 텅레일, 주레일, 망간크로싱을 철거한다.
 - ⑤ 신규 레일/망간크로싱을 설치하고 체결구를 체결한다.
 - ⑥ 이음매부 이음매판을 체결한다.
 - ⑦ 테르밋트 용접을 실시한다.
- (2) ※ 임시 가드상판의 사용
 - ① 기존 목침목 분기기에 부설되어 있는 가드레일 및 상판은 구형타입(C형 가드, 50kg 레일 가공형 가드레일)이 적용되어 있다.
 - ② 신형 H형 가드타입 적용을 위해 임시 가드상판을 설치하여 에폭시 모르타르를 설치/천공하고, 신규 가드레일 교체 시 임시 가드상판 및 기존 가드레일을 철거한 후 H형 가드상판 및 U69레일을 설치한다.

1.3.8 검측 및 마무리

- (1) 신규 분기기 설치가 완료되면, 검측 및 궤도정정(궤간, 밀착, 면맞춤, 줄맞춤 등)을 시행한다.
- (2) 일반구간 검측기준에 따르되 분기기 내 구간은 표 1.3-1에 따른다.

표 1.3-1 분기기구간 궤도마감 기준

종 별	정비한도(mm)	비 고
크로싱부의 궤간	+3, -2	
백게이지	1390 ~ 1396	백게이지 측정시 노스레일 후로우는 제외
CTC 구간의 텅레일 부분의 궤간	+3, -2	
분기 가드레일 후렌지웨이 폭	42±3	백게이지 1390일 때 45mm 백게이지 1396일 때 39mm

- (3) 레일 및 체결장치에 묻은 모르타르 잔재를 제거하고 현장청소를 실시한다.
- (4) 공구 및 자재 반출하고, 특히 궤도공사에 사용된 폐자재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법규에 의한 폐기물 처리절차에 의거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 (5)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밀착성 불량개소를 점검하고 불량개소에 대해서는 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보수하여야 한다.

1.3.9 산업재산권의 권리보호

- (1) 궤도구조 개량공사의 공사방법 및 자재는 아래 표의 특허 등록에 의해 특허권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표 1.3-2 직결식 분기기 개량 관련 국내 특허

구분	명 칭	특허권자	등록번호	출원일자	특허등록일자
1	콘크리트 도상 분기기 갱환 시공방법	삼표피엔씨(주) 대구도시철도공사	10-1225656	2012.07.04	2013.01.17
2	철도레일 체결볼트용 와셔	삼표레일웨이(주)	30-0944715	2016.12.22	2018.02.12
3	부시형조절톱니와셔가 구비된 철도레일의 방진 체결장치	삼표레일웨이(주)	10-1774384	2016.12.22	2017.08.29
4	속경성 고강도의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및 그를 이용한 철도 레일용 침목	(주)삼표산업 삼표레일웨이(주)	10-1827430	2016.09.12	2018.02.02

표 1.3-3 직결식 분기기 개량 교통신기술

구분	명 칭	개발자	지정번호	보호기간
1	부시형 조절톱니와셔가 구비된 분기기 레일체결장치 시공기술	삼표레일웨이(주)	제46호	2019.11.13. ~ 2024.11.12

- (2) 시공방법 및 제품제작으로 인한 산업재산권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해 당사자들 간에 해결하여야 한다.

제 3 장

레일용접공사

1. 일반사항
2. 테르밋트 용접

제 3 장 레일용접공사

1. 레일용접공사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궤도공사 현장에서 시행하는 레일 용접작업에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1.3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시공계획서(테르밋트용제 제작사 포함)를 제출한다.

1.2 재료

내용 없음.

1.3 시공

1.3.1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 ① 레일용접(이하 ‘용접’)이란 철도선로의 레일, 텅레일 및 크로싱의 수명연장을 위한 살붙이기 용접과 레일 상호간의 연결을 위한 이음용접을 의미한다.
- ② 레일용접공(이하 ‘용접공’)이란 「철도안전법」 제7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②항,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업무의 위탁) 제④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위탁 자격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철도레일용접인정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철도안전전문인력(레일용접) 자격증명서(이하 ‘용접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의미한다.
- ③ 현장기술자란 공사시행에 관하여 제 법규 및 규정을 숙지하고 경험이 있는 자로서 발주자에게 공사 착공계 제출 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 ④ 현장용접이란 기 부설된 궤도상 또는 부설 예정개소의 노반면에서의 용접을 말한다.
- ⑤ 언더컷(undercut)이란 용접할 때 발생하는 결함의 하나로 용착금속과 모재와의 경계에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이 되어 남아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 ⑥ 블로 홀(blow hole, 鑄接 氣孔)이라 함은 용접금속이 서로 접합되지 않고 작은 구멍이 형성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 ⑦ 트리밍(trimming)이란 용접부 외부에 과잉 응고된 용재나 압축용접 시 용착부 둘레에 밀려나와 응고된 용융금속을 열기가 남아있는 동안에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⑧ 노멀라이징(normalizing, 燒準)이란 재료의 입자가 크게 성장되어 조직이 거칠어지거나 내부응력이 축적되어 기계적 성질이 좋지 못한 것을 변태점 이상 40~60℃로 일정시간 가열하여 미세한 조직으로 만든 후 공기 중에서 서냉하여 적당한 강도와 경도로 만드는 작업을 말하되 아세틸렌을 이용하여 용접할 경우에 시행한다.

(2) 용접공법의 종류

레일용접 공법은 가스압접용접, 테르밋트 용접 등을 말한다.

① 가스압접:

산소, 아세틸렌으로 접합할 레일의 양단면을 약 1,200℃로 가열하여 압접하는 방법이다.

② 테르밋트 용접:

산화철과 알루미늄 분말과의 혼합에 의한 테르밋트 반응에 따라 2,000℃정도의 발열에 의해 용융한 용강을 접합할 레일 사이에 주입하여 용접하는 방법이다.

1.3.2 시공 일반

(1) 레일용접은 국토교통부 위탁 자격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레일용접공이 시행한다.

(2) 사용레일

① 용접에 사용하는 레일길이는 10m 이상(재사용레일의 경우 기존 용접부의 영향이 없는 곳을 기준으로 함)의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또한, 재사용레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굴곡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마모단면을 선별하여 비슷한 것끼리 사용하며, 단부의 끝닿음 부분은 충분히 절단한 후 용접한다.

(3) 레일 및 크로싱의 마모 및 훼손

살불이기 용접은 레일 및 크로싱의 일부 마모 및 결함으로 인하여 열차운행 및 궤도보수에 지장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시행한다.

(4) 레일 용접부의 재용접

레일 용접부의 재용접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한다.

① 최초로 25mm 테르밋트용접 공법으로 용접을 시행한 후에 훼손이 나 결함 등이 발생하여 재용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에는 68mm 테르밋트 용접을 시행하며, 용접부 절단 길이는 65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68mm 테르밋트 용접을 시행한 개소에 재용접을 시행할 경우에는 용접부의 절단 길이가 200mm 이상이어야 한다.

(5) 레일절단

레일을 절단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직 고정 장치가 장착된 레일절단기를 사용하여 수직으로 절단한다.

(6) 레일천공

레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반드시 레일드릴을 사용하고, 천공면을 손줄 및 그라인더 등으로 정리한다.

(7) 사전 다듬질

용접시 레일 절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나 슬래그해머(slag hammer) 등으로 레일 단부면 및 용접부 전후 10cm 구간을 철저히 청소하여 불순물과 녹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특히 가스압접 시에는 단면용 그라인더로 단면을 다듬질한 후 전면의 거칠기가 50S가 되도록 하고, 각의 들레를 줄로 삭정한다.

(8) 끝 다듬질

용접 후 용접개소의 여성부는 모재면(저부는 제외)에 맞추어 다듬질하되, 다듬질 후의 표면 거칠기는 레일 두부의 상면 및 측면에서 50S, 복부 및 기타 부분에서 100S 이내이어야 한다.

(9) 원상복구

레일체결장치 해체 등과 같이 용접하기 전에 준비작업으로 행한 궤도의 임시변상(變狀) 및 재료의 이동 등은 용접이 끝난 즉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원상 복구한다.

(10) 철거 발생품

공사 중에 발생된 철거발생품은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치 정돈한다.

(11) 방청도유

레일 용접 후 또는 크로싱 재생 후에는 용접부의 모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백등유 등을 발라야 한다.

(12) 용접 표시

표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 ① 이음용접 시공 후에는 용접부 근처 레일두부 측면의 윗면에서 하방 20mm 지점에 글자의 윗부분이 일치되도록 스탬프 펀치를 이용하여 용접년도와 용접공 고유번호를 표시한다. 이때의 표시 양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1.3-1 용접 표시

- ② 글자의 크기는 가로 6.6mm×세로 10mm로 한다.

(13) 장대레일 현장제작 길이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4) 용접시 주의사항

- ① 수급인은 레일 용접 전에 용접자로부터 5m 내 물통, 불받이 포, 건조사, 소화기 등의 안전장비를 준비하여 용접 중 화재발생시 초기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 ② 또한,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3.3 용접의 품질관리

(1) 기상조건

현장에서 시행하는 테르밋트 용접의 경우 우천, 강풍 등 용접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용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용접하려면 야간작업이나 습도가 많은 날의 용접은 지양하되 별도의 방호설비를 하고 용접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이 되어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2) 끝다듬

① 끝다듬 종사자

끝다듬 종사자는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로 하며 이에 종사하는 자 중 1명은 레일용접 기술자를 배치한다.

② 끝다듬 시공

용접부 표면 거칠부는 레일두부상면 및 궤간선 쪽은 50S 이상으로 하고 최종 연삭시는 그 라인더의 작업 방향을 레일 길이 방향으로 한다. 끝다듬 후 레일용접 끝다듬 정도는 1.3.4 (7) 용접부 끝다듬 검사(줄맞춤 및 면맞춤 검사) 기준과 같으며, 검사방법은 그림 1.3-2,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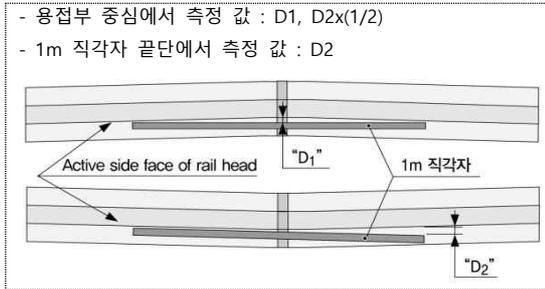


그림 1.3-2 줄맞춤 검사(방향, 줄틀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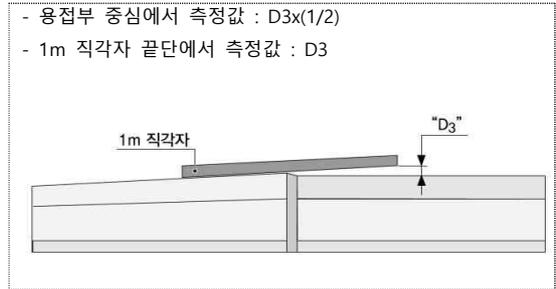


그림 1.3-3 면맞춤 검사(고저, 면틀림)

③ 침투탐상에 의한 확인

레일 용접부의 침투탐상에 의한 확인은 전 용접개소에 대하여 시행하고 균열 및 손상 등의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④ 초음파 탐상에 의한 확인

레일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에 의한 확인은 전 용접개소에 대하여 시행하고 균열, 블로 홀, 모래구멍 등의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1.3.4 용접부의 검사

(1) 검사종목

테르밋트 용접의 검사종목은 표 1.3-1와 같다.

표 1.3-1 용접방법별 검사종류

검사종목 \ 용접방법	테르밋트 용접	비고
외관검사	전수	
침투탐상검사	전수	붙임 2.
초음파탐상검사	전수	붙임 1.
경도시험	5% 이상 (1개소 5점)	타격점은 보통레일의 경우임

(2) 외관검사

레일용접부에 대한 외관검사는 다음 각호를 검사하되, 결점이 있어서는 안된다.

① 두부면 요철, 균열

- ② 굽힘, 비틀림
- ③ 언더컷, 블로 홀
- (3) 침투탐상 검사
레일용접개소의 침투탐상 검사결과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 (4) 초음파탐상 검사
초음파 탐상 검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 ① 모든 용접개소에 대하여 레일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을 하여 용합불량(불충분한 용해)과 같은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 ② 유해한 결함의 측정위치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 두부 및 저부: 2등급 이상의 결함(A구역)
 - 나. 복부: 3등급 이상의 결함(B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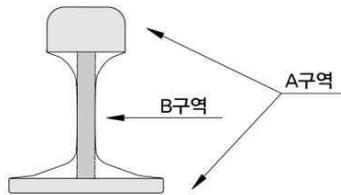


그림 1.3-4 초음파탐상 측정위치

표 1.3-2 결함의 범위

구역	유해한 결함의 범위
A구역	2, 3, 4등급
B구역	3, 4등급

다. 결함등급의 분류는 **【붙임 1】** (레일용접부 초음파 탐상 지침)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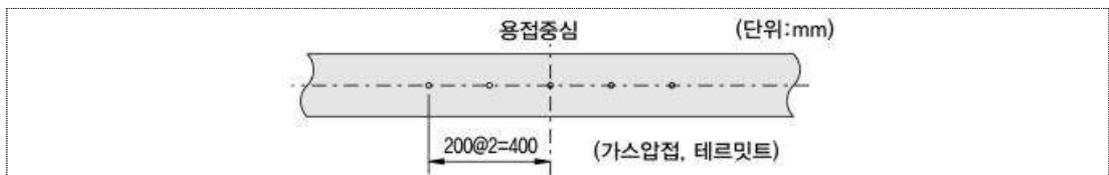
- (5) 보통레일의 경도시험은 브리넬 또는 쇼어 경도로서 다음 범위 내에 들어야 하며, 경도 측정 위치는 그림 1.3-5와 같다.

표 1.3-3 경도 범위

구분	브리넬 경도(Hb)	쇼어 경도(Hs)
경도 범위	240~340	36~50

단, 브리넬 경도시험은 표준강구(d = 10mm), 하중 3,000kg 사용

그림 1.3-5 경도 측정위치



- (6) 현장용접 시험편의 시험

- ① 용접공은 국토교통부 위탁 자격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철도레일용접인정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자이므로 공사건별 용접공에 대한 시험편제작은 시행하지 않고, 국내 사용실적이 없는 테르밋트용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용접 시험을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용접공의 용접품질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험편 시험을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시험편 시험을 하여야 한다.)

- ② 현장용접 시험편은 외관검사, 침투탐상검사, 자분탐상검사, 초음파탐상검사, 경도시험, 굴곡시험 등을 시행하며, 굴곡시험의 경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 가. 시험편의 제작은 별도 지급레일을 길이 750mm±50mm로 절단하고 당해공사와 동일 조건에서 용접하여 소정의 열처리 및 마무리를 한다. 용접별 시험편의 제작본 수는 1회에 2개로 하며, 시험편에는 공사건명, 시공연월일, 시공장소, 시공회사명, 시공자명 및 시공시의 전후 날씨, 기온 등의 환경상태 등을 표시한다.
 - 나. 시험방법, 시기 및 장소에 대하여는 미리 승인을 받는다.
 - 다. 경도시험은 굴곡시험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라. 경도 측정위치는 레일두부 상면 가운데로 한다.
 - 마. 굴곡시험은 시험편의 용접부를 중심으로 지점간 거리를 1.0m로 하여 용접부 중앙을 가압하는 것으로 하고 레일두부와 저부를 각각 상면으로 놓아 가압 시험한다.
 - 바. 파단면에는 균열, 접합 불량, 이물질의 삽입 등 용접부에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③ 용접시험편 시험결과 처리

용접시험편의 시험결과 용접불량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시험편 제작수량을 2배수로 하여 재시험하거나 용접책임자 및 용접기술자를 교체하여 다시 제작하여 시험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④ 낙중시험(또는 굴곡시험)

가. 낙중시험은 용접부를 중심으로 지점간 거리를 914mm로 하여 중량 907kg_f의 추를 0.5m 높이로부터 0.5m씩 낙고를 높이면서 반복 시행하며, 다음 표의 최대 높이에서도 레일두부 및 레일저부의 어느 부분에도 파손, 균열, 터짐이 없어야 한다.

표 1.3-4 용접별 낙중시험

레일종류	테르밋트 용접	비고
50 kg _f /m 신폼레일	1.5 m	
60 kg _f /m 신폼레일	2.0 m	
50 kg _f /m 재사용레일	1.0 m	
60 kg _f /m 재사용레일	1.5 m	

나. 굴곡시험은 낙중시험을 할 수 없을 때 시행한다. 이때 용접부를 중심으로 지점간 거리는 1.0m로 하고, 레일두부와 저부를 각각 상면으로 놓은 후 레일 용접부를 일정 속도로 가압한다. 시험은 각각 1분씩 시행하며, 시험결과 2분 모두 다음 표에 기재된 최대하중 및 처짐량 이상에서 균열 또는 파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표 1.3-5 굴곡시험 최대하중 및 처짐량

레일종별	가압방법	적요	테르밋트 용접		비고
			일반	열처리	
신폼레일	50 kg _f /m	두부상	하중 (ton _f)	85	
			처짐 (mm)	10	
		두부하	하중 (ton _f)	80	
			처짐 (mm)	13	
	60 kg _f /m	두부상	하중 (ton _f)	110	110
			처짐 (mm)	13	10
두부하		하중 (ton _f)	110	110	
		처짐 (mm)	13	9	
재사용레일	50 kg _f /m	두부상	하중 (ton _f)	70	
			처짐 (mm)	10	
		두부하	하중 (ton _f)	70	
			처짐 (mm)	13	
	60 kg _f /m	두부상	하중 (ton _f)	90	
			처짐 (mm)	10	
		두부하	하중 (ton _f)	95	
			처짐 (mm)	13	

(7) 용접부 끝다듬 검사(줄맞춤 및 면맞춤 검사)

- ① 용접 후 레일두부의 면맞춤 및 궤간 내측부의 줄맞춤에 대한 끝다듬 검사는 용접부를 중심으로 1m 직자로 검사하여야 한다.
- ② 1m 직자 검사결과 허용값을 만족하는 경우 면맞춤 및 줄맞춤 틀림량을 10배 확인이 가능한 레일직진도(디지털식) 검사기로 재검사하여 만족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 ③ 끝다듬 이후 레일온도가 완전히 낮아진 상태에서 레일직진도 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④ 레일직진도 검사결과는 검사 기록지를 출력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⑤ 줄맞춤 및 면맞춤에 대한 틀림값은 다음 표 1.3-6 치수 이내이어야 한다.

표 1.3-6 용접부의 줄맞춤과 면맞춤 기준

항목	종별	신폼레일(mm)	재사용레일(mm)
		일반철도	
줄맞춤		± 0.4	±0.5
면맞춤		+0.4, -0.1	±0.5
비고	· 일반철도의 면맞춤을 (-)측으로 하여 하향 처짐이 발생할 경우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측 기준을 적용		

(8) 끝다듬질 검사

끝다듬질 검사는 비교시편을 이용하여 가공면의 표면거칠기를 촉감 및 시각 등으로 비교 검사하여 1.3.2 (8)끝다듬질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표면거칠기 범위는 다음 표 1.3-7을 참고하도록 한다.

표 1.3-7 비교시편의 표면거칠기 범위

다듬질 기호	표면거칠기 (Ra)	표면거칠기 (Rmax)	표면거칠기 (Rz)	표면거칠기 번호 (표준편 번호)
▽ (Ra: 25~100 μm)	12.5a	50S	50z	N10
	25a	100S	100z	N11
비고	· Rmax(최대높이), Rz(10점 평균거칠기), Ra(중심선 평균거칠기편)			

(9) 재용접부의 검사

재용접 개소에 대한 용접방법별 검사종목 및 품질기준은 이 시방서 1.3.4(용접부의 검사)를 따른다.

(10) 보관

공사감독자는 공사감독일지와 수급인의 시공기록표(시험결과 포함)를 보관한다.

2. 테르밋트 용접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테르밋트 용접(Thermit Welding)작업에 적용한다.

2.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2.1.3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테르밋트 용접 시공계획서(테르밋트용제 제작사 포함)를 제출한다.

2.2 재료

2.2.1 재료요건

보통레일, 열처리레일

2.2.2 장비

- (1) 경도시험기(브리넬, 쇼어, 비커스)
- (2) 초음파탐상기
- (3) 자분탐상기
- (4) 낙중시험기
- (5) 굴곡시험기

2.3 시공

2.3.1 시공 방법

(1) 테르밋트 용제의 보관 및 사용

테르밋트 용제는 일반 레일용과 열처리 레일용으로 구분하고 화재, 습기 및 먼지 등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정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 ① 용접재료(용제, 몰드, 점화제, 오토탭 등)는 반드시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여 한다.
- ② 용접재료 중 용제는 제조 후 3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한번 습기를 포함한 용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레일의 조정

레일의 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① 이음매판을 철거하고 양편으로 2, 3개 정도의 레일 체결장치를 풀어 늦추어 놓아야 한다.
- ② 이음매부의 부식, 플로 등을 정리한 뒤, 25mm 용접일 경우에는 유간이 $25 \pm 1\text{mm}$ (PLA 경우 $25 \pm 2\text{mm}$), 68mm 용접일 경우에는 유간이 $68 \pm 3\text{mm}$ 가 되도록 한다.
단, 용접 시 적정한 유간이 없는 경우에는 레일을 절단한다.

③ 레일단면의 청소

레일단면은 이 시방서 제4장/ 1.3.2/ (7)사전 다듬질에 따라 청소를 한다.

④ 레일을 1m 수평 철자로 재어 양측면을 직선이 되도록 하고 레일두부는 이음매부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1m 직각자의 한쪽 끝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일반철도 운행선 : 1.75 ~ 2.0mm

나. 신설선 : 1.0mm 가 낮아지도록 맞출 것.

다. 마무리연마 범위는 운행선 600mm, 신설선 450mm

(3) 형틀설치(몰드설치)

용접용 형틀(몰드)의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① 고정 장치는 소정위치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형틀은 한쪽에 고정시킨 다음 다른 한쪽을 맞추어 고정시킨다.

② 틈막이 모래가 이음매부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용철이 새지 않도록 형틀의 저부, 측면을 빈틈없이 막은 다음 예열 버너로 형틀 내의 모래 등을 청소한다.

③ 도가니는 고정장치 위에 설치하며, 오토탭 점화플러그는 소정위치에 정확히 거치한다.

(4) 예열

산소 압력은 5 bar(0.5MPa), 프로판 압력은 1.5 bar(0.15MPa)로 조정(PLA 경우 산소1.5 bar, 프로판 0.4 bar)하여 예열을 시행하며, 이때 레일두부로부터 버너파이프까지의 간격과 예열시간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포장을 제거하지 않은 1회용 도가니를 사용하여 완전 건조 상태에서 작업한다.

표 2.3-1 레일두부로부터 버너파이프까지의 간격

구분	원형 버너파이프	사각 버너파이프	
		25mm 용접	68mm 용접
간격(mm)	40	50	70

표 2.3-2 레일종류 및 용접방법에 따른 예열시간

레일종류	50kg _f /m		60kg _f /m	
	25mm 용접	68mm 용접	25mm 용접	68mm 용접
예열시간(분)	4	5	5	6

(5) 점화 및 주입

점화 및 주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예열하는 동안 도가니에 테르밋트 용제를 넣고, 예열이 끝난 후에 점화제를 주입하여 용제를 점화시키며, 이때 반응은 약 40초 내외에 완료한다.

② 용제는 오토탭을 사용하여 자동 탬핑되도록 하고, 오토탭의 작동시간은 점화 후 15 ~ 30초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표준 작동시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재용접을 원칙으로 하나, 작동시간이 미세하게 벗어난 경우에는 주의 깊게 끝다듬질 검사를 시행하여 결함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다음 공정으로 진행한다.

③ 몰드 제거

25mm 용접을 할 경우에는 용철이 흘러 주형 내에 들어간지 3분 이후(PLA 경우 5분 30초), 68mm 용접을 할 경우에는 10분 이후에 몰드 케이스 및 클램프장치를 해체하고, 다시 6분(68mm 용접 경우 12분)이 경과 레일 상면에서 약 10mm까지의 상부 몰드를 제거한다. 이때 레일 복부 및 저부의 몰드를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④ 트리밍(끝다듬)

가. 트리밍은 적열 중에 전단 잭크를 사용하여 시행하되, 깊이 깎여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여유 두께가 1~1.5mm가 있어야 한다.

나. 수동연마 시 줄맞춤 및 면맞춤은 (-)연마가 되지 않아야 하며, 이 시방서 제3장/ 1.3.4 용접부의 검사/ (7)의 표 1.3-6 치수 이내이어야 한다.

다. 수동연마 후에 레일연마의 균일한 품질확보가 필요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자동연마를 시행한다.

라. 서냉한 후의 레일상면은 이 시방서 제3장/ 1.3.4 용접부의 검사/ (8)끝다짐질 검사의 표 1.3-7에 따른다.

마. 저부측면의 경우에는 여성부를 레일면과 함께 양쪽 모두 갈아야 한다.

(6) 두부 열처리레일 용접 후 후열처리

두부 열처리레일을 용접 후 다음 각호에 따른 후열처리를 한다.

① 후열처리 전에는 후열처이용 버너의 정비, 각종 압력계 및 유량계의 조정 등 사전준비를 면밀히 시행한다.

② 후열처리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열개시 및 시공시간, 가열범위, 공냉시간, 공냉범위 등에 유의하고 다음 조건을 표준으로 한다.

가. 용접중심부의 두부 표면온도가 600℃가 될 때 재가열을 시행하며, 용접 범위를 열처리하여 적당한 온도(레일 두부표면온도 약 1,000℃)까지 가열한 후 버너를 끄고 강제공냉한다. 이때 버너의 움직임 폭은 150mm 범위로 한다.

나. 가열조건은 다음 표 2.3-3를 표준으로 한다.

표 2.3-3 가열조건

구분	유량계 입구압력	유량계 눈금	비고
산소	5.0 bar (0.5 MPa)	100 l/min	
아세틸렌	0.6 bar (0.06 MPa)	100 l/min	

다. 냉각을 시행할 경우에는 용접기 통과 직후 200초(HH340=300초, HH370=480초) 동안 신속히 송풍을 시행한 후 송풍기 스위치를 끄고, 레일두부표면의 온도가 250~300℃가 되면 공냉 헤드와 레일 두부표면간의 거리를 10mm로 유지한다.

라. 연화부의 범위(쇼어 경도 HH370=49, HH340=47 이하)는 20mm 이하이어야 한다.

마. 후열처리 후 레일두부면 경도는 그림 2.3-1에서 정한 위치에서 측정하여 다음 표 2.3-4의 경도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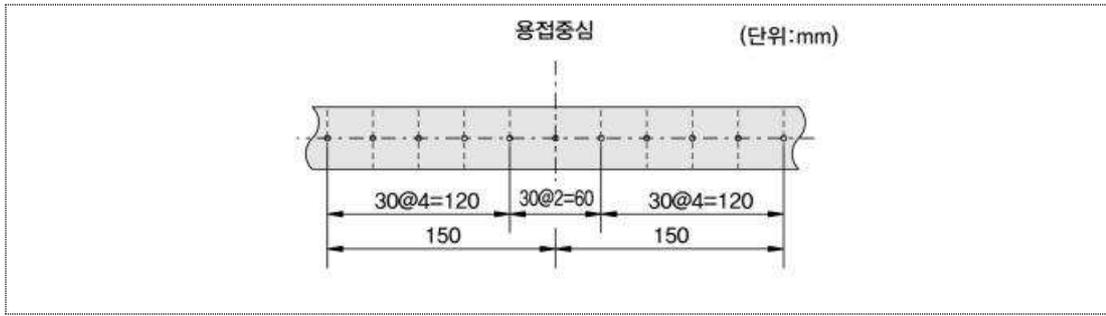


그림 2.3-1 경도 측정위치(후열처리 후)

표 2.3-4 레일두부면 경도

경도 재질	브리넬 경도	쇼어 경도	비커스 경도	비고
HH370	331~388	49~56	331 이상	
HH340	321~375	47~53	311 이상	

▶ 【붙임 1】 (1. 레일용접공사 일반사항/ 1.3.4 용접부의 검사) 관련

레일용접부 초음파 탐상 지침

1. 목적과 적용범위

- (1) 이 지침은 레일용접 개소의 용접결함 검출을 목적으로 하며, 용접시공 시의 ‘레일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방법’ 중에 초음파탐상에 적용한다.
- (2) 초음파탐상은 펄스반사법에 의한 기본 표시의 포터블 초음파 탐상기를 사용하며, 탐촉자의 수동 주사에 의한 직접 접촉법으로 한다.

2. 장치 및 부속품

2.1 탐상기

A-scope 표시의 펄스 반사식 초음파 탐상기를 사용한다.

2.2 탐촉자

- (1) 주파수 2MHz, 진동자 크기 10mm×10mm(높이×폭), 공칭 굴절각 45°의 사각 탐촉자를 사용한다.
- (2) 정밀도가 높게 결함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KS B 0831(초음파 탐상 시험용 표준 시험편)에 규정된 초음파 탐상용 표준시험편(STB-A1)을 사용하여 탐촉자의 입사점, 굴절각을 정확히 측정한다.

① 입사점의 측정

가. STB-A1 시험편의 100R 곡면을 향하여 초음파를 입사한다. 탐촉자를 전후로 이동(전후 주사)시켜 곡면으로부터의 에코 높이가 최대가 되는 위치에서 고정한다.

나. 이때, 100R의 중심을 나타내는 표시(silt의 곡면측)에 대응시켜 탐촉자 측면의 입사점 눈금을 0.5 눈금 단위로 읽는다. 이 값이 사용 탐촉자의 입사점이다.

※ 반드시 탐촉자 밑면에 썰기를 부착한 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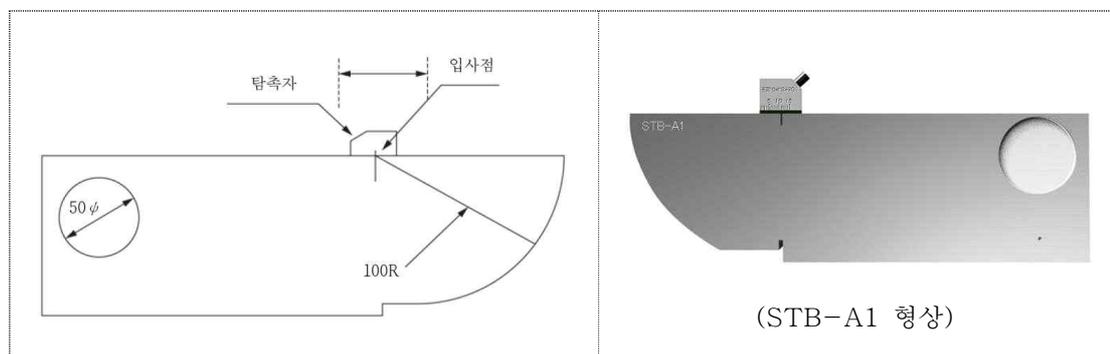


그림 1 입사각 측정방법

② 굴절각의 측정

STB-A1 시험편의 45° 부근에서 50φ 구멍을 향하여 탐촉자를 진후 주사하여 에코가 최대가 되는 위치를 구한다. 이때 ①에서 측정한 입사점에 대한 표준 시험편의 각도 눈금을 0.2° 단위로 읽는다. 이 값이 사용 탐촉자의 굴절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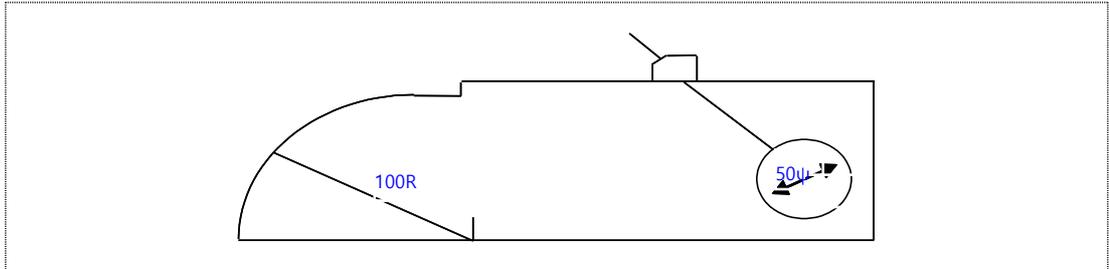


그림 2 굴절각의 측정방법(STB-A1)

2.3 대비 시험편

대비 시험편(RW1-60형·레일 용접부 탐상용)은 KS R 9106(보통 레일)에 규정된 60kg 레일을 가공한 것을 사용한다. 이에 대한 형상 및 크기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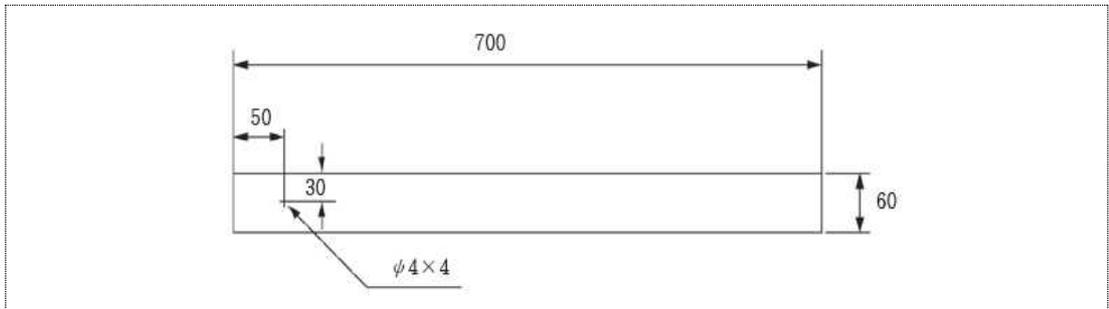


그림 3 레일 용접부 탐상용 대비 시험편(단위 mm)

2.4 접촉매질

접촉매질은 원칙적으로 글리세린, 기계유를 사용한다.

3. 탐상준비

3.1 용접부 및 탐상면의 손질

- (1) 두부 및 저부 측면의 덧살이 잘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탐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단이 용접부 표면에 존재할 경우는 그 부분을 매끄럽게 마무리한다.
- (2) 테르밋트 용접부에 있어서는 특히 저부 측면의 덧살하부에 주의하여야 한다.
- (3) 탐상면이 되는 두부면(용접부 양측 약 200mm의 범위), 두부측면(용접부의 양측 약 100mm) 및 저부측면(용접부 양측 약 150mm)에 대해서는 스파터(splatter), 녹, 페인트, 스케일 등을 제거하고, 탐촉자의 안정된 접촉과 주사를 할 수 있도록 평활하게 한다.

3.2 주파수·리젝션·펄스 폭 등의 설정

주파수는 2MHz, 리젝션 및 DAC는 ‘0’ 또는 ‘OFF’ , 펄스폭 및 파형은 ‘보통’ 으로 한다.

3.3 시간축의 조정

실제로 사용하는 탐상기와 탐촉자의 조합에 의해 일탐촉자법으로 조정한다.

- (1) 대비 시험편(RW1-60형)의 결합 수직거리(탐상면에서 중심까지의 깊이)가 20mm인 표준구멍을 직사에 의한 에코가 시간축 눈금 5에, 결합 수직거리가 140mm인 표준 구멍을 직사에 의한 시간축 눈금 35에 위치하도록 측정 범위 및 원점을 조정한다.
- (2) 수직 결합 거리 40mm, 60mm, 80mm, 100mm의 표준 구멍으로부터의 직사에 의한 에코가 각각 시간축 눈금 10, 15, 20, 25 및 30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3.4 이(2)탐촉자법의 감도조정

- (1) 두부를 탐상할 경우는 대비시험편 두부 상면의 표준구멍(A1)으로부터의 반사 에코높이가 80%가 되도록 감도를 조정한다. 이때의 에코 위치는 시간축 눈금 7~8부근이 된다. 또한, 이 감도를 H2 기준 감도라 한다. 또한, 저부를 탐상할 경우에도 저부하면의 표준구멍(A2)으로부터의 반사 에코 높이가 80%가 되도록 감도를 조정한다. 이때의 에코 위치는 시간축 눈금 18 부근이 된다. 또한, 이 감도를 B2 기준감도로 한다.
- (2) 게인을 조정하여 H2 또는 B2 기준 감도에서 6dB만큼 감도를 내려 이때의 에코 높이가 40%임을 확인한다. 또한 기준감도에서 12dB 내렸을 경우의 에코 높이가 20%, 18dB 내렸을 경우의 에코 높이가 10% 정도임을 확인한다.

3.5 일(1)탐촉자법의 감도조정과 거리진폭 특성곡선

- (1) 결합수직거리 140mm인 표준구멍의 직사에 의한 에코가 최대가 되는 위치에서 에코높이가 60%가 되도록 감도를 조정한다. 이때의 에코 선단위치를 눈금 상판에 플로트 한다. 또한, 이 감도를 H기준 감도로 한다.
- (2) 게인을 조정하여 H기준 감도상에서 6dB 만큼 감도를 내리고 이때의 에코높이(에코 선단 위치)를 눈금상판에 플로트 한다. 또한, 6dB 만큼 감도를 내려 같은 형태로 플로트 한다. 에코 높이가 5%를 넘을 때까지 이를 반복한다.
- (3) 탐촉자를 이동하여 (2)에서 설정한 각 감도에 대하여 결합수직거리가 다른 표준 구멍의 직사에 의한 에코 높이를 눈금상판에 플로트 한다.
- (4) 결합 수직거리가 다른 표준구멍에 대해 에코 높이의 플로트 점을 각 감도별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시간축상 눈금 35 이상은 45까지 직선을 연장한다. 또한, 시간축 눈금 5 이내는 5 눈금의 에코높이의 플로트 점과 같은 높이의 선으로 한다. H기준 감도의 선을 H선, H선에서 6dB 낮은 선을 A선, A선에서 6dB 낮은 선을 B선, B선에서 6dB 낮은 선을 C선, C선에서 6dB 낮은 선을 D선, D선에서 6dB 낮은 선을 E선으로 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구해진 곡선군을 거리진폭 특성곡선이라 하며, 그 작성 예는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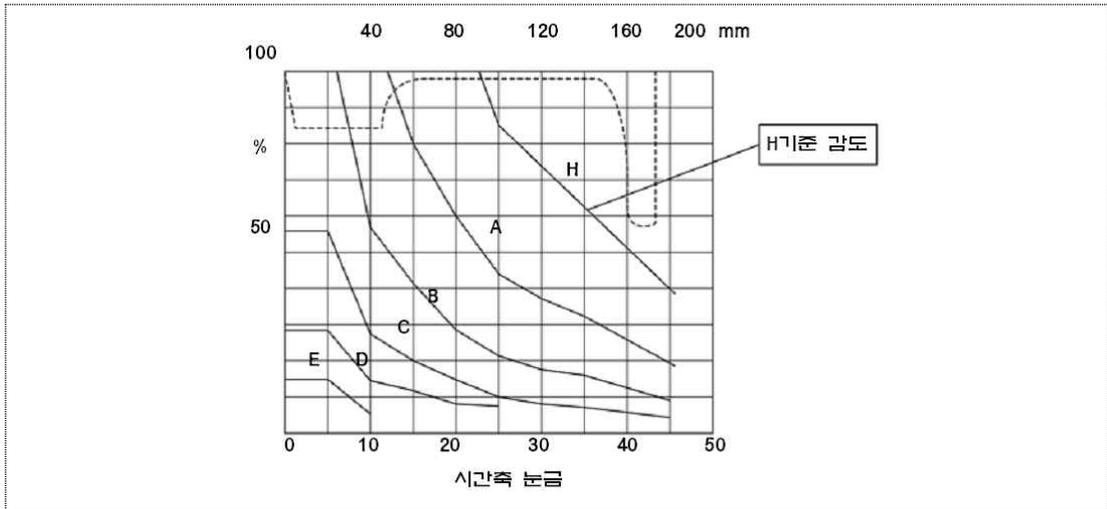


그림 4 거리진폭 특성곡선의 일례

4. 탐상방법

레일용접부의 초음파 탐상은 이(2)탐촉자법과 일(1)탐촉자법에 의한 사각탐상을 병행하여 용접부의 양측에 대하여 실시한다.

4.1 이탐촉자법에 의한 탐상

(1) 탐상의 범위

탐상면은 두부 및 저부 양측면으로 하고, 탐상의 범위는 용접부 양측 0.5 skip내로 한다.

(2) 탐촉자의 주사

송신용 탐촉자로부터의 초음파 빔 중심이 직사이며, 용접부의 전체를 덮듯이 다소의 목돌림 및 좌우주사를 병행하여 0~0.5 스킵(skip)거리의 범위를 레일길이 방향으로 주사한다. 이때, 수신용 탐촉자를 송신용 탐촉자의 이동과 역방향으로 이동시켜 송신파가 용접결합에서 반사되었을 경우에 수신되는 기하학적 위치에 항상 대응시킬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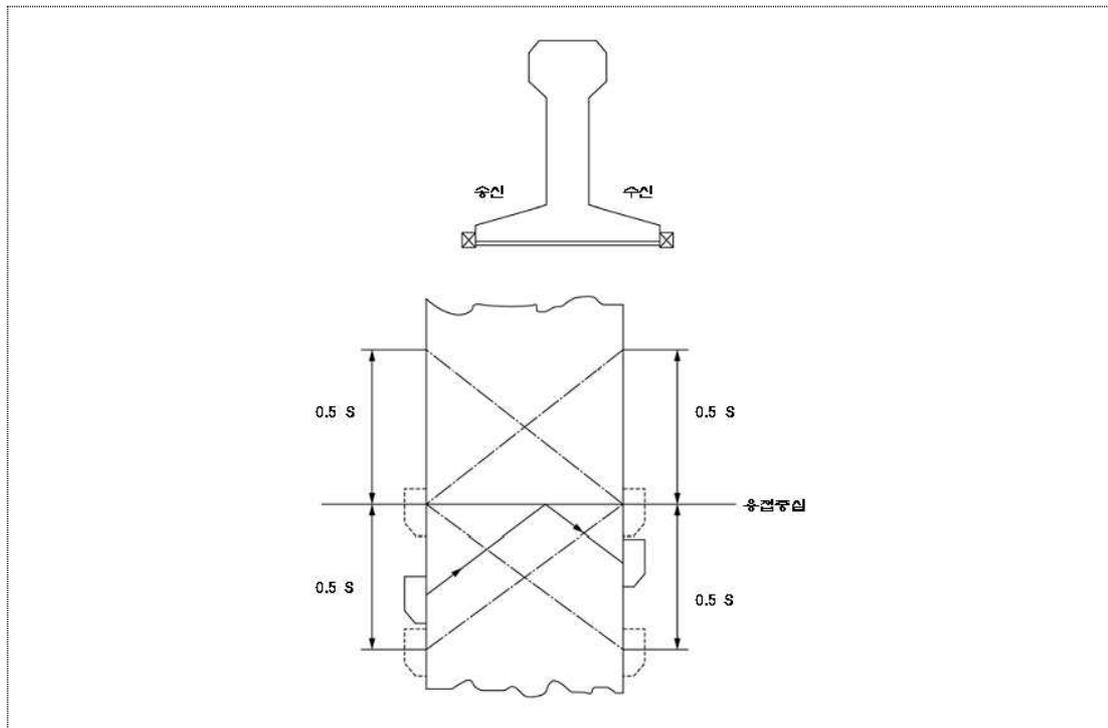


그림 5 이탐촉자법에 의한 용접저부의 탐상

- (3) 시간축의 확인
저부의 용접부를 사이에 두고 송신용 탐촉자와 수신용 탐촉자를 대칭시켜 구해진 투과 에코가 나타나는 위치가 60E1 레일의 경우에는 시간축 눈금이 16부근임을 확인한다.
- (4) 탐상감도의 설정
탐상의 기본강도는 두부를 탐상할 경우는 H2 기준감도, 저부를 탐상할 경우에는 B2 기준감도로 한다. 대비 시험편의 표준구멍(A1 및 A2)의 반사에코 높이가 80%가 되는 감도이다.
- (5) 결함 에코의 등급분류
결함에코는 최대 에코 높이를 기준으로 표 1과 같이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용접부의 양측 탐상으로 동일 결함으로부터의 에코를 구하여 그 결함등급이 다를 때는 하위의 급으로 한다.

표 1 이탐촉자법에 의한 결함의 등급분류

최대 에코 높이	등급
10% 초과 ~ 20% 이하	1
20% 초과 ~ 40% 이하	2
40% 초과 ~ 80% 이하	3
80% 초과	4

(6) 결함 위치의 측정

송수신용 탐상면에 대한 탐촉자와 용접부 중심의 거리 및 굴절각으로부터 결함과 탐상면의 수직거리 및 결함과 용접부 중심과의 거리를 구하여 결함의 위치를 정한다.

4.2 일탐촉자법에 의한 탐상

(1) 탐상의 범위

탐상면은 두부상면, 두부 양측면 및 저부 양측면으로 하고 용접부 양측의 0.5 스킵(skip) 거리에 60mm를 더한 범위로 한다.

(2) 탐촉자의 주사

탐촉자의 주사는 초음파 빔이 직사이며, 전 용접부를 덮도록 다소의 목돌림 및 좌우주사를 병행한 전후주사를 한다.

(3) 시간축의 확인

측정 범위 및 원점의 위치가 거리 진폭 특성곡선 작성시와 같게 되도록 대비 시험편의 결함 수직거리 20mm 및 140mm의 표준구멍을 사용하여 시간축을 확인한다.

(4) 탐상감도의 설정

탐상의 기본감도는 H기준 감도로 한다. 대비 시험편 표준구멍의 에코높이가 거리진폭특성 곡선의 H선에 맞는지를 확인한다.

(5) 탐상감도의 변경

(4)에서 설정한 기본감도로 탐상하고 검출된 결함 에코높이가 100%를 넘을 경우는 100% 이하가 될 때까지 탐상감도를 6dB 스텝으로 내린다. 기본 감도보다 6dB 내렸을 때의 탐상 감도를 A감도, 12dB 내렸을 때의 탐상감도를 B감도, 18dB 내렸을 때의 탐상감도를 C감도라 한다. A감도에 대한 특성곡선은 A선, B감도에 대한 특성곡선은 B선, C감도에 대한 특성곡선은 C선이다.

(6) 결함 에코 높이의 영역구분

탐상감도와 대응하는 특성곡선보다도 18dB 낮은 곡선을 넘고, 12dB 낮은 곡선 이하의 범위를 영역 I, 6dB 낮은 곡선 이하에서 영역 I 을 넘는 범위를 영역 II, 탐상감도곡선에서 영역 II 를 넘는 범위를 영역 III, 영역 III(탐상감도의 곡선)을 넘는 범위를 영역 IV로 한다. 기본감도(H 기준감도)로 탐상하였을 경우 및 B감도로 탐상하였을 경우의 영역구분을 그림 6(a),(b)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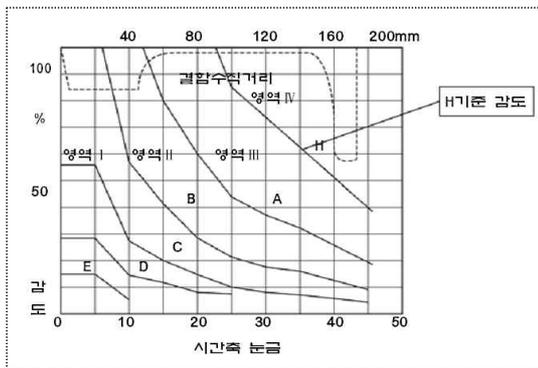


그림 6(a) H기준 감도에 대한 영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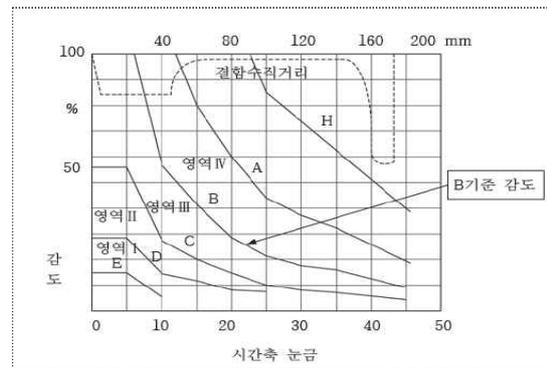


그림 6(b) B기준 감도에 대한 영역구분

(7) 결합에코의 등급분류

결합에코는 최대 에코 높이의 출현 영역에 따라 표 2와 같이 4등급으로 분류한다. 두 방향 이상에서 탐상하였을 경우에 동일 결합 에코의 등급이 다를 때는 하위의 급을 적용한다.

표 2 일탐촉자법에 의한 결합의 등급분류

최대 에코 높이 출현 영역	등급
영역 I	1
영역 II	2
영역 III	3
영역 IV	4

(8) 결합 위치의 측정

시간축상에서 에코의 위치, 탐촉자와 용접부 중심의 거리(입사점에서 용접중심까지의 거리) 및 굴절각으로부터 결합과 탐상면의 수직거리 및 결합과 용접부 중심의 거리를 구하여 결합의 위치를 정한다.

5. 탐상기록

검사를 한 후에는, 별지 1의 양식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한다.

- (1) 공사건명 및 검사건명
- (2) 탐상검사 시행개소명
- (3) 탐상검사 년월일
- (4) 탐상검사 기술자명
- (5) 탐상기형식 및 번호(또는 관리번호)
- (6) 탐촉자의 성능(굴절각, 입사점, H, H2, B2 기준감도)
- (7) 용접부 번호 또는 기호
- (8) 레일의 종류
- (9) 용접의 종류
- (10) 결합의 위치
- (11) 결합의 크기(결합 에코 높이, 결합 등급, 탐상감도)

▷▷▶ 별지 1 탐상기록 관련

초 음 파 탐 상 검 사 기 록 표

공사명	검사년월일	레일종별	용접종류	검사회사/검사자

선명	구간	위치	탐상기명

용접번호	영역	개소	종별	감도	최대에코높이	에코탐상위치	결함등급
	A 영역	두부	1탐				
			2탐				
		저부	1탐				
			2탐				
B 영역	복부	1탐					
용접번호	영역	개소	종별	감도	최대에코높이	에코탐상위치	결함등급
	A 영역	두부	1탐				
			2탐				
		저부	1탐				
			2탐				
B 영역	복부	1탐					
용접번호	영역	개소	종별	감도	최대에코높이	에코탐상위치	결함등급
	A 영역	두부	1탐				
			2탐				
		저부	1탐				
			2탐				
B 영역	복부	1탐					
용접번호	영역	개소	종별	감도	최대에코높이	에코탐상위치	결함등급
	A 영역	두부	1탐				
			2탐				
		저부	1탐				
			2탐				
B 영역	복부	1탐					
용접번호	영역	개소	종별	감도	최대에코높이	에코탐상위치	결함등급
	A 영역	두부	1탐				
			2탐				
		저부	1탐				
			2탐				
B 영역	복부	1탐					

▶ 【붙임 2】 (1. 레일용접공사 일반사항/ 1.3.4 용접부의 검사) 관련

침투탐상 검사방법

1. 침투탐상

침투탐상은 용지제거성염색 탐상법으로 시행한다. 그 외 탐상법(초음파 탐상, 자분탐상)과 병용하는 경우 침투탐상을 용접 시공 후 최초로 시행한다.

1.1 탐상제 및 부속품

1.1.1 침투액

침투성이 좋고 남은 침투액 등의 제거가 용이하며, 높은 대조를 나타내는 농도 짙은 적색의 착색도료를 함유하고, 상온에서는 휘발 및 인화가 어려운 에어졸식의 침투제를 사용한다.

1.1.2 세정액

세정성이 좋고 남은 침투액 등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으며, 중성으로 부식성이 없고 휘발성이 빠른 에어졸식의 세정제를 사용한다.

1.1.3 현상액

침투액의 흡출능력이 강한 백색현탁액으로 휘발이 빠르고 결합지시가 선명한 현상도막 형성이 용이하며, 동시에 제거가 용이한 에어졸식의 현상제를 사용한다.

1.1.4 기타기구

탐상장소나 환경에 대응하여 보온기, 조명기구, 표면온도계, 타이머 및 결합 지시모양 촬영기 등의 기구를 준비한다.

1.2 탐상준비

1.2.1 결합부의 손질

용접부 전 둘레의 여성이 매끄럽게 연마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혹시 용접부 표면에 탐상결과의 지장을 줄 층이 잔존하는 경우는 그 부분을 매끄럽게 마무리한다.

1.2.2 적용 탐상면

탐상면은 용접부 전 둘레에 용접부의 양측에 30mm를 더한 범위로 한다. 이 범위에 대해서는 탐상에 장애가 되는 기름 등 부착물을 충분히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여 놓는다.

1.3 탐상방법

1.3.1 침투처리

에어졸캔으로부터 탐상면에 침투액을 뿜어 붙인 다음 침투액을 결합부내에 충분히 배어들게 하도록 10분이상 침투시간을 확보한다.

1.3.2 제거처리

표면에 부착된 남은 침투액을 마른걸레로 닦는다. 세정액을 직접 탐상면에 뿜어 붙여 제거하

면 안 된다.

1.3.3 현상처리

사용하기 직전에 에어졸캔을 충분히 흔들어서 현상분말을 균일하게 분산시킨다. 이때 캔의 교반용 Ball이 올리는 것을 확인한다. 현상액은 탐상면에 얇고 균일하게 뿜어 붙여, 단시간에 용제가 휘발하여 백색의 현상막을 형성하는 상태가 좋다.

1.3.4 결함지시 모양의 관찰

- (1) 현상액의 작용 후 현상분말이 결함내부의 침투액을 빨아들여 백색의 현상막에 나타나는 적색의 결함지시 모양의 유무를 관찰한다.
- (2) 결함 지시모양과 유사한 모양의 판별이 곤란한 경우는 전처리부터 다시 하든지 다른 비파괴 검사법으로 확인하다.

1.3.5 후처리

- (1) 탐상 종료 후 탐상면의 현상분말을 제거한다.
- (2) 탐상 종료 후 현상액의 에어졸캔을 거꾸로 세워(노즐의 위치를 밑으로 하여) 분사제 만큼을 분사시켜 노즐의 구멍에 남아있는 현상분말을 제거한다.

1.4 탐상기록

검사시행 후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 (1) 공사건명 또는 검사건명
- (2) 탐상검사 시행 개소명
- (3) 탐상검사 시행 년, 월, 일
- (4) 탐상검사 기술자명
- (5) 탐상제의 종류
- (6) 용접부 번호 또는 기호
- (7) 레일종류
- (8) 용접종류
- (9) 결함길이
- (10) 결함지시 모양의 형태

제 4 장 운행선 공사

1. 운행선 공사

제 4 장 운행선 공사

1. 운행선 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운행선(운행선 근접공사 포함)에서 시공하는 궤도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한국철도공사)

1.1.3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1.2 재료

내용 없음.

1.3 시공

1.3.1 시공일반

(1) 운행선 상의 작업은 【붙임 1】 운행선 작업 절차를 참고한다.

- ① 열차 운행선 변경, 차단공사 시행 시 각 단계별 점검사항 및 안전대책을 점검 또는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시작 전의 준비작업

① 작업계획 수립

가. 현장대리인은 당일 작업계획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작업착수 전에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하며 기록 유지한다.

다. 작업계획서에 작업구간, 작업종별, 작업방법, 인원, 장비, 작업소요일수를 포함한다.

(【별지】 제1, 2호 서식)

(가) 작업내용을 고려한 작업조 편성, 장비동원계획, 공종별 소요시간

(나) 이례상황 발생시 조치 및 지원체계

라. 안전조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마. 투입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 등을 점검한다.

바. 모든 작업은 작업표준에 따라 적정작업량 계획을 수립한다.

사. 작업시간의 승인여부를 확인(운영기관)한다.

아. 타 분야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작업 또는 타 분야 시설물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관련 시

공계획 확인한다.

② 작업 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 가. 당일 작업할 내용, 차단작업시간, 최초운행 열차 시각 등을 작업원에게 설명한다.
- 나. 작업방법 및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 다. 열차운행 구간에서의 작업 시 ‘안전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를 인식시켜야 한다.
- 라. 운전협 의사항, 임시열차시각 등의 운전정보를 주지시킨다.
- 마.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를 지정한다.(연락방법, 통신수단)
- 바. 안전 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안전조끼 등의 착용상태 확인한다.
- 사. 열차감시원 배치 및 대피요령 사전교육을 한다.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시에는 신체를 접촉하면서 열차 접근을 알리도록 교육함)

아. 작업출동 전에 작업원의 음주여부 등 복무상태를 점검하고 나서 작업에 투입한다.

③ 작업현장 준비, 안전조치 실태 확인

- 가. 작업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배치여부를 확인한다.
- 나. 열차감시자, 안전요원 배치여부를 확인한다.
- 다. 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 취급 시에 건널목 임시 안내원 배치여부와 차량통제 상태를 확인한다.
- 라. 무전기, 호루라기, 손전등(적색등), 확성기(사이렌), 수신기(등) 등의 휴대상태를 확인한다.
- 마. 단선조치 후에는 작업양단에 접지결이 설치 상태여부를 확인한다.
- 바. 보호시설 설치상태(안전망, 안전펜스 등)를 확인하며, 특히 열차와 충돌할 수 있는 위험 지역에는 선로를 따라 작업자가 안전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 사. 공사알림판, 작업표, 서행표시기 등의 안전표지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 아. 백호우, 모닥불 등으로 인하여 선로변의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자. 운행선로에 접근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안전울타리를 설치한다.

④ 운전협의 철저 시행

- 가. 작업통고서를 역장에게 제출한다.
- 나. 운전, 급전사령 등 관련 사령과 사전협의 및 모든 작업 전에 운전정보를 수시로 인접역과 상호 연락토록 연락체계를 확립한다.
- 다. 특수한 사항 발생 시의 연락방법, 통신수단 등 상호 통고 등을 한다.
- 라. 주요 내용은 상호 간에 기록을 유지한다.

(3)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①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위험이 있는 장소

- 가. 지시 위반자에게는 경고장 발부 등 제재조치를 한다.
- 나. 위반 내용을 기록, 본인에게 통보하며, 동일 공사에 경고장 3회 이상 받을 시는 작업참여를 배제한다.

② 작업진척 상황 수시 정보교환

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 후에 인접역장, 관계사무소, 사령과 수시로 정보를 교환한다.

나. 작업시간 지연이 예상될 때는 관계 부서에 신속히 연락하고 공정을 단축한다.

다.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역장, 관계 사령에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의뢰한다.

(4) 공사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확인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공사관리관 합동점검 시행

가. 선로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나. 임시로 조치한 설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건축한계 지장 여부를 확인한다.

라. 장비, 자재,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 불안전 요인을 발견하였을 때는 열차서행과 운행정지 등의 열차방호조치를 한다.

② 최초열차 운행 시의 이상여부 확인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공사관리관 합동 체크

나. 작업한 선로시설물의 궤도틀림 및 변위 발생여부 조치

다. 기타 열차운행 중 이상 여부

라. 이상 발견 시에 신속히 운행 중인 기관사에게 무전통보 및 역장에게 열차운행 중지 등의 안전조치 의뢰

③ 당일 작업내용 등 인계·인수 철저 이행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입회자 교대 시는 상호 인계·인수의 상세 이행을 확인한다.

나. 작업내용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다. 작업과정의 문제점, 애로사항을 확인한다.

라. 특히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 부득이 임시조치를 한 시설물 여부를 확인한다.

바. 주요 인계·인수내용 건설사업관리,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유지한다.

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이행을 철저히 한다.

(5) 공사시행 도중 특수사항(이례상황) 발생 시 조치할 사항

① 특수상황 발생 시는 그 내용을 인접역장, 철도지역본부, 철도교통 관제센터 및 본사 관제사(전기, 운전, 시설)에 신속하고 상세히 보고

가. 통화 쌍방 간 통보시각, 내용, 직위, 성명을 기록 유지한다.

나. 통화 시는 상호 복창하여 의사전달 정확여부를 확인한다.

②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이행

가. 열차운행 임시중지 또는 임시서행을 철저히 한다.

나. 열차감시자 배치, 서행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③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 장비 등의 지원요구 필요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조치를 철저히 한다.

④ 기타 필요 사항 발생 시는 안전 위주의 조치를 철저히 한다.

(6) 공사시행 후 일정기간 특별관리

- ① 열차운행 중이나 야간에 점검확인 시는 선로시설물의 궤도틀림 및 변위발생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 ② 시설물 순회점검 시는 공사시행 구간을 중점 확인한다.
- ③ 이상 감지 시는 신속히 통보하고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서행 등 임시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7) 선로보수 작업

- ①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② 작업 전에 안전교육과 위험예지훈련을 한다.
- ③ 열차감시원을 배치하거나 열차접근경보기를 설치한다.
- ④ 작업 전에 대피위치를 선정하고, 반대 선로의 대피를 금한다.
- ⑤ 적절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작업을 피한다.
- ⑥ 열차 접근 시는 모든 공기구, 장비, 재료를 반드시 건축한계 외방으로 치워야 한다.
- ⑦ 당일 작업 결과의 이상 유무를 재확인한다.
- ⑧ 승인과 협의 없이는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는 작업을 금한다.
- ⑨ 교량에서는 대피지연 및 신체의 불균형으로 인한 추락에 주의한다.
- ⑩ 해머, 잭(jack), 천공기, 고속절단기 등의 공기구 사용 시는 타격물체의 반발과 떨어짐 및 회전날 등에 주의한다.
- ⑪ 잭(jack)은 궤간 외측에 설치한다.
- ⑫ 궤도재료의 운반배열, 작업개소 유간정정, 작업개소 표시, 레일체결장치 등은 준비 작업으로 시행하고 레일 체결장치 등 궤도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본 작업으로 시행한다.

(8) 재료 운반 작업

- ① 반드시 관계 역과 운전협의 후에 사용한다.
- ② 열차 운행이 임박한 시간대는 재료 운반차를 사용을 금한다.
- ③ 복선구간에서 사용 시는 열차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 ④ 재로운반 시 열차감시원을 2인 이상 배치한다.
- ⑤ 중량물이나 과도한 공기구를 적재 운행하지 않는다.
- ⑥ 열차접근 시는 여러 작업자가 협력하여 신속히 건축한계 외방으로 철거한다.
- ⑦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기면 어깨 쪽의 레일을 이용한다.
- ⑧ 재료 운반차 사용 중에는 잡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
- ⑨ 휴대무전기는 항상 휴대하여 개방하고 운전정보교환을 철저히 한다.
- ⑩ 철거한 운반구는 건축한계 외방에 정리정돈 한다.

(9) 선로 작업 중의 운반 및 하화작업

- ①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② 화차 위에 작업원을 승차시킨 채로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작업전 안전교육과 위험예지훈련 시행)
 - ④ 장비와 재료의 결박을 철저히 하고, 손상된 밧줄은 사용하면 안 된다.
 - ⑤ 적재 시에는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⑥ 장대레일 운반은 전용 트롤리를 사용한다.
 - ⑦ 분기기 통과 시는 탈선에 유의한다.
 - ⑧ 운반차에 대한 제동기능을 확인한다.
 - ⑨ 적재중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⑩ 궤도재료 운반시 인접선로에 재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⑪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불안정한 자세를 피하고, 한 물건을 2명 이상이 작업시 작업방법을 먼저 협의한다.
 - ⑫ 경사진 곳에서 작업시 먼저 췌기 등을 사용하여 동요, 이동, 낙하를 방지한다.
- (10) 야간 열차운행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 ① 작업 전에 위험요인을 사전 예측하여 시공사 안전원에게 지시하도록 하고 작업 중 안전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시정토록 하며 작업 종료 후 주간 점검 사항의 모든 요인을 확인 후 시정토록 한다.
 - ② 작업 방법 중 위험요인 발견 시는 시공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시공토록 협의한다.
 - ③ 작업 도중 급작스러운 단전에 대비하여 주변 전기 공급 체계를 숙지하고 해당 분소와 비상 연락체계를 강구하고 있어야 한다.
- (11) 열차감시원의 배치
- ① 열차감시원 지정 및 배치(겸직금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에 따르며, 관계기관(또는 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교육필증 지참)로 지정하고, 타 업무와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한다.)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한다.
 - ③ 열차감시원의 임무
 - 가. 작업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열차 안전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자신의 안전을 도모한다.
 - 나. 작업개소의 불안전 요인을 사전 점검·확인하여 제거하며 자체 처리가 불가능시 현장대리인에게 즉시 보고한다.
 - 다. 작업 완료 후 열차 운행에 이상이 없는지 선로지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 ④ 열차감시원의 근무 요령
 - 가. 열차감시원은 근무 시에 소정의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방호용품을 휴대한다.
 - (가) 안전 복장: 안전모, 안전조끼(야간은 야광띠), 안전화, 열차감시원 완장 등을 단정히 착용한다.

- (나) 방호용품: 신호기(주간 : 백·적색기, 야간 : 백·적색등 각 1조씩), 무전기(한국철도공사 교신가능 한 것), 뇌관(2개), 염관(1개), 단락동선(1조), 메가폰 및 호각을 지참한다.
- (다) 열차시각표, 방호 요령서 등을 지참한다.
- 나. 작업 장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불안전 요인과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시정하며, 대피 위치를 파악하여 유사시 대비 등 작업 전에 긴밀한 약속 체제를 이루어 안전한 감시 임무 태세를 확립(작업자, 장비운전자 간)한다.
- 다. 휴식과 숙면 등으로 감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건강관리 하며 근무시 잡념과 잡담 등을 일체 금지한다.
- 라. 공사감독자와 현장 대리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절대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음주행위 등을 절대 엄금한다.
- 마. 감시 위치는 열차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자(장비포함)와의 의사소통이 용이한 개소를 선택하여 근무에 임한다.
- 바. 역과 수시로 연락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부정기 열차운행에 유의한다.
- 사. 열차진입 감시 시는 메가폰 등을 이용하여 전 작업원이 감지할 수 있도록 알려져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현장 확인 후에 이상이 없을 시는 열차 통과에 이상이 없음을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지하구간 및 터널 등에서의 주간작업 포함)에는 백색등으로 현시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열차 통과에 이상이 있음을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지하구간 및 터널 등에서의 주간작업 포함)에는 적색등으로 현시하여 기관사가 확인할 수 있게 통보한다(수신호 취급 요령 참조).
- 아. 작업원(장비)이 불안전한 행동과 선로 무단횡단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수시로 관찰하여 이를 미리 방지한다.
- 자. 무의식적으로 선로에 근접하여 작업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제지하고 부득이한 선로 근접 작업 시는 특별한 감시 체제를 기하여 열차와 작업원(장비) 안전에 철저히 한다.
- 차. 작업현장에 설치된 안전설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관리 한다.
- 카. 작업 종료 시 열차에 지장이 없는지 선로 상태를 점검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현장을 철수한다.

(12) 시공품질관리자 배치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에서 정한 철도운행 관리자를 배치한다.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 담당자) 배치

-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동 시행령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및 업무범위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제2항([별표5]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에 따른다.(【별지】 제3호 서식)

-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착수 1시간전(단, 장비사용 차단작업의 경우는 3시간 전)에 역장과 협의하고 철도운행안전협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단, 상례작업인 경우 작업 착수 전으로 한다.
-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한 곳의 작업 장소에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 안에서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공사감독자는 실제적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 복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투입에 따른 비용은 열차운행선지장작업을 위한 “선로작업계획서”의 승인된 투입인원을 근거로 하여 정산한다.
- 마.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와 겹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열차감시원을 제외한 총 작업인원이 3명 이하인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한국철도공사 직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 직원이 직접 시행하는 유지보수작업
 - (나)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위탁(6개월 이상)으로 용역업체가 시행하는 유지보수작업

②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당구간 작업현장에서 동 시행령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 제12조(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자격 및 업무범위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제2항([별표5]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 제9조(자격요건)에 따른다.(【별지】 제3호 서식)
- 다. 전기철도안전관리자 투입에 따른 비용은 열차운행선지장작업을 위한 “선로작업계획서”의 승인된 투입인원을 근거로 하여 정산한다.
- 라.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와 작업자, 건설기계 등이 전차선로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유지보수작업은 전기분야 직원이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차선로 유지보수작업은 작업책임자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한다)

(13) 관계자별 주요 역할

선로작업 등의 시행과 공사 중 사용개시 및 철도종합시험운행을 할 때 운영측 이외의 해당 관계자별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 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별표 5]를 참고한다.

표 1.3-1 관계자별 주요 역할

제4장 운행선 공사

구 분	주요 역할
<p>작업책임자</p>	<p>가. 작업현장 상주, 작업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총괄 나. 작업계획 수립 또는 작업계획 확인 다. 관계부서와 작업계획 협의 라.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 조정 및 보완 마. 작업 전 작업원 안전교육, 적합성 검사,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사항 이행 또는 확인(작업시행 전 점검표 기록) 바. 작업원 운행선 진출입 통제 및 작업원과 동행하여 작업구간 진입 사. 작업 중 안전관리 수행(특히, 전차선로 근접 및 건설기계 동원작업) 아. 작업 지연 예상 시 작업연장 승인요청 자. 작업완료시 작업현장 및 철도시설 확인 후 작업 완료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통보 차.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40조 제3항에 따른 최초열차 통과 확인 카.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p>
<p>철도운행안전관리자 (운행안전협의담당자)</p>	<p>가. 운전명령, 선로작업계획의 사전 확인 나. 역장 등 운전취급자와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다.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에 따른 작업일정 및 계획 조정 협의 라.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작업책임자와 작업원에게 통보 마. 작업 전 작업원 안전교육, 적합성 검사,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의 시행 여부 확인 및 작업 전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적정성 점검(작업시행 전 점검표 기록) 바. 작업시행승인 사항을 작업책임자와 작업원에게 통보 사. 작업원 운행선 진출입 통제 및 작업원과 동행하여 작업구간 진입 아. 철도운행안전협의결과 변동사항 발생 시 재협의 자. 운전취급자와 연락체계 유지</p>
<p>전기철도안전관리자</p>	<p>가. 전기관제사와 전차선로 급·단전 협의 나. (단전 시)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다.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라. 전차선로 급전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 11조에 따른 안전관리</p>
<p>철도안전전문기술자</p>	<p>가.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시공 안전점검 업무나 레일용접 등의 업무</p>
<p>장비운전원</p>	<p>가. 장비 기능 확인과 장비 운전시행 나. 적재중량 및 견인중량 적정 여부 확인 다. 다른 차량을 연결하고 운전 할 때 연결상태 및 제동기능 확인 라. 장비내 휴대품 및 적재품 결박상태 확인 마. 운전시행전달사항 및 작업책임자가 지시한 주의사항 숙지</p>

※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작업장 단위로 상주시키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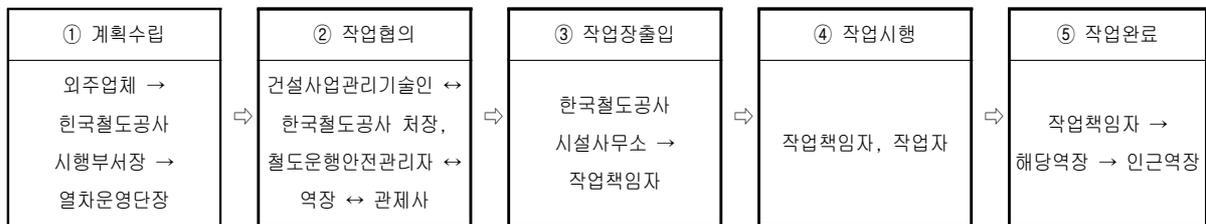
▶ 【붙임 1】 (1. 운행선 공사/ 1.3.1 시공일반/ (1) 운행선 작업 절차) 관련

운행선 작업 절차

□ (작업절차)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공사) 에 따라 작업 시행

- ① (계획수립) 작업을 시행하는 철도공사의 담당부서가 열차운영부서와 작업시간, 열차 조정 등을 협의하여 선로작업계획을 수립
- ② (작업시행협의) 공사감독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공사 착공 前에 한국철도공사 영업부서와 시공계획에 대해 선로작업을 협의하고,
 - 당일 작업 前에는 철도운영안전관리자가 인근 역장에게 작업 승인을 요청하면, 역장이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철도운영안전관리자에게 통보
 - * 고속철도는 철도운영안전관리자가 역장을 통하지 않고 관제사에게 직접 작업승인을 요청
- ③ (작업장출입) 한국철도공사 지역사무소에서 시공업체의 작업책임자에게 선로변에 설치된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면,
 - 작업책임자는 작업자를 인솔하여 당일 작업 협의 시 승인받은 작업개시 시간 이후에 해당 작업장으로 진입
- ④ (작업시행)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은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前 당일 작업내용, 작업자 안전수칙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 지정된 장소에 열차감시원 배치, 작업표지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 후 승인된 시간동안 작업을 실시
- ⑤ (작업완료) 공사감독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작업장에서 철수한 후 인근 역장에게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통보

<열차 운행선 작업 절차>



▶ 【별지】 제1호 서식 (1. 운행선 공사/ 1.3.1 (2) 공사시작 전의 준비작업) 관련

선로작업 계획서 (제28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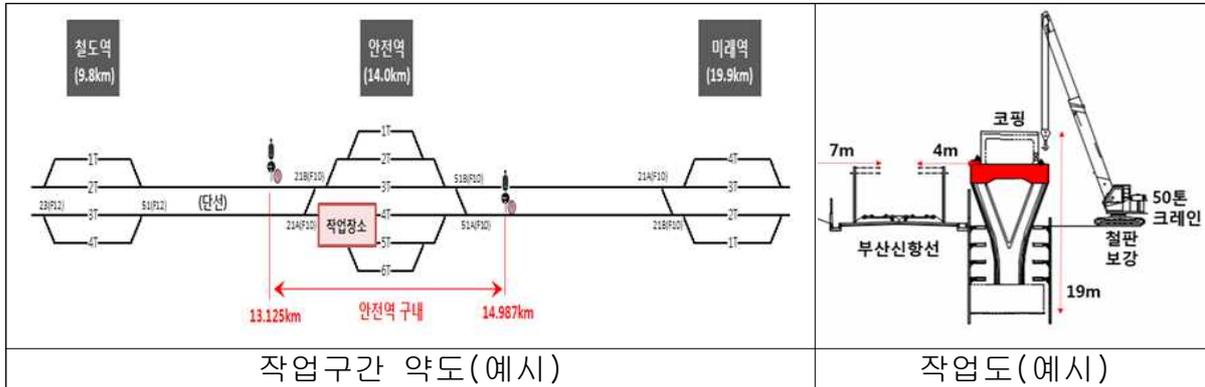
00본부 00처 000(☎900-0000)

1. 사업개요 (이하 쿨림체 12p)

- 가. 사업명 :
- 나. 사업내용 :

2. 작업계획 일반

- 가. 작업명 :
- 나. 작업내용 :



다.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내역 등(별도 '운전제한요소 작성시트' 로 대체 가능)

운전제한요소	선별	기간	구분	시간 시종	역간 구간	지점 시종	선로	사유 및 시행사항
선로일시사용중지								
각 열차 사이 차단								
전차선단전								
열차서행운전								

운전제한요소	일시	사유	사용중지대상
신호보안장치사용중지			
각열사이신호보안중지			
경보장치일시사용중지			

운전제한요소	일시	구간	사유	시행사항
CTC취급중지				

라. 운전취급변경사항

- 1) 폐색변경사항(폐색합병, 통신식, 지도통신식 등)
- 2) 임시운전취급자 배치, 수신호 취급 계획
- 3) 수신호(등) 취급 계획, 분기기 키볼트 쇄정계획 및 관리방안
- 4) 작업시간 확보를 위한 열차운행조정 요청사항 등

3. 작업관계자(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로 작성)

가. 시행부서장: 00본부장(00처장 홍길동)

나. 작업책임자(감리원 우선, 필요 시 복수로 지정)

1) 총괄작업책임자(한, 합동작업 또는 병행작업)

2) 분야별 작업책임자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운행안전협의담당자)

라.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마. 시공사

바. 열차감시원

사. 기타 필요인원(건널목임시관리원, 임시운전취급자, CTC 작업인원 등)

4. 세부 작업계획

가. 사전 합동점검 계획(한, 변경차단작업)

나. 작업 세부작업계획(선로, 전차선, 신호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기 간	시 간	구 간	세부작업내용	동원 장비

다. 시설물검증시험 및 사용개시(한, 변경차단작업 / 선로, 전차선, 신호 등 분야별로 작성)

시험일시	
대상	
시험내용	
시행자	
입회자	
사용개시 일시	

라. 시운전 계획(필요시,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작성)

5. 동원장비(건설기계 안전관리 대책 포함)

6. 안전성 검증 결과 (한, 公社 작업)

- 가. 검증 결과 문서
- 나. 검증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
 - 1) 권고사항(요약)
 - 2) 조치결과(요약)

7. 안전조치사항

- 가.
- 나.

※ 선로작업계획협의서 2페이지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사항 중 해당하는 내용의 조치내역(계획)을 작성하고 작업 유형에 맞는 안전조치사항을 작성

8. 첨부 서류

가. 운전제한요소 시트(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내역)

명령구분	시행 기간	구분	시행 시간	익일 여부	관계선	시행구간	시행 지점	열차 번호	선로 구분	단전 구간	사유	시행 사항	시행 부서

※ 운전명령 전산시스템(XROIS)에 등록되는 운전제한요소 엑셀시트로 작성(별도 제공되는 작성법 준수)

나. 선로작업계획 협의서(별지 제2호서식)

다. 제47조에 따른 철도차량운행시설물 공사 중 사용개시 자료(한, 변경차단작업)

선로	전차선로	신호보안장치
1. 선로의 위치 및 전경 사진	1. 전차선로의 위치	1. 신호보안장치 위치
2. 사용개시 거리	2. 사용개시 거리 및 시·종점	2. 폐색 및 신호현시 방식
3. 선로일람약도	3. 절연구분장치 위치	3. 상치신호기 명칭 및 진로
4. 선형약도(곡선, 구배 등)	4. 전차선로 급전계통도	4. 입환신호기(표지) 명칭 및 진로
5. 배선약도(구내인 경우)	5. 전차선로 평면도	5. 상치신호기 장치표
6. 분기기 철차 및 정·반위	6. 전차선로 제표류	6. 관구도(ATS 지상자 포함)
7. 유효장 및 환산량수	7. 각종 속도제한 등	7. ATP 플랜도
8. 각종 속도제한 등		8. 연동도표 배선약도

※ 운행선 변경 작업은 작업시행부서와 유지관리소속간 협의된 (별지 서식 제1호의2서식)의 운행선 변경구간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별지】 제1호의 2 서식 (1. 운행선 공사/ 1.3.1 (2) 공사시작 전의 준비작업) 관련

운행선 변경작업 분야별 도면

(시행부서명)

※ 서식을 준용하여 작업유형에 맞게 작성(A4 가로서식)

운행선 변경구간 약도

시점부 사진		종점부 사진	
범 례	특 이 사 항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협 의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협의일시:	

선로 선형 약도(곡선, 구배)			
<p>- 곡선 및 구배 제한속도 표기 (현 운행선 선로제표와)</p>			
범 례		특 이 사 항	작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협 의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협의일시:

정거장 배선 약도			
<p>- 구내 모양변경 시 작성</p>			
범 례		특 이 사 항	작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협 의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협의일시:

전차선로 급전계통도									
변경전	- 급전계통 변경 시 작성								
변경후									
범례		특이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작성 자: 소속, 직위, 성명</td> <td style="padding: 2px;">(서명)</td> </tr> <tr> <td style="padding: 2px;">협 의 자: 소속, 직위, 성명</td> <td style="padding: 2px;">(서명)</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2px;">협의일시:</td> </tr> </table>	작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협 의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협의일시:	
작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협 의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협의일시:									

전차선로 작업약도									
- 평면도 또는 급전계통도 서식으로 작성 가능									
범례		특이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작성 자: 소속, 직위, 성명</td> <td style="padding: 2px;">(서명)</td> </tr> <tr> <td style="padding: 2px;">협 의 자: 소속, 직위, 성명</td> <td style="padding: 2px;">(서명)</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2px;">협의일시:</td> </tr> </table>	작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협 의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협의일시:	
작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협 의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협의일시:									

신호 관구도			
<p>- 정거장 모양변경 시 연동도표 배선도로 작성</p>			
범 례		특 이 사 항	작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협 의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협의일시:

상치신호기 장치표			
<p>- 별도 서식으로 작성 가능</p>			
범 례		특 이 사 항	작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협 의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협의일시:

▶ 【별지】 제2호 서식 (1. 운행선 공사/ 1.3.1 (2) 공사시작 전의 준비작업) 관련

선로작업계획 협의서 (제27조 관련)									
작업명									
작업구간	000선 000역~000역간 상선 (서기000.000km~000.000km)								
협의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협의장소							
협의 요청자 (작업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작업 종류	선로일시사용중지(), 전차선 단전(), 각 열차 사이 차단(), 신호보안장치 사용중지(), 열차서행운전(), 장비유치(), 운전취급변경(), 상례작업(), 기타()								
작업 개요 및 운전제한 요소	1. 작업개요 (세부작업계획서 참조) - (관련사업) - (작업사유) - (작업내용) - (특이사항)								
	2. 운전제한요소 (날짜별로 누락 없도록 작성, 정기열차 지장여부 확인)								
	명령구분	선별	기간	구분	시간 시종	역간 구간	지점 시종	선로	사유 및 시행사항
	선로일시사용중지								
	각 열차 사이 차단								
	전차선 단전								
열차서행운전									
명령구분	일시	사유 및 내용			사용중지대상				
신호보안장치 사용중지									
공사(工事)개소 외부 작업원 이동계획	1. (작업승인 前 작업원 대기 장소) 2. (출입통로 위치 및 이동경로 등) ※ 약도 별첨 가능								
운전취급 변경사항	통신식, 지도통신식, 폐색합병, 수신호(등) 취급, 키볼트 쇄정, 임시운전취급자 파견, 열차의 착발선 조정 등의 사항을 기록								
협의 시 첨부자료	1. (상례 및 보수차단작업) 작업세부계획서, 시공도면, 건설기계 동원 시 작업 반경 및 안전관리대책 자료(선로 및 전차선로와 이격거리 표기), 공사업체 작업원 이동방법 등 2. (주요 및 변경차단작업) 건설사업 개요, 최종 배선도 및 최종연동도표, 임시배선 및 연동도표 승인 문서, 현 단계 시공도면(현장사진, 배선약도 및 연동도표, 선로일람약도(선형도), 전차선로 급전계통도 및 평면도 등), 작업세부계획서, 공사업체 작업원 이동방법 등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사항 [점검자: 작업책임자 (서명)]					
점검 사항		근거 및 검토사항		점검결과 (적합/보완/미흡)	
작업책임자 지정(지정기준 확인) 및 배치 (작업계획서상의 작업책임자와 일치여부 확인)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7조, 제8조			
철도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 지정 및 배치		철도안전법 시행령 60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지정 및 배치(교육필증 확인 포함)		한국철도공사 전기기술단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제도			
열차감시원 지정 및 배치(겸직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감시원 휴대품 구비 및 근무요령 숙지여부 (열차진입 시 작업원 대피방법, 전호요령 등)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13조			
긴급상황 발생 시 열차 및 작업자 방호조치 숙지여부 (무선전화기 방호, 단락용 동선 설치, 서행수신호 현시방법 등)		운전취급규정 제5장 제2절 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 제43조			
작업구간(지장 선로, 차단구간, 키로징, 역간/역구내 확인) 및 전차선로 단전구간의 적정성		역간, 역구내의 구분 / 분기부 지장선로 확인철지			
굴착, 터파기 등의 작업 시 운행선 침하방지대책 구비여부 (계측관리, 선로보수요원 배치 등)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			
상계작업의 경우 건설기계 작업 반경 운행선 지장여부 (운행선 및 전차선로 지장여부, 작업 반경 관련 도면 포함)		지장될 경우 차단작업 또는 열차사이 차단작업시행			
건설기계 전도사고 예방 대책 구비 여부 (지반, 이동경로, 인양능력 등의 안전성검토)		철도안전법 제49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			
건설기계 및 장비 인양하중 및 인양능력 적정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			
건설기계 운전원 당해 작업 관련 운행선 안전교육 자료 및 시행계획 구비 여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건설기계별 운행선 및 전차선로 지장우려 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9, 40조, 200조			
건설기계 운전원과 안전요원(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과 신호체계 적정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작업 중 선로 및 전차선로 낙하물 방지대책 구비 여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전차선로 1m이내 근접작업: 전차선로 단전 후 시행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급전된 전차선로 근접작업 시 절연방호관 설치 필요 여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작업에 따라 사용중지 되는 신호설비 누락 없이 표기 여부 (신호설비 사용중지 시 운전취급방안 구비 여부)		참고: 선로전환기장금(규정75조) 신호기사용중지 조치(규정184조)			
매설물(지중 케이블 등) 및 지장 신호설비(ATS, ATP 지상자 등) 사전확인 여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6조			
지장 건물목 임시관리원 배치 여부 (배치인원, 근무요령 교육자료 구비 포함)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0조			
변경차단작업 시 시설물검증시험계획 사전협의 여부 (시험구간 및 대상, 방법 적정성)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28조, 제30조			
참석자 및 협의결과					
<p><주의> ①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재협의(협의서는 임의 변경 할 수 없음)</p> <p>② 협의소속은 해당 협의서를 작업종료 시 까지 보관하고 이후 폐기 조치할 것</p> <p>③ 역장은 정기열차저축 확인, 기술분야 협의자는 사용중지대상 철도시설을 확인할 것</p>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일시	서 명	의견 및 협의내용(필요시 작성)

▶ 【별지】 제4호 서식 (1. 운행선 공사/ 1.3.1 (11) 시공품질관리자 배치) 관련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

구분	자격 부여 범위
1. 특급	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특급기술자·특급기술인·특급감리원·수석감리사 또는 특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 취득자 2)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급	가. 관계법령에 따른 특급기술자·특급기술인·특급감리원·수석감리사 또는 특급공사기술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관계법령에 따른 고급기술자·고급기술인·고급감리원·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2)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급	가. 관계법령에 따른 고급기술자·고급기술인·고급감리원·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관계법령에 따른 중급기술자·중급기술인·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자 2)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급	가. 관계법령에 따른 중급기술자·중급기술인·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관계법령에 따른 초급기술자·초급기술인·초급감리원·감리사보 또는 초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자 2)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 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레일용접인정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별지】 제3호 서식 (1. 운행선 공사/ 1.3.1 (11) 시공품질관리자 배치) 관련

철도운행안전협약서 (제33조제2항 관련)										
운전명령 번호			협의일시: 20 년 월 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	직명	성명	(인)	()	예비()				
①	협이역장	소속	직명	성명	(인)	()	예비()			
	인접역장	소속	직명	성명	(인)	()	예비()			
	제어역장	소속	직명	성명	(인)	()	예비()			
② 작업 협의										
승인대상	명령구분	선별	기간	구분	시간시종	역간구간	지점 시종 (실제구간)	선로	사유 및 시행사항	
A	선로일시사용중지	경부선	10/26	당일	01:00 04:00	청도 상동	320.000 321.000	상선	0000 작업 / 상동역 1~3번선 포함	
B	각 열차 사이 차단	경부선	10/26	당일	01:00 04:00	청도 상동	320.000 321.000	하선	0000 작업 / 상동역 4~6번선 포함	
C	전차선 단전	경부선	10/26	당일	01:00 04:00			상하선	0000 작업 / 청도SP~밀양SS	
작업 시행										
③ 차단장비 운전					④ 작업시행					
순서	장비번호	장비명	출발역 (시각)	도착역 (시각)	승인대상	승인자 (승인번호)	시작시각 (실제)	완료시각 (실제)	단전/급전 실제시각	
1					A, C	김관제	01:00	04:00	01:00	
						51235호	01:03	03:55	04:00	
2					B, C	김관제	02:00	02:40	01:00	
						51236호	02:03	02:35	04:00	
3					B, C	김관제	03:00	03:50	01:00	
						51237호	03:05	03:40	04:00	
4										
⑤ 작업관계자					⑥ 운전취급 변경사항					
작업시행부서					<운전취급관계직원 교육(역장 시행)> - 일시: (), 인원: (명)					
총괄작업책임자		성명	()							
작업책임자		성명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성명	()							
		휴대무전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성명	()		⑦ 임시열차 운행계획					
건널목임시관리원		성명	()		열번	정거장 및 통과예정시각				
열차감시원		성명	()		()역 (:) ~ ()역 (:)					
열차감시원		성명	()		()역 (:) ~ ()역 (:)					
⑧ 작업시행승인 전 확인사항					⑨ 건설기계(장비)		⑩ 최초열차			
관제사	1. 사용중지대상 확인 ()		3. 교행금지역 확인 ()							
	2. 운전취급변경 확인 ()		4. 전차선로 단전시행 ()							
역장	1. 사용중지대상 확인 ()		6. 상례작업 관제통보 ()			안내사항				
	2. 지장열차 확인 ()		7. 건물목임시관리원배치 ()			1. 외부 공사업체 상례작업은 지역본부 내 관계 소속과 협의된 상례작업계획협의를 첨부하여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요청 2. 상례작업은 작업시행부서에서 시행기준을 확인하여 역장에게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요청(외부공사업체는 위험지역 상례작업 금지) 3. 작업시행부서는 작업시행점검표를 작성하여 기록유지해야함				
3. 인접역장 통보 ()		8. 운전취급변경 확인 ()								
4. 작업표찰 게시 ()		9. 수신호취급자 지정 ()								
5. 게사판 작업내용기록 ()		10. 수신호등 기능확인 ()								
비고										

부 록

1. 궤도자재 표준규격서
2. 궤도자재 제작·구매 시방서
붙임 1. 직결식 분기기 체결장치

부 록

1. 궤도자재 표준규격서 목록

1.1 일반사항

- (1) 이 규격서는 궤도공사에 필요한 궤도 자재의 제작·구매에 적용한다.
- (2) 궤도자재의 일반적인 자재관리 및 품질보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 제1장에 따르며, 품질보증기간은 이해 당사자간에 협의 및 계약내용에 따른다.
- (3) 수급인은 표준규격(KS, KRS, KRCS, KRSA) 제·개정 진행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 ①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1.4(표준규격서 목록)을 참조하고, 표준규격 최신본을 우선 적용한다.
 - ② 제·개정 진행 중인 자재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4) 철도운행 안전과 관련된 주요 철도용품은 철도안전법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 (5) 궤도재료가 변경될 경우 제작자는 시공자에게 변경된 제작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사 검토 후 공사감독자(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모든 자재는 각 제품이 도면의 허용치 이내라 하더라도 각 구성품을 조립·체결한 상태에서 제작도면에 명시한 허용한도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레일체결장치의 경우는 궤간의 틀림기준도 허용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1.2 적용순서

표준 규격서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규격서의 해당자재 최신본을 우선하되,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1) KS
- (2) KRS
- (3) KRCS
- (4) KRSA

1.3 용어 정의

궤도자재 표준규격서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제작도면’은 ‘승인도면’을 말한다.
- (2) ‘감독자’는 ‘제작검사자’를 말한다.
- (3) 발주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공사감독자(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당해 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포함한다.

1.4 표준규격서 목록

본 공사에 사용되는 궤도자재 목록 및 적용 규격서는 다음과 같다.

1.4.1 직결식 분기기 개량화 궤도자재

구분	품 명	규 격	참고 규격번호	비 고
1	레일	KR60, 50kgN (일반 및 열처리, L=25.0m)	KS R 9106 KRS TR 0001	
2	탄성분기기	50kgN F10 분기기 - 포인트부 60kg용(50kgN 단조용) - 리드부, 크로싱부 50kg용	KRCS 9801-06	
3	직결식 분기기 체결장치	KR60, 50kgN 직결식	-	붙임.2
4	레일체결장치	KR60, 50kgN e-클립용(코일스프링클립 등)	KRSA-1001-R4	
5	작업표	선로작업표, 공사알림판	KRCS A019-05	

※ 직결식 분기기 궤도구조개량 자재는 철도공사 규격서에 따른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한다.

1.4.2 관련규격 인용출처

- (1)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 한국산업표준(KS) ➔ <https://standard.go.kr/>
- (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한국철도표준규격(KRS) ➔ <https://krs.krri.re.kr/>
- (3) 국가철도공단 ☞ 공단표준규격서(KRSA) ➔ <http://www.kr.or.kr/>
- (4) 한국철도공사 ☞ 철도용품규격서(KRCS) ➔ <http://ebid.korail.com/>

1.4.3 자재규격서 적용시 유의사항

- (1) 위 자재 규격서 목록은 규격 관리기관의 제·개정 및 확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규격서 적용 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1.5 참고사항

1.5.1 철도용품 형식승인

- (1) 철도운영 안전과 관련된 주요 철도용품(보통레일, 접착식절연레일, PSC침목)은 형식승인을 받은 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제작자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용품을 제작하거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용품을 판매, 사용해서는 안된다.
- (2)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제작 및 생산되는 용품에 적용되며, 철도안전법 제77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의 검사 업무를 시행한다.

2. 궤도자재 제작·구매 시방서

붙임 1. 직결식 분기기 체결장치

붙임 1. 직결식 분기기 체결장치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목침목형 분기기의 직결식 레일체결장치 개량화 공사에 적용하는 직결식 레일체결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항 목	분 류	레일 종류	비 고
1.2.1	e-clip용	50kg, 60kg	
1.2.2	Q-clip용	60kg	

2. 적용자료 및 문서

- (1) KS
- (2) KRS
- (3) ISO
- (4) ASTM
- (5) 제조물 책임법
- (6) 산업재산권

특허명	특허 번호
철도레일 고정용 탄성클립 및 이의 설치방법	제10-1050490호
부시형 조절톱니와셔가 구비된 철도레일의 방진 체결장치 및 이를 이용한 탄성패드의 체결방법	제10-1774384호
철도레일용 절연블록	제30-0013743호
철도레일 체결볼트용 와셔	제30-0944715호
철도레일용 탄성클립	제30-0730272호

3. 필요조건

3.1 재료

레일체결장치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재료표에 의하되,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 사용하고 관련 시험성적서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3.1.1 상판(플레이트)

상판은 SPS-KFCA-D4302-5016(구상 흑연 주철품)의 GCD 400-15 또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은 다음 [표1], [표2]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 GCD 400-15 성분

화학 성분	C(%)	S(%)	Mg(%)
	2.5 이상	0.02 이하	0.09 이하
기계적 성질	인장강도(N/mm ²)	연신율(%)	경도(Hb)
	400 이상	15 이상	130 ~ 180

[표 2] SS275 성분

화학 성분	C(%)	Si(%)	Mn(%)	P(%)	S(%)
	0.25 이하	0.45 이하	1.40 이하	0.05 이하	0.05 이하
기계적 성질	항복강도 (N/mm ²)	인장강도 (N/mm ²)	연신율(%)	굽힘성	
	265 이상	410~550 이상		21 이상	굽힘각도
			180°		두께의 1.5배

3.1.2 레일패드

(1) e-clip용

EVA 또는 TPU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의 물리적 성질은 다음 [표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EVA 또는 TPU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방법
	EVA 재질	TPU 재질	
전기고유저항	10 ⁷ Ω · cm	10 ⁸ Ω · cm	ASTM D 257
경도	93 이상	90 이상	KS M ISO 48 KS M 3824

(2) Q-clip용

레일패드는 폴리우레탄(PU), EPDM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계적 성질은 다음 [표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 PU 또는 EPDM

시험항목	단위	기준치	시험규정	
정적탄성계수 (Cstat)	kN/mm	50~70	KRS TR 0014-18R 정적시험 (단품, K=18~51.2kN)	
동적탄성계수 (Cdyn)	%	정적탄성계수 250 미만	KRS TR 0014-18R 동적시험 (단품, K=18~51.2kN)	
인장 강도	노화 전	N/mm ²	1.5 이상	KS M 6518
	노화 후	%	90 이상 (노화 전) (70 ± 1℃ 96시간)	
영구압축 줄음율	%	15미만	KS M ISO 1856	
체적저항률	Ω · cm	10 ⁸ 이상	KS C 62631	

3.1.3 상판 탄성패드

탄성패드는 폴리우레탄(PU), EPDM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계적 성질은 다음 [표5]에 적합하여 한다.

[표 5]

시험항목	단위	기준치	시험규정	
정적탄성계수 (Cstat)	kN/mm	15~35	KRS TR14-15R 정적시험 (단품, K=18~51.2kN)	
동적탄성계수 (Cdyn)	%	정적탄성계수 250 미만	KRS TR14-15R 동적시험 (단품, K=18~51.2kN)	
인장 강도	노화 전	N/mm ²	1.5 이상	KS M 6518
	노화 후	%	90 이상 (노화 전) (70 ± 1℃ 96시간)	
영구압축 줄음율	%	15미만	KS M ISO 1856	
체적저항률	Ω · cm	10 ⁸ 이상	KS C 62631	

3.1.4 코일스프링클립

재료는 KS D 3701의 SPS 7 또는 SPS 9/9A와 동등 이상품으로 [표6]의 각종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계적 성질은 [표7]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6]

1. 스프링강재 KS D 3701 / SPS 7		
성분	탄소 (Carbon)	0.56 ~ 0.64 %
	실리콘 (Silicon)	1.80 ~ 2.20 %
	망간 (Manganese)	0.70 ~ 1.00 %
	황 (Sulphur)	0.030 % 이하
	인 (Phosphorus)	0.030 % 이하
2. 스프링강재 KS D 3701 / SPS 9		
성분	탄소 (Carbon)	0.52 ~ 0.60 %
	실리콘 (Silicon)	0.15 ~ 0.35 %
	망간 (Manganese)	0.65 ~ 0.95 %
	황 (Sulphur)	0.030 % 이하
	인 (Phosphorus)	0.030 % 이하
	크롬 (Chromium)	0.65 ~ 0.95 %
3. 스프링강재 KS D 3701 / SPS 9A		
성분	탄소 (Carbon)	0.56 ~ 0.64 %
	실리콘 (Silicon)	0.15 ~ 0.35 %
	망간 (Manganese)	0.70 ~ 1.00 %
	황 (Sulphur)	0.030 % 이하
	인 (Phosphorus)	0.030 % 이하
	크롬 (Chromium)	0.70 ~ 1.00 %
4. EN 10089에 명시된 56SiCr7 급의 실리콘 망간 압연 강 또는 AISI/SAE 9255 와 동등한 제품		
성분	탄소 (Carbon)	0.52 ~ 0.57 %
	실리콘 (Silicon)	1.70 ~ 2.10 %
	망간 (Manganese)	0.80 ~ 1.00 %
	황 (Sulphur)	0.035 % 이하
	인 (Phosphorus)	0.035 % 이하
5. AS 1444 / 9261B		
성분	탄소 (Carbon)	0.55 ~ 0.65 %
	실리콘 (Silicon)	1.80 ~ 2.20 %
	망간 (Manganese)	0.70 ~ 1.00 %
	황 (Sulphur)	0.05 % 이하
	인 (Phosphorus)	0.05 % 이하
	크롬 (Chromium)	0.10 ~ 0.25 %

[표 7] 기계적 성질

인장강도(N/mm ²)	연신율(%)	경도(HRC)	시험방법
1,226 이상	9 이상 (SPS 9/9A : 10 이상)	44 ~ 48	KS B 0801, 0802, 0806

3.1.5 절연블럭

절연블럭은 폴리아미드(PA) 6.6 + 유리섬유(GF) 30~33% 또는 폴리카톤(PK) + 유리섬유(GF) 30~33% 재질의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화학성분 및 기

계적 성질은 다음 [표8]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8]

구분	시험 항목	단위	기준치		시험 규정
소재	밀 도	g/cm ³	PA6.6	1.30 ~ 1.45	ASTM D 792
			PK	1.30 ~ 1.48	
	용융점	℃	PA6.6	250 ~ 270	ASTM D 789
			PK	215 ~ 225	
	체적고유저항	Ω · cm	함수율 0%, 최저 2×10 ¹²		ASTM D 257
제품	인장강도	N/mm ²	128 이상 (23℃)		KS M ISO 527-2
	연신율	%	3 이상 (건조상온)		
	경도	-	Shore Durometer D-type 80 이상		KS M ISO 868

3.1.6 절연패드

절연패드는 폴리아미드(PA) 6.6 또는 폴리케톤(PK)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계적 성질은 다음 [표9]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9]

시험항목	단위	기준치	시험방법
전기저항	Ω · cm	10 ¹⁰ 이상	ASTM D 257

3.1.6 매립전

재료는 폴리아미드(PA) 6 또는 폴리케톤(PK)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계적 성질은 다음 [표10]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

시험항목	단위	품질 기준		시험방법
밀 도	gf/cm ³	PA 6	1.10 ~ 1.15	KS M ISO 1183
		PK	1.12 ~ 1.25	
전기저항	Ω · cm	10 ⁸ 이상		ASTM D 257

3.1.6 기타재료

볼트, 너트, 스프링와셔, 좌우조절형 췌기와셔등의 기타 부속재료는 KRS, KRSA, KRCS규격에 적용된 품질 동등 이상품이어야 하며, 상세제작도면과 시방에 명시된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작검사자 또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품질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형태

형상, 치수 및 허용차는 도면에 의하고, 허용차가 없는 치수에 대해서는 KS 일반

공차에 의한다.

3.3 제조 및 가공

레일체결장치 제조에 소요되는 설비는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공정을 자동화하여 소정의 정밀도로 제작할 수 있어야 하며, 계측에 필요한 설비는 정확하게 교정하고, 제조공장에는 제조 후 완제품을 검사 및 시험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3.1 상판(플레이트)

- (1) 생산전 소재 검사를 실시한다.
- (2) 재질이 균일하고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한다.
- (3) 표면은 평활 하고 나사 스파이크 구멍은 정확하게 가공되어야 하고, 나사스파이크 조립시 지장을 주는 이물질은 제거되어야 한다.
- (4) 레일 좌면 및 침목 접촉부는 평활하여야 한다.
- (5) 절단 및 가공으로 인한 침목 접촉부 모서리의 날카로움은 사상 제거한다.

3.3.2 레일 탄성패드

- (1) 색상은 백색을 기본으로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강성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여 사용상 분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재료는 성형전에 잘 배합하여 소정의 금형으로 사출성형 하여야 한다.
- (3) 제품의 내부에는 기포가 없고 재질이 균일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 (4) 제품의 겉모양은 평활하여야 하고 유해한 흠, 균열, 공동 및 비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3.3.3 탄성 상판패드

- (1) 색상은 흰색을 기본색상으로 하되 변경가능하며, 재료는 성형전에 잘 배합하여 소정의 금형으로 사출 성형 또는 가동 하여야 한다.
- (2) 제품의 겉모양은 평활하여야 하고 유해한 흠, 공동,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3.4 코일스프링클립

- (1) 레일체결장치 제조에 소요되는 설비는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공정을 자동화하여 소정의 정밀도로 제작할 수 있어야 하며, 계측에 필요한 설비는 정확하게 교정하고, 제조공장에는 제조 후 완제품의 검사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원재료인 스프링강 환봉은 크레인이나 지게차 등으로 운반 시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습기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 (3) 압연된 소재는 표면크랙, 탈탄층 등 유해 깊이가 0.2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4) 압연된 소재는 자분탐상을 시행하여 결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탐상결과 유해한 흠이 없는 환봉을 필요한 길이로 절단하여 적정 온도로 가열 성형하여야 한다. 이때 표면에 탈탄층이 과도하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열처리가 끝난 이후 제품의 유해 깊이는 0.2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5) 환봉의 절단면과 코일스프링클립 걸이 또는 베이스플레이트에 삽입되는 절단면은 삽입이 용이하게 정확히 원이 되도록 모따기를 하여 끝 말림이 없어야 한다.
- (6) 성형이 끝나면 퀘칭 후 템퍼링을 하여야 한다.
- (7) 열처리를 할 때는 사용상 유해한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열처리가 끝나면 PC침묵용은 검정색, 목침묵용은 청색의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3.5 절연블럭

- (1) 배합된 재료는 사출성형 전에 충분히 건조하여야 하며, 소정의 금형으로 사출성형 하여야 한다.
- (2) 제품의 내부에는 기포가 없고 재질이 균일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 (3) 절연블럭의 색상은 사용상 분류가 용이하도록 8mm-미색 또는 갈색, 10mm-연청색, 12mm-녹색, 14mm-적색으로 한다.
- (4) 제품의 겉모양은 평활하여야 하고 유해한 흠, 균열, 공동 및 비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3.3.6 절연패드

- (1) 배합된 재료는 사출성형 전에 충분히 건조하여야 하며, 소정의 금형으로 사출성형 하여야 한다.
- (2) 제품의 내부에는 기포가 없고 재질이 균일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 (3) 제품의 겉모양은 평활하여야 하고 유해한 흠, 균열, 공동 및 비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3.3.7 매립전

- (1) 배합된 재료는 사출성형 전에 충분히 건조하여야 하며, 소정의 금형으로 사출

성형 하여야 한다.

- (2) 제품의 내부에는 기포가 없고 재질이 균일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 (3) 제품의 겉모양은 일정한 균일한 거칠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유해한 흠, 균열,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한다.

3.3.8 기타 재료

- (1) 기타의 재료는 사용상 해로운 흠, 굽음, 거스러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제조가 공하고, 금속의 경우 녹이나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4 성능 및 외관 등

레일체결장치는 상호 조합되어 성능을 발휘하는 구조적인 특성상 각 제품이 도면의 허용치 이내라 하더라도 제품이 레일에 체결된 상태와 동일한 조건대로 취부하여 그 틀림양이 궤도공사 마감기준의 허용한도 범위 이내 이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의 분류

- (1) 겉모양 검사
- (2) 치수 검사

4.1.2 겉모양 검사

각 제품의 표면은 매끈하고 그 질이 균질 하여야 하며 비틀림, 요철,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4.1.3 치수 검사

- (1) 각 제품의 치수, 각도, 경사도 등에 대하여 시행하되, 열간 성형 및 열처리로 인한 변형 등 외형치수 측정이 곤란한 부품은 소정의 표준블럭 게이지 또는 특수 측정 게이지로 측정하고, 레일좌면 경사각도 및 하중점의 높이는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한다.
- (2) 특히 정밀성을 요구하는 게이지는 개발사에서 제작된 것이나 개발사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2 시험

4.2.1 상판(플레이트)

- (1) 제품 10,000개(구상화 시험 20,000개) 또는 그 단수를 1로트로 하여 로트당 3개를 임의 추출, 이 규격에 의하여 시행하되, 소재의 시험은 소재 제조업체의 출고장(Mill sheet)을 확인하여, 이 규격에 적합할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규격에 부적합하거나 출고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2) 기계적 성질 시험은 KS B 0801(금속재료 인장시험편)의 4호 시험편으로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며, 화학성분 분석 시험 및 구상화 시험은 KS D 4302(구상 흑연 주철품)의 GCD 450-10 내용에 의하여 시행한다.

4.2.2 레일 탄성패드, 상판 탄성패드

- (1) 제품 50,000개 또는 그 단수를 1로트로 하여 로트당 3개를 임의 추출, 이 규격에 의하여 시행하되, 소재 시험은 제조업체의 출고장(Mill sheet)을 확인하여 이 규격에 적합할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규격에 부적합하거나 출고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2) 시험은 20~30 ℃의 실온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편은 적어도 2시간 이상 필요조건 실온 중에 보관하여야 한다.
- (3) 정적 및 동적 수직스프링계수 시험은 KRS TR 0014(레일체결장치)에 의하여야 한다.
- (4) 영구압축줄음률 시험은 KS M ISO 1856에 의하여 시행한다.
- (5) 전기고유저항 시험은 KS M 3015에 의하여 시행한다.

4.2.3 코일스프링 클립

- (1) 제품 50,000개 또는 그 단수를 1로트로 하여 로트당 3개를 임의 추출, 이 규격에 의하여 시행하되, 소재 시험은 제조회사의 출고장(Mill sheet)을 확인하여 이 규격에 적합할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규격에 부적합하거나 출고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피로 시험의 경우에는 제품 100,000개 또는 그 단수를 1로트로 하여 로트당 1개를 임의 추출하여 시행한다.

4.2.4 절연블럭, 절연패드, 매립전

제품 50,000개 또는 그 단수를 1로트로 하여 로트당 3개를 임의 추출, 이 규격

에 의하여 시행하되, 소재 시험은 제조업체의 출고장(Mill sheet)을 확인하여 이 규격에 적합할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규격에 부적합 하거나 출고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2.5 조립체 시험

레일체결장치의 조립체 성능 시험은 KRS TR0014 에 따라야 하며 B형식에 해당하는 모든 종목의 값이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품질보장

5.1 합격품질 수준

3.7.1.의 검사 및 3.7.2.의 시험결과 이 규격에 적합할 때 합격으로 하며, 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로트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불합격된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할 수 있으며 이때 시험 수량은 최초 시험 수량의 2배수로 한다.

5.2 품질 보증

제조업체는 자주적인 품질보증활동으로 직결식 레일체결장치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품질보증 조건에 따라야 한다. 이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장소에 납품 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6. 표시 및 포장

6.1 표시

6.1.1 제품

- (1) 상판, 탄성패드, 절연블럭의 윗 부분 잘 보이는 곳에는 레일중량별, 제작자명 또는 약호, 제작 년 월을 양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절연블럭에는 이 외에 아래의 예와 같이 두께별 호칭 치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예] 50-8 : 50N 레일용 두께 8mm

60-14 : KR60 레일용 두께 14mm

60E1-8 : 60E1 레일용 두께 8mm

- (2) 기타 제품

적정수량을 견고한 마대 또는 포장용 상자에 넣어 보관 및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하고,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여 마대 또는 포장용 상자에 넣어 투입구를 견고히 묶어야 한다.

6.2 포장

포장 상자 표면이 잘 보이는 적당한 곳에는 품명, 규격, 수량, 제작자명 또는 약호, 제작년월을 표시하고, 운반이나 취급상의 주의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6.2.1 코일스프링클립 · 절연블럭

코일스프링클립은 분류별 제품 25개, 절연블럭은 분류별 두께별로 제품 50개를 기준으로 하여 견고한 마대에 넣어 보관 및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하고 투입구를 견고히 묶어야 한다.

6.2.2 레일 탄성패드

레일패드는 분류별 제품 200개를 기준으로 하여 운반 및 적재시 손상되지 않는 골판지 상자 또는 파렛트로 KS T 1002에 적합하도록 포장하고 밴드를 사용하여 #자로 견고히 묶어야 한다.

6.2.3 상판 탄성패드

탄성패드는 분류별 제품 20개를 기준으로 하여 운반 및 적재시 손상되지 않는 골판지 상자 또는 파렛트로 KS T 1002에 적합하도록 포장하고 밴드를 사용하여 #자로 견고히 묶어야 한다.

6.2.4 기타 제품

운반 및 적재시 손상되지 않는 골판지 상자, 파렛트, 견고한 마대에 넣어 보관 및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하고 투입구를 견고히 묶어야 한다.

6.3 기타 필요한 사항

6.3.1 인터페이스

- (1) 철도용품의 규격서에는 본 자재에 다른 부 자재가 연결, 접속 등에 의하여 기능을 발휘 할 경우 상호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2) 철도용품의 특성에 따라 예비품 확보, 제출자료, 도면승인, 최종도면, 사용 지침서등 요구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 (3) 이 제품의 구성은 [부도1]에 의한다.

[부속1]

일반사판 조립도 (크림요)

③ Elastic pad

⑥ Sleeper screw

⑦ Spring washer

⑩ Serrated washer

⑧ Flat washer

⑫ Plastic dowel

⑨ Insulating washer

② Rail Pad

⑤ E-clip

① 일반사판

④ 상판 패드

NO.	PARTS NAME		NO.	REQUIRE UNIT SET		MATERIAL	REQUIRE UNIT SET
	MATERIAL			REQUIRE UNIT SET			
1	일반 상판		7	Spring washer			2
2	Rail pad		8	Flat washer			2
3	Elastic pad		9	Insulating washer			2
4	PAD		10	Serrated washer			2
5	E-clip		11	Serrated washer			2
6	Sleeper screw		12	PLASTIC DOWEL			2